

19224593

R
338-772
1261
1987 02

1987年度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 | |
|--------------|-----------------------------|
| 寄贈 | |
| ↑ 신 26 | 一九八七年 10 月 14 日 |
| 寄贈本 | |

水 産 廳



이 年次報告書는 1986年度의 水産業 動向과 水産施策 및 1987年度의 水産施策에 관한 報告書로서 水産振興法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1987年度 國會 定期會에 提出하기 위하여 作成하였다.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적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적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 일

目 次

| | |
|--------------------------|----|
| 第1編 1986年度水産動向과 施策 | 1 |
| 第1章 水産經濟 | 3 |
| 第1節 世界水産業의 動向 | 3 |
| 第2節 우리나라 水産業의 動向 | 6 |
| 第3節 漁家所得과 漁村生活 | 12 |
| 第4節 農漁村綜合對策 推進 | 19 |
| 第2章 水産物 需給動向 | 23 |
| 第1節 水産物 生産 | 23 |
| 第2節 水産物 輸出入 | 31 |
| 第3節 水産物 需給 | 38 |
| 第3章 漁業經營의 動向 | 41 |
| 第1節 漁業經營 | 41 |
| 第2節 價格動向 | 47 |
| 第3節 水産金融 | 51 |
| 第4章 水産物 増産 | 54 |
| 第1節 沿近海 漁場環境의 變化 | 54 |
| 第2節 水産資源의 造成管理 | 57 |
| 第3節 沿近海漁業 育成과 秩序確立 | 61 |
| 第4節 養殖 및 內水面漁業 開發 | 71 |
| 第5節 遠洋漁場의 安定的 確保 | 73 |

| | |
|--------------------------|-----|
| 第 5 章 새로운 水産技術의 開發・普及 | 79 |
| 第 1 節 水産技術의 開發 | 79 |
| 第 2 節 漁村指導 및 技術普及 | 86 |
| 第 3 節 漁業技術 訓練 | 90 |
| 第 6 章 水産物의 食糧化와 流通改善 | 93 |
| 第 1 節 水産物 價格安定 | 93 |
| 第 2 節 水産物 流通改善 | 93 |
| 第 3 節 水産物 加工과 食生活 改善 | 94 |
| 第 4 節 水産物 檢査 | 97 |
| 第 7 章 漁業基盤施設의 擴充과 現代化 | 99 |
| 第 1 節 漁撈施設 | 99 |
| 第 2 節 漁港開發 | 101 |
| 第 8 章 水産團體 및 漁民後繼者 育成 | 103 |
| 第 1 節 水産業協同組合 | 103 |
| 第 2 節 水産物 輸出團體 | 106 |
| 第 3 節 漁村 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 育成 | 107 |
| 第 9 章 水産事業 總括 | 109 |
| 第 1 節 投融資 實績 | 109 |
| 第 2 節 事業成果 | 111 |
| 第 10 章 水産法令 整備 및 制度 改善 | 114 |
| 第 1 節 法令 整備 | 114 |
| 第 2 節 制度 改善 | 115 |

| | |
|----------------------------|-----|
| 第 2 編 1987 年度 水產施策 | 117 |
| 第 1 章 水產施策 方向 | 119 |
| 第 1 節 目標及 重點施策 | 119 |
| 第 2 節 投融資 規模 | 120 |
| 第 3 節 水產物 生産 및 輸出 計劃 | 122 |
| 第 2 章 沿岸漁場의 牧場化 | 124 |
| 第 1 節 人工魚礁施設 | 124 |
| 第 2 節 人工種苗 量産放流 | 125 |
| 第 3 節 增養殖漁業 開發 | 126 |
| 第 4 節 內水面漁業의 促進 | 127 |
| 第 5 節 持續의 生産及 制度 改善 | 129 |
| 第 3 章 沿近海 漁業의 秩序 確立 | 131 |
| 第 1 節 漁民教育 | 131 |
| 第 2 節 安全操業 指導 | 132 |
| 第 3 節 不法漁業 團束 | 132 |
| 第 4 節 漁業無線局 運營及 施設補強 | 133 |
| 第 4 章 水産技術의 開發 普及 | 134 |
| 第 1 節 水産振興院의 活性化 | 134 |
| 第 2 節 所得及 直結되는 技術開發 | 137 |
| 第 3 節 基礎調査事業 | 141 |
| 第 4 節 漁村 指導 事業 | 143 |
| 第 5 節 漁業技術의 向上과 訓練 | 145 |
| 第 5 章 遠洋漁業의 安定的 成長 | 147 |
| 第 1 節 漁業協力 | 147 |

| | |
|--------------------------------|-----|
| 第 2 節 新漁場 開發 | 151 |
| 第 3 節 遠洋漁業 育成 指導 | 152 |
| 第 6 章 水産物 食糧化와 流通 改善 | 153 |
| 第 1 節 水産物 流通 改善 | 153 |
| 第 2 節 水産物 價格安定 | 154 |
| 第 3 節 水産物의 食糧化 | 156 |
| 第 4 節 水産物 檢査 | 157 |
| 第 7 章 漁業基盤施設의 擴充 | 159 |
| 第 1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 159 |
| 第 2 節 漁港施設의 擴充 | 162 |
| 第 8 章 漁民支援 強化 | 164 |
| 第 1 節 農漁家 負債輕減對策 | 164 |
| 第 2 節 水産資金 支援 | 165 |
| 第 3 節 低所得 漁村 育成 | 170 |
| 第 4 節 漁村 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 育成 | 171 |
| 第 5 節 災害補償 | 173 |
| 圖表로 본 水産業 動向 | 178 |
| 統計表 索引 | 193 |

第 1 編

1986年度 水産動向と 施策

여백

第 1 章 水 産 經 濟

第 1 節 世界 水産業의 動向

1. 1985년도 生産動向

1985년 世界의 水産物生産量은 1984년의 83,096 천톤 보다 2.2% 增加한 84,945 천톤에 달하였다. 이러한 生産增加는 1980년부터 1984년까지의 年平均 成長率 3.5%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1977년 以來 8년간 계속적인 成長을 보인 것으로서 增産의 要因은 開發途上國의 生産과 南美의 浮魚 漁獲量 增加에 기인한 것이다.

나라별로 보면 日本이 전년에 비해 4.8% 감소된 11,444 천톤을 生産하였으나 계속 世界 第1位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소련과 中共의 順이며 '84년과 비교해 보면 美國과 소련, 인도, 태국, 노르웨이 등의 漁獲量은 감소한 반면 中공, 칠레, 페루 등의 어획은 增加되었다.

우리나라 生産量(고래, 물개, 其他 水産哺乳動物 및 水産植物 除外)은 1984년보다 7.0% 늘어난 2,650 천톤으로 1983년 이래 世界 8位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世界 全體生産量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4년의 2.98%에서 3.12%로 증가되었다.

〈表 1〉 世界水産物生産推移

단위: 천톤

| | '82 | '83 | '84 | '85 | '85/'84 (%) |
|---------|--------|--------|--------|--------|----------------|
| 計 | 76,763 | 77,256 | 83,096 | 84,945 | 102.2 |
| 日 本 | 10,827 | 11,255 | 12,021 | 11,444 | 95.2 |
| 소 련 | 9,957 | 9,757 | 10,593 | 10,523 | 99.3 |
| 中 共 | 4,927 | 5,213 | 5,927 | 6,779 | 114.4 |
| 칠 레 | 3,673 | 3,978 | 4,499 | 4,804 | 106.8 |
| 美 國 | 3,988 | 4,258 | 4,814 | 4,767 | 99.0 |
| 페 루 | 3,529 | 1,580 | 3,340 | 4,168 | 124.8 |
| 인 도 | 2,373 | 2,504 | 2,855 | 2,810 | 98.4 |
| 韓 國 | 2,281 | 2,400 | 2,477 | 2,650 | 107.0 |
| 泰 國 | 2,120 | 2,260 | 2,135 | 2,124 | 99.5 |
| 노 르 웨 이 | 2,501 | 2,836 | 2,466 | 2,107 | 85.4 |
| 기 타 | 30,587 | 31,215 | 31,969 | 32,769 | 102.5 |

자료: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5.

註: 고래, 물개, 기타 수산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제외

2. 1985년도 貿易動向

1985년 世界의 水産物 輸出金額은 1984년에 비하여 6.9% 늘어난 16,941백만\$이었다.

이를 나라별로 보면 캐나다가 전년에 비하여 6.6% 增加한 1,356백만\$을 輸出하여 世界 1位를 차지하였으며 덴마크가 전년에 비해 5.9%가 증가하여 美國에 이어 世界 3位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水産物 輸出은 1984년보다 1.9% 늘어난 797백만\$(고래, 물개, 其他 水産哺乳動物 및 水産植物 除外)로서 계속 世界 6位를 유지하였고 世界 水産物 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1984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한편 世界의 水産物 輸入金額은 전년보다 8.1% 늘어난 18,341백만\$이

었다.

이를 나라별로 보면 日本이 4,744 백만\$을 輸入하여 계속 1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美國,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이탈리아는 1984년보다 33% 增加된 985 백만\$어치를 輸入하여 第 6 位에서 4 位國으로 浮上하였다.

우리나라의 水産物 輸入은 전년보다 32% 늘어난 90 백만\$로서 世界 29 位에서 23 位로 올라왔으며 輸入類이 매년 增加되는 추세에 있다.

〈表 2〉 世界 水産物 輸出 推移 단위: 백만\$

| | '82 | '83 | '84 | '85 | '85/'84 (%) |
|---------|--------|--------|--------|--------|----------------|
| 計 | 15,286 | 15,698 | 15,850 | 16,941 | 106.9 |
| 캐 나 다 | 1,300 | 1,277 | 1,272 | 1,356 | 106.6 |
| 美 國 | 1,032 | 997 | 924 | 1,058 | 114.5 |
| 덴 마 크 | 901 | 928 | 900 | 953 | 105.9 |
| 노 르 웨 이 | 888 | 978 | 903 | 922 | 102.1 |
| 日 本 | 801 | 788 | 882 | 820 | 93.0 |
| 韓 國 | 764 | 740 | 782 | 797 | 101.9 |
| 泰 國 | 482 | 545 | 633 | 675 | 106.6 |
| 아이슬랜드 | 539 | 527 | 509 | 617 | 121.2 |
| 네델란드 | 504 | 511 | 501 | 544 | 108.6 |
| 칠 레 | 386 | 419 | 419 | 439 | 104.8 |
| 기 타 | 7,689 | 7,988 | 8,125 | 8,760 | 107.8 |

자료: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5.

註: 고래, 물개, 기타 수산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 제외

第 2 節 우리나라 水産業의 動向

1. 漁業家口, 人口 및 從事者

産業構造의 高度化로 製造業 및 서비스産業의 勞動力 需要가 增加하고 漁村生活與件 및 勤勞條件이 不利해짐에 따라 漁村人口의 都市流出이 加速됨으로써 1986 年の 漁業人口는 前년에 比하여 3.4% 減少한 666,122 명이 되었다.

〔表 3〕 漁業家口·人口 및 從事者 推移

단위: 戶, 名

| | '77 | '82 | '85 | '86 | '86/'85 (%) |
|---------------|---------|---------|---------|---------|----------------|
| 漁業家口 | 153,133 | 146,333 | 145,274 | 143,867 | 99.0 |
| ('77 = 100) | 100 | 95.6 | 94.9 | 93.9 | |
| 漁業人口 | 871,178 | 754,523 | 689,351 | 666,122 | 96.6 |
| (77 = 100) | 100 | 86.6 | 79.1 | 76.5 | |
| ・總人口對比(%) | 2.39 | 1.92 | 1.68 | 1.60 | |
| 平均家口員 | 5.69 | 5.16 | 4.75 | 4.63 | 97.5 |
| 漁業從事者 | 329,083 | 277,393 | 260,326 | 259,747 | 99.8 |
| ('77 = 100) | 100 | 84.3 | 79.1 | 78.9 |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어업기본통계 조사결과

註: 어업종사자에는 원양승선원 제외

(77 : 22,715 82 : 14,933 85 : 13,789 86 : 16,178 명)

漁業家口의 變動狀況을 보면, 漁業家口는 減少하고 있으나 經營者家口의 專業家口가 늘어나고 있어 점차 漁業專門化가 進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經營者 가구중에서 2種 兼業家口가 늘어났는데 이는 漁業以外的 業種 經營에 의한 所得源의 多樣化에 기인한다.

(表 4) 漁業家口의 推移 단위: 戶

| | '85 | | | '86/'85 (%) | '86 | | |
|------|-----------|-----------|---------|-------------|---------|-----------|-----------|
| | 經營者 家口 | 被備者 家口 | 計 | | 計 | 經營者 家口 | 被備者 家口 |
| 計 | 126,800 | 18,474 | 145,274 | 99.0 | 143,867 | 126,251 | 17,616 |
| 專業 | 22,112 | 5,091 | 27,203 | 99.5 | 27,076 | 22,267 | 4,809 |
| 兼業 | 104,688 | 13,383 | 118,071 | 98.9 | 116,791 | 103,984 | 12,807 |
| • 1種 | 70,149 | 11,233 | 81,382 | 97.7 | 79,982 | 69,267 | 10,715 |
| • 2種 | 34,539 | 2,150 | 36,689 | 100.3 | 36,809 | 34,717 | 2,092 |

자료: 농림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 결과

註: (1) 1종 겸업은 어가소득중 어업소득이 50% 이상인 가구

(2) 2종 겸업은 어업소득이 50% 미만인 가구임

漁業家口員도 專業化 傾向에 따라 피고용자 가구원이 경영자 가구원 보다 더 줄어들었으며 漁業從事者 역시 被雇傭者가 크게 줄었고 從事類型은 전년과 비슷한 구성을 보였다.

(表 5) 漁業家口員 및 從事者 推移 단위: 名

| | '85 | '86 | '86/'85 (%) |
|--------|---------|---------|-------------|
| 漁業家口員 | 689,351 | 666,122 | 96.6 |
| • 經營者 | 602,237 | 584,881 | 97.1 |
| • 被雇傭者 | 87,114 | 81,241 | 93.3 |
| 漁業從事者 | 260,326 | 259,747 | 99.8 |
| ┌ 經營者 | 236,636 | 236,956 | 100.1 |
| └ 被雇傭者 | 23,690 | 22,791 | 96.2 |
| ┌ 漁業에만 | 56,438 | 56,284 | 99.7 |
| └ 漁業이主 | 124,723 | 124,203 | 99.6 |
| └ 漁業이副 | 79,165 | 79,260 | 100.1 |

자료: 농림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漁業從事者의 年齡構成을 보면 經營者 가구나 非고용자 가구 다같이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 대폭 감소된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늘어나 전반적으로 高齡化하고 있으며 性別 構成에 있어서도 男과 女의 비율이 1985년 60.3 대 39.7에서 1986년에는 59.5 대 40.5로 여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業種別 從事者는 漁船漁業에 있어서 經營者는 늘어났으나 非고용자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며, 養殖漁業에 있어서는 非고용자가 늘어났으나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自然産 採捕業 종사자는 經營者나 종사자가 모두 늘어났다.

〈表 6〉 從 事 者 의 年 齡 構 成 단위 : 名

| | 경 영 자 가 구 | | | 비 용 자 가 구 | | |
|------------|------------------|--------------------|------------------|-----------------|-------------------|-----------------|
| | 14 ~ 29 | 30 ~ 59 | 60 이상 | 14 ~ 29 | 30 ~ 59 | 60 이상 |
| '85 | 42,136 (17.8) | 171,171 (72.3) | 23,329 (9.9) | 5,097 (21.5) | 16,898 (71.3) | 1,695 (7.2) |
| '86 | 39,328 (16.6) | 172,929 (73.0) | 24,699 (10.4) | 4,635 (20.3) | 16,449 (72.2) | 1,707 (7.5) |
| '86/'85(%) | 93.3 | 101.0 | 105.9 | 90.9 | 97.3 | 100.7 |

자료 : 농림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註 : ()는 당해 가구 어업종사자중의 비율임

〈表 7〉 業 種 別 從 事 狀 況 단위 : 名

| | 計 | | 漁 船 漁 業 | | 養 殖 業 | | 自 然 産 採 捕 業 | |
|---------|---------|---------|---------|--------|---------|---------|-------------|--------|
| | '85 | '86 | '85 | '86 | '85 | '86 | '85 | '86 |
| 計 | 280,326 | 259,747 | 86,375 | 85,455 | 134,834 | 134,369 | 39,117 | 39,923 |
| 經 營 者 | 236,636 | 236,956 | 65,950 | 66,218 | 133,147 | 132,655 | 37,539 | 38,083 |
| 被 雇 備 者 | 23,690 | 22,791 | 20,425 | 19,237 | 1,687 | 1,714 | 1,578 | 1,840 |

자료 : 농림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2. 生産과 輸出入

水産物 生産은 김, 미역이 풍작을 이룬 養殖漁業과 韓·美共同事業 확대 및 新漁場 開發에 의한 遠洋漁業의 增産에 힘입어 전년도보다 18%가 증산되었다. 이 외에도 근년에 들어 증가율이 둔화되었던 沿近海 漁業에 있어서도 쥐지, 정어리, 고등어 등 多獲性 어종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 증산을 뒷받침 하였다.

輸出에 있어서도 엔화의 강세, 油價引下, 國際金引下 등의 영향을 받은 輸出環境의 改善과 制度改善 및 新製品 開發로 전년에 비하여 42.7% 증가하였으며, 輸入은 原資材의 증가로 34.3% 증대되었다.

(表 8) 生産, 輸 出 入 推 移

| | 단 위 | '77 | '82 | '85 | '86 | '86/'85 (%) |
|-------|------|-------|-------|-------|-------|-------------|
| 생 산 | 千 噸 | 2,421 | 2,644 | 3,103 | 3,660 | 118.0 |
| • 연근해 | 〃 | 1,308 | 1,475 | 1,495 | 1,726 | 115.5 |
| • 양 식 | 〃 | 491 | 596 | 788 | 947 | 120.2 |
| • 원 양 | 〃 | 596 | 528 | 767 | 930 | 121.2 |
| • 내수면 | 〃 | 26 | 45 | 53 | 57 | 107.5 |
| 수 출 | 百萬 噸 | 703 | 947 | 970 | 1,384 | 142.7 |
| 수 입 | 〃 | 13 | 58 | 83 | 112 | 134.3 |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계연보

3. 漁船勢力

1986 년말 漁船勢力은 總 93,037 척에 884 천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척수는 2.3%, 톤수는 3.0%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 動力船은 전체 漁船가운데 척수로는 79.4%, 톤수로는 97.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動力化 趨勢로 移行되고 있다.

〈表 9〉 漁船勢力推移 단위: 척, %

|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척 수 | 66,506 | 86,515 | 90,970 | 93,037 (100) | 102.3 |
| | 톤 수 | 682,591 | 807,570 | 858,471 | 883,851 (100) | 103.0 |
| | 평균톤수 | 10.30 | 9.3 | 9.4 | 9.5 | 101.1 |
| 動力船 | 척 수 | 29,834 | 67,084 | 71,836 | 73,905 (79.4) | 103.9 |
| | 톤 수 | 636,445 | 784,708 | 836,633 | 862,262 (97.6) | 103.1 |
| 無動力船 | 척 수 | 36,672 | 19,431 | 19,134 | 19,132 (20.6) | 100.0 |
| | 톤 수 | 46,146 | 22,862 | 21,838 | 21,589 (2.4) | 98.9 |
| 動力化率 (%) | 척 수 | 44.8 | 77.5 | 79.0 | 79.4 | — |
| | 톤 수 | 93.2 | 97.2 | 97.5 | 97.6 | —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漁業別 隻數는 沿岸海漁船이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養殖漁船이 39.4%, 內水面漁船이 3.3%, 遠洋漁船이 0.7%, 기타 漁船이 0.4%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톤수로는 沿岸海漁船이 50.2%, 遠洋漁船이 40.4%, 養殖漁船이 5%, 內水面漁船이 0.3%, 기타 漁船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船質別로는 木船이 아직도 전체 漁船의 93.9% (隻數基準)를 차지하고 있으나 鋼船과 合成樹脂船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미만의 漁船은 전체 漁船 대비 척수로는 87.4%, 톤수로는 13.8%를 차지하고 5~50톤 漁船은 척수, 톤수가 전체 漁

〈表 10〉 漁業別 漁船勢力

단위: 척, %

|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척 수 | 66,506 | 86,515 | 90,970 | 93,037 (100) | 102.3 |
| | 톤 수 | 682,591 | 807,570 | 858,471 | 883,851 (100) | 103.0 |
| 沿 近 海 | 척 수 | 41,114 | 46,824 | 50,457 | 52,274 (56.2) | 103.6 |
| | 톤 수 | 283,489 | 395,188 | 434,508 | 444,000 (50.2) | 102.2 |
| 養 殖 | 척 수 | 22,399 | 35,191 | 36,388 | 36,661 (39.4) | 100.7 |
| | 톤 수 | 24,816 | 40,813 | 44,267 | 44,448 (5.0) | 100.4 |
| 內 水 面 | 척 수 | 1,673 | 3,251 | 3,089 | 3,059 (3.3) | 99.0 |
| | 톤 수 | 1,232 | 2,686 | 2,621 | 2,519 (0.3) | 96.1 |
| 遠 洋 | 척 수 | 846 | 646 | 651 | 676 (0.7) | 103.8 |
| | 톤 수 | 332,410 | 330,422 | 339,763 | 357,015 (40.4) | 105.1 |
| 其 他 | 척 수 | 474 | 603 | 385 | 367 (0.4) | 95.3 |
| | 톤 수 | 40,644 | 38,461 | 37,312 | 35,869 (4.1) | 96.1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表 11〉 船質別 漁船勢力

단위: 척, %

|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척 수 | 66,506 | 86,515 | 90,970 | 93,037 (100) | 102.3 |
| | 톤 수 | 682,591 | 807,570 | 858,471 | 883,851 (100) | 103.0 |
| 木 船 | 척 수 | 64,191 | 82,823 | 85,816 | 87,332 (93.9) | 101.8 |
| | 톤 수 | 223,858 | 252,410 | 241,201 | 245,528 (27.8) | 101.8 |
| 鋼 船 | 척 수 | 2,183 | 3,155 | 3,844 | 3,897 (4.2) | 101.4 |
| | 톤 수 | 458,313 | 553,292 | 611,999 | 631,135 (71.4) | 103.1 |
| 合成樹脂船 (F.R.P.) | 척 수 | 132 | 537 | 1,310 | 1,808 (1.9) | 138.0 |
| | 톤 수 | 420 | 1,868 | 5,271 | 7,188 (0.8) | 136.4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船舶의 9%와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50톤 이상의 大型 漁船은 척수 噸수가 전체 漁船의 3.6%와 71.0%를 차지하고 있다.

〈表 12〉 噸 級 別 漁 船 勢 力 단위: 척, %

| | '77 | | '82 | | '85 | | '86 | | '86/'85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計 | 66,506 | 682,591 | 86,515 | 807,570 | 90,970 | 858,471 | 93,037 (100) | 883,851 (100) | 102.3 | 103.0 |
| 1톤미만 | (45,506) | (47,517) | 25,092 | 18,578 | 27,603 | 20,222 | 28,525 (30.6) | 20,847 (2.4) | 103.3 | 103.1 |
| 1~5톤미만 | 10,936 | 33,770 | 50,150 | 92,002 | 52,001 | 98,459 | 52,823 (56.8) | 100,749 (11.4) | 101.6 | 102.3 |
| 5~50톤미만 | 7,879 | 128,037 | 8,329 | 133,845 | 8,081 | 129,245 | 8,370 (9.0) | 134,477 (15.2) | 103.6 | 104.0 |
| 50~100톤미만 | 1,296 | 99,507 | 1,852 | 150,743 | 2,088 | 171,471 | 2,085 (2.3) | 171,041 (19.4) | 99.8 | 99.7 |
| 100~200톤미만 | 247 | 37,016 | 488 | 67,211 | 569 | 76,775 | 587 (0.6) | 79,071 (8.9) | 103.2 | 103.0 |
| 200톤이상 | 642 | 336,742 | 604 | 345,191 | 628 | 362,299 | 647 (0.7) | 377,666 (42.7) | 103.0 | 104.2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註: '77년의 ()안의 수치는 2톤미만, 「 」안의 수치는 2~5톤미만임

第 3 節 漁家所得과 漁村生活

1. 漁業 總生産

1986년 漁業産出額은 經常價格으로는 2조 83억 원으로 前년대비 19.8%가 증가되었으며 1980년 不變價格으로는 13.3%가 증가되었다. 附加價

值額은 經常價格으로 26.4%, 1980 年 不變價格으로 12.6%가 增加되었
다. 이는 生産量이 18.0% 增加하고 魚價가 22.5% 상승한데다 참치 등
高價魚種의 生産이 늘어난데 기인된다.

(表 13) 漁業總生産額 단위: 억원

| | '85 | | '86 | | '86/'85 (%) | |
|-------------|--------|--------|--------|--------|-------------|-------|
| | 産出額 | 附加價値 | 産出額 | 附加價値 | 産出額 | 附加價値 |
| (經常) 計 | 16,770 | 10,934 | 20,083 | 13,824 | 119.8 | 126.4 |
| 漁獲 | 9,272 | 6,917 | 10,726 | 8,455 | 115.7 | 122.2 |
| 養殖 | 2,433 | 1,355 | 3,433 | 2,108 | 141.1 | 155.6 |
| 遠洋 | 5,065 | 2,662 | 5,924 | 3,261 | 117.0 | 122.5 |
| ('80不變) 計 | 11,157 | 6,695 | 12,645 | 7,541 | 113.3 | 112.6 |
| 漁獲 | 5,628 | 3,870 | 6,006 | 4,126 | 106.7 | 106.6 |
| 養殖 | 2,289 | 1,391 | 2,885 | 1,754 | 164.5 | 126.1 |
| 遠洋 | 3,240 | 1,434 | 3,754 | 1,661 | 226.0 | 115.8 |

자료: 한국은행, '86년도 국민총생산 추계

2. 漁家所得

漁家所得은 海·漁況의 호조에 따른 生産증대와 魚價의 상승 및 어민들
의 經營費節減 노력으로 前년대비 10.9%가 增加하여 農家所得과의 차이
도 1985 年 85%에서 90%로 接近되었다.

(表 14) 漁 家 所 得 構 成

단위: 천원

| | '84 | '85 | '86 | '86/'85 (%) |
|---------|-------|-------|-------|----------------|
| 收 入 | 7,996 | 8,591 | 9,790 | 114.0 |
| ・ 漁 業 | 5,589 | 6,047 | 7,155 | 118.3 |
| ・ 漁 業 外 | 2,407 | 2,544 | 2,635 | 103.6 |
| 支 出 | 3,488 | 3,722 | 4,388 | 117.9 |
| ・ 漁業經營費 | 3,007 | 3,232 | 3,936 | 121.8 |
| ・ 其 他 | 481 | 490 | 452 | 92.2 |
| 所 得 | 4,508 | 4,869 | 5,402 | 110.9 |
| ・ 漁 業 | 2,582 | 2,815 | 3,219 | 114.4 |
| ・ 漁 業 外 | 1,926 | 2,054 | 2,183 | 106.3 |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漁業階層別로 보면 動力船 使用家口와 漁船 非使用家口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無動力船 使用家口와 養殖業家口는 약간 증가되었다. 따라서 漁家 平均소득과 無動力船 使用家口 및 養殖業家口의 소득차이는 1985년 보다 더 커졌다.

(表 15) 漁 業 階 層 別 所 得 推 移

단위: 천원

| | '85 | % | '86 | % | '86/'85 (%) |
|-------------|-------|-----|-------|-----|----------------|
| 全 國 平 均 | 4,869 | 100 | 5,402 | 100 | 110.9 |
| 漁 船 非 使 用 | 4,072 | 84 | 4,529 | 84 | 111.2 |
| 無 動 力 船 使 用 | 3,875 | 80 | 4,132 | 76 | 106.6 |
| 動 力 船 使 用 | 7,704 | 158 | 9,241 | 171 | 120.0 |
| 養 殖 業 | 4,430 | 91 | 4,644 | 86 | 104.8 |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

(表 16) 階層別所得構成 단위: 천원

| | 漁業 | % | 兼業 | % | 事業外 | % |
|-------------|-------|------|-------|------|-------|------|
| 全 國 平 均 | 3,219 | 59.6 | 1,011 | 18.7 | 1,172 | 21.7 |
| 漁 船 非 使 用 | 2,053 | 45.3 | 875 | 19.3 | 1,001 | 35.4 |
| 無 動 力 船 使 用 | 2,464 | 59.6 | 570 | 13.8 | 1,098 | 26.6 |
| 動 力 船 使 用 | 7,334 | 79.4 | 549 | 5.9 | 1,358 | 14.7 |
| 養 殖 業 | 2,379 | 51.2 | 1,447 | 31.2 | 818 | 17.6 |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

註: %는 階層別 所得總額(표 15 참조)에 대한 구성비임

한편 漁家經濟收支를 보면 漁家所得이 10.9% 증가한데 비해 家計費支出은 8.2%가 늘어남에 따라 家計剩餘가 18.1% 늘어났다.

家計費 支出에서는 교육비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의료비, 판혼상제비 등의 기타 잡지출이 급증한 반면 가계비 중에서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영겁계수)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表 17) 漁 家 經 費 收 支 단위: 천원

| | '85 | '86 | '86/'85 (%) |
|------------------------|----------------|----------------|----------------|
| 漁 家 所 得 (%) | 4,869 (100) | 5,402 (100) | 110.9 |
| - 事 業 外 支 出 | 268 | 303 | 113.1 |
| - 可 處 分 所 得 (A) (%) | 4,601 (94) | 5,099 (94) | 110.8 |
| • 家 計 費 支 出 (B) | 3,583 | 3,877 | 108.2 |
| (飲 食 物 費)(C) | 1,137 | 1,202 | 105.7 |
| (住 居 費) | 258 | 283 | 109.7 |
| (光 熱 費) | 189 | 197 | 104.2 |
| (被 服 費) | 202 | 227 | 112.4 |
| (教 育 費) | 521 | 584 | 112.1 |
| (其 他 雜 費) | 1,276 | 1,384 | 108.5 |
| • 其 他 支 出 | 39 | 65 | 166.7 |
| • 家 計 剩 餘 | 979 (21) | 1,156 (23) | 118.1 |
| 平 均 消 費 性 向 (B/A) | 77.9 | 76.0 | |
| 영 겁 계 수 (C/B) | 31.7 | 31.0 | |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

한편 문화생활을 위한 消費財의 需要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컬러 TV와 냉장고의 보급이 두드러져서 1986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1.3%와 26.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表 18 消 費 財 推 移 기준: 100호당

| | '79 | '85 | '86 | '86/'85 (%) |
|-------|-------|-----|-----|-------------|
| 컬러 TV | 1.2 臺 | 47 | 57 | 121.3 |
| 흑백 TV | 93 | 83 | 64 | 77.1 |
| 녹음기 | 34 | 84 | 91 | 108.3 |
| 냉장고 | 20 | 68 | 86 | 126.5 |
| 세탁기 | 0.4 | 3 | 4 | 133.3 |
| 카메라 | 4 | 7 | 6 | 85.7 |
| 오토바이 | 1.6 | 4 | 3 | 75.0 |
| 선풍기 | 75 | 108 | 112 | 103.7 |
| 전 화 | 14 | 62 | 70 | 112.9 |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

3. 漁家資産 및 負債

漁家資産은 저금 및 대부금 등 流通資産과 大動物 및 土地買入의 증가로 7.3%가 증가되었으나 大漁具, 養殖用 機資材, 農水産物 在庫는 감소하였다. 특히 流通資産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금보유가 25천원으로 21%, 저금 등이 1,472천원으로 전년대비 55.1%, 대부금 기타가 1,175천원으로 16.8%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表 19〉 漁 家 資 産 推 移

단위 : 천원

| | | '85 | '86 | '86/'85 (%) |
|---------|-------|--------|--------|----------------|
| 計 | | 18,714 | 20,072 | 107.3 |
| 固 定 資 産 | 小 計 | 13,583 | 14,216 | 104.7 |
| | 土 地 | 5,802 | 6,239 | 107.5 |
| | 建 物 | 4,126 | 4,183 | 101.4 |
| | 大 漁 具 | 3,572 | 3,518 | 98.5 |
| | 大 動 物 | 83 | 276 | 332.5 |
| 流 動 資 産 | 小 計 | 2,963 | 2,951 | 99.6 |
| | 漁 撈 用 | 1,483 | 1,533 | 103.4 |
| | 養 殖 用 | 955 | 941 | 98.5 |
| | 在 庫 量 | 525 | 477 | 90.9 |
| 流 通 資 産 | | 2,168 | 2,904 | 133.9 |

자료 :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

漁家負債는 1985년까지 生産, 所得, 資産의 증가율을 上廻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나 1986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이 중에서 家計를 위한 負債가 크게 늘었다. 借入處別로는 私債의 증가가 완만한 반면 制度金融의 이용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漁家負債 증가에 따른 償還能力을 보면 負債比率(負債÷資産)은 17.7%로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었고 負債額이 即時 償還可能額(流動資産在庫 + 流通資産)을 약간 상회하는 105%로서 전년의 125.4%에 비하여 크게 호전되었다.

〈表 20〉 漁 家 負 債 推 移

단위 : 천원

| | | '85 | '86 | '86/'85 (%) |
|---------|-----------|-------|-------|----------------|
| 計 | | 3,378 | 3,549 | 105.1 |
| 用 途 別 | 漁 業 資 金 | 2,054 | 2,150 | 104.7 |
| | 兼 業 資 金 | 447 | 395 | 88.4 |
| | 家 計 資 金 | 804 | 911 | 113.3 |
| | 其 他 | 73 | 93 | 127.4 |
| 借 入 處 別 | 小 計 | 2,157 | 2,297 | 105.2 |
| | 金 融 機 關 | 1,491 | 1,569 | 109.3 |
| | 水 協 | 666 | 728 | 106.5 |
| | 農 協 · 其 他 | 908 | 906 | 99.8 |
| | 個 人 | 313 | 346 | 110.5 |

자료 :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

〈表 21〉 資 産 과 負 債 比 較 단위: 천원

| | | '85 | '86 | '86/'85 (%) |
|----------------------|-----------|----------------|------------------|----------------|
| 負 債 額 (A) | | 3,378 | 3,549 | 105.1 |
| 漁 家 總 資 産 (B) | | 18,714 | 20,072 | 107.3 |
| - 流 動 資 産 在 庫 (C) | | 525 | 477 | 90.9 |
| - 流 通 資 産 (D) | | 2,168 | 2,904 | 133.9 |
| 漁 家 所 得 (E) | | 4,869 | 5,402 | 110.9 |
| 對 比 | A / B | 18.1 | 17.7 | |
| | A / E | 69.4 | 65.7 | |
| | A / C + D | 125.4 | 105.0 | |
| 漁 家 貯 蓄 (負 債 對 比) | | 949 (28.1%) | 1,472 (41.5%) | 155.1 |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

각종 分析指標을 살펴보면 漁家所得中에서 漁業所得이 차지하는 비율인 漁業依存度는 57.8%에서 59.6%로 증가되었으나 이는 1986년에 漁獲量이 크게 증가(16.6%)하였기 때문이다.

漁業所得率 (어업소득 ÷ 어업수입)은 經營費의 증가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漁業所得이 家計費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家計費充足度 (漁業所得 ÷ 家計費)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한편 漁家所得中에서 租稅公課金이 차지하는 비율인 租稅負擔率은 1.0% 내외에 있었으나 1986년에는 農家와 비슷한 수준인 1.5%로 상승되었다.

漁家負債中 私債依存度 (私債 ÷ 借入金)는 公金融의 공급확대로 35.3%로 낮아졌으며 어가소득증 預·貯金率은 27.2%로 증가되었다.

| | 漁業 依存度 | 漁業 所得率 | 家計費 充足度 | 租稅 負擔率 | 私債 依存度 | 預·貯 金率 | 勞動 生産性 | 漁業 生産單價 |
|-----|-----------|-----------|------------|-----------|-----------|-----------|-----------|------------|
| | % | % | % | % | % | % | kg時間 | 원/kg |
| '85 | 57.8 | 46.6 | 78.6 | 1.0 | 36.2 | 19.5 | 4.4 | 516 |
| '86 | 59.6 | 45.0 | 83.0 | 1.5 | 35.3 | 27.2 | 4.7 | 523 |

자료: 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 결과보고

第4節 農漁村綜合對策 推進

産業間的 균형적인 成長과 農漁民의 所得向上 및 生活與件의 개선을 위 하여 營漁資金의 金利引下, 水産災害復舊 基準의 現實化, 漁業用 免稅油 類供給時限의 延長, 漁業用 施設의 電氣料引下 등 農漁村綜合對策을 樹立 (1986. 3. 5) 추진하여 漁民負擔을 輕減하고 支援을 확대하였다.

1. 營漁資金 金利引下

營漁資金 貸出利子를 1986. 1. 1부터 年 10%에서 8%로 引下하여 약 61억원의 利子負擔을 輕減하게 되었다.

2. 水産災害 復舊基準의 現實化

태풍 및 폭풍 등 自然災害로 인한 水産增養殖施設 및 生物의 被害復舊 時 國庫支援率을 增養殖施設은 50%에서 70%로, 增養殖 生物은 50%에서 60%로 각각 인상하였고 被害復舊費 算出根據가 되는 被害額 算出 基準도 漁船, 水産增養殖 施設 및 生物, 漁網에 대하여 9.2% 내지 203.6%까지 인상하여 災害復舊支援을 확대하였다.

3. 漁業用 免稅油類 供給時限 延長

1986. 12. 31 로 供給時限이 終了되는 漁業用 油類의 免稅時限을 1991. 12. 31 까지로 延長하여 年 350 억원의 漁民負擔을 輕減하게 하였다.

4. 漁業用 施設 電氣料 引下

水協所有 製水 冷凍施設, 水産種苗生産施設, 氷冷凍網 保管施設 등 漁業用 施設에 使用되는 電氣料을 1986. 7. 1부터 産業用에서 農事用(丙)으로 適用토록 하여 Kw 당 47 원에서 35 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약 9 억원의 負擔을 輕減하게 하였다.

5. 魚類蕃養을 위한 內水面 占用 使用料 引下

內水面 蕃養을 위하여 産業基地 開發公社가 管理하는 多目的 댐내의 水面을 利用할 경우 免許漁業의 占用使用料를 인근 토지 등급액의 6/100에서 1.5/100 상당액으로, 許可漁業은 40/100에서 3/100 상당액으로 인하하였고, 農地改良組合이 管理하는 水面에 대한 占用使用料는 ha당 45 ~ 500 千원에서 100 千원 이내로 인하하여 약 25 백만원의 負擔을 輕減하게 하였다.

6. 代替農地造成費 免除

蕃養漁業用 施設에 대하여 農家住宅 및 農事用 施設과 같이 代替農地造成費 (㎡당 是 2,380 ~ 3,250 원, 밭 1,410 원 ~ 1,970 원)를 1988. 12. 31 까지 免除토록 하여 약 161 백만원의 負擔을 輕減하게 하였다.

7.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支援條件 改善

漁民後繼者 支援事業中 漁船漁業 및 蓄養漁業의 特殊性에 따라 支援額의 償還期間을 3년거치 4년상환에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延長하였으며 支援額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8. 水協 治療共濟 制度의 擴充

漁民의 疾症, 負傷 등에 따른 診療費 負擔 輕減을 위해 船員共濟加入者와 船員特殊共濟加入 船員 및 그 家族을 대상으로 水協中央會로 하여금 診療費를 1인당 3백만원(醫院級) ~ 5백만원(病院級) 까지 代支給토록 하였으며 診療酬價도 醫療保險酬價相當額을 適用토록 하였다. 또한 醫療費 負擔을 줄이기 위해 世帶當 6백만원 이내에서 연 11.5%로 용자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자일로부터 2개월간은 이자를 면제토록 하였다.

9. 水産物 輸出 推薦制度 整備

水産物 輸出先의 안정적 確保를 위해 水産物 輸出推薦 品目은 126개중에서 輸出市場 支配品目, 自律規制 必要品目, 資源保護 對象品目 등 40개 品目만을 존속시키고 86개 品目은 自由化 하였다.

10. 農漁村地域 開發基金 新設

農漁村 綜合對策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中長期 低利資金을 供給하고자 農漁村地域開發基金造成을 위한 農漁村地域 開發基金法을 마련 1987년도부터 기금을 運用토록 하였다.

11. 水産業法 改正

水面的 효율적 이용과 水産資源保護管理로 水産業의 발전을 도모키위해 水産業法을 改正 추진중이다.

12. 海洋汚染 및 埋立·干拓被害補償基準 設定

埋立·干拓에 따른 被害補償 범위를 확대하고 海洋汚染에 의한 被害防除 및 救濟制度를 改善하기 위해 建設部·環境廳과 協助하여 環境保全法, 海洋汚染防止法, 公有水面埋立法을 개정하였다.

13. 沿岸漁場의 牧場化

'80年代에 접어들면서 遠洋漁業展望이 不透明하고 沿岸海 水産資源의 減少로 生産이 相對的으로 鈍化되는 等 國內外 漁業與件의 變化로 2,000年代에 이르러 水産物 需給 不均衡과 漁家所得의 低位내지 停滯를 招來할 것으로 豫想되므로 沿岸水域의 資源을 造成하고 漁場의 高度 이용으로 水産物의 生産增大와 漁民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 沿岸漁場의 牧場化計劃을 樹立하여 第6次 5個年計劃期間中에 2,020 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이다.

14. 漁港 및 給油·給水施設의 擴充

漁船의 안전수용과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처리를 위한 漁港 및 給油·給水施設에 第6次 5個年計劃期間동안 4,189 억원을 투입하여 漁港의 基本施設을 擴充할 계획이다.

第 2 章 水産物 需給動向

第 1 節 水産物 生産

1. 生産動向

1986년도 우리나라 水産物 總生産量은 3,660천톤으로 전년도 보다 557천톤이 증산되어 前年對比 118%로서 근래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漁業別로는 全漁業이 전년도보다 伸張勢를 나타냈는데 沿岸海漁業은 1,726천톤으로 15.5%, 養殖漁業은 947천톤으로 20.2%, 內水面漁業은 57천톤으로 7.5%, 遠洋漁業은 930천톤으로 21.3%가 각각 증산되었다.

이를 어종별로 보면 쥐치, 정어리, 고등어, 멸치, 명태, 遠洋오징어, 미역, 김 등의 生産이 순조로운 반면 갈치, 沿岸海오징어류, 홍합 등이 다소 부진하였다.

〈表 22〉 漁業別 生産 推移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2,421 (100.0) | 2,644 (109.2) | 3,103 (128.1) | 3,660 (151.1) | 118.0 |
| 沿 近 海 | 1,308 | 1,475 | 1,495 | 1,726 | 115.5 |
| 養 殖 | 491 | 596 | 788 | 947 | 120.2 |
| 內 水 面 | 26 | 45 | 53 | 57 | 107.5 |
| 遠 洋 | 596 | 528 | 767 | 930 | 121.2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2. 沿近海漁業

1986년도 沿近海漁業 生産量은 우리나라 水産物 總生産量의 47.2%인 1,725,820 ㄱ으로, 전년보다 15.5% 늘어남 231,306 ㄱ이 증산되었다.

이와 같은 증산요인은 北上暖流의 강세 영향으로 쥐치, 정어리, 고등어, 멸치 등 多獲性 魚種의 生産이 크게 늘어났으며, 氣象條件에 따른 操業日數 增加에 起因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大型旋網漁業, 大型機船底引網漁業, 機船引網漁業이 크게 늘어났으며, 近海채낚기漁業은 줄어 들었으나 中型機船底引網漁業, 鮫鱈網漁業, 流刺網漁業, 共同漁業 등은 전년도 水準을 유지하였다.

가. 大型旋網漁業

大型旋網漁業은 沿近海漁業中 規模가 가장 큰 業種으로 東支那海에서 濟州道, 對馬島를 連結하는 海域을 主漁場으로 하여 정어리, 고등어, 삼치, 쥐치, 부세 등을 漁獲 對象으로 하고 있다. 生産量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86년에는 458,785 ㄱ으로 전년보다 46%가 增産되었는데 이는 北上暖流의 強勢 영향으로 정어리, 고등어 등 主 對象魚群 徊遊量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大型機船底引網漁業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은 1隻으로 조업하는 외갈이와 2隻으로 조업하는 쌍갈이로 구분되며, 50~170 ㄱ급 漁船으로서 南海과 東支那海에서 잡치, 쥐치, 가자미, 조기 등을 主 漁獲對象으로 하고 있다. 1986년 生産量은 271,116 ㄱ으로 쥐치 등 多獲性 魚種의 生産順調로 전년보다 18.3%가 증가되었다.

다. 中型機船底引網漁業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은 20~80 %級 漁船으로 東海 一圓에서 명태, 대구, 새우류 등을 主 漁獲對象으로 하는 東海區 機船底引網漁業과 西·南海에서 쥐치, 가자미, 갈치, 갑오징어, 꽃게 등을 漁獲對象으로 하는 西·南區 機船底引網漁業으로 구분되고 있다. 生産量은 1977 년도 以後 減少趨勢에 있으나 1986 년에는 54.603 %을 生産하여 前年 水準을 유지하였다.

라. 近海채낚기漁業

近海 채낚기漁業은 10~100 %級 漁船으로 오징어를 主 漁獲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漁場은 魚群의 北上時期에 따라 東·西·南海 全海域에서 形成되는데 南海는 濟州道~對馬島間 海域을 中心으로 5 월까지, 西海는 격렬비열도를 中心으로 7~11 월까지, 그리고 東海는 6 월부터 鬱陵島 近海에서 漁場이 形成되어 7~11 월까지 大和堆近海에서 主 漁場이 形成된다. 오징어는 1 年生으로 當該年度 海況 影響을 많이 받는데 1986 년에는 寒流 強勢에 따른 低水溫 影響으로 25.981 %을 生産하여 前年보다 감소하였다.

마. 鮫鱈網 漁業

鮫鱈網漁業은 西海 및 東支那海를 主 漁場으로 갈치, 조기, 병어, 갑오징어, 꽃게 등을 主 漁獲對象으로 하고 있다. 生産量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86 년에는 海況이 回復되어 1985 년도보다 6.5%가 증가한 282.915 %을 生産하였다.

바. 機船船引網 漁業

機船船引網漁業은 沿岸漁業中 規模가 가장 큰 業種으로 南海岸에서 멸치를 主 漁獲對象으로 하고 있다. 멸치는 연안 暖流性 魚種으로 當該年度 海況變動에 따라 增·減 現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1986 년에는 149.806 %을 生産하여 前年보다 67.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北上暖流의 強勢로 沿

岸 海域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魚群의 接岸 洄遊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 流刺網漁業

流刺網漁業은 東·西·南 全海域에서 조기, 콩치, 멸치, 명태, 꽃게 등을 主漁獲對象으로 하고 있다. 最近 生産量은 平年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며 1986년에는 123,112%을 生産하여 전년보다 6.9%가 증가되었다.

아. 共同漁業

共同漁業은 一定한 水面을 專用하여 貝類, 海藻類 등 주로 定着性 水産動植物을 채포하는 第 1 種共同漁業과 地引網, 船引網, 焚寄抄網, 돌망 등을 사용하는 第 2 種共同漁業 및 囊長網, 隴船網, 杜木網 등을 사용하는 第 3 種共同漁業이 있다.

최근 생산량은 어민들의 적극적인 漁場管理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6년에는 154,883%을 생산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表 23〉 沿近海漁業 業種別 生産 推移

단위 : %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1,308,323 | 1,475,387 | 1,494,514 | 1,725,820 | 115.5 |
| 大型 旋網 | 168,997 | 257,931 | 314,154 | 458,785 | 146.0 |
| 大型 機底 | 185,847 | 219,129 | 229,112 | 271,116 | 118.3 |
| 中型 機底 | 95,232 | 74,815 | 52,749 | 54,603 | 103.5 |
| 近海 採낚기 | 12,272 | 45,157 | 34,218 | 25,981 | 75.9 |
| 鮫 鱗網 | 190,644 | 265,316 | 265,552 | 282,915 | 106.5 |
| 機船船引網 | 79,317 | 103,004 | 89,663 | 149,806 | 167.1 |
| 流刺網 | 134,080 | 123,272 | 115,166 | 123,112 | 106.9 |
| 共同漁業 | 159,164 | 122,624 | 159,197 | 154,883 | 97.3 |
| 其 他 | 282,770 | 264,139 | 234,703 | 204,619 | 87.2 |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3. 養殖漁業

1986년도 養殖漁業은 海況의 順調과 漁場 擴大開發, 養殖技術의 向上, 그리고 漁場管理를 철저히 함으로써 1985년의 787,571%에 비하여 159,394%이 增産된 946,965%을 생산하였다.

養殖漁業 生産量이 水産物 總生産量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보면, 平年('83~'85) 23.9%, 前年 25.4%에서 1986년에는 水産物 總生産量 3,659,724%의 25.9%를 점유함으로써, 기르는 어업의 擴大開發로 養殖漁業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 魚類養殖

1986년 魚類養殖은 2,915%을 생산하여 1985년의 1,413%에 비하여 2.1배가 증산되었다. 이는 養殖漁場의 확대 개발과 海況 順調에 따른 飼

(表 24) 養殖漁業 生産推移 단위: %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491,137 | 596,316 | 787,571 | 946,965 | 120.2 |
| 魚 類 | — | — | 1,413 | 2,915 | 206.3 |
| 貝 類 | 254,796 | 280,966 | 369,035 | 398,980 | 108.1 |
| • 굴 | 151,325 | 181,349 | 242,847 | 255,006 | 105.0 |
| • 홍합 | 60,536 | 37,826 | 48,239 | 34,557 | 71.6 |
| • 주요패류 | 35,138 | 37,441 | 26,708 | 48,000 | 179.7 |
| • 피조개 | 202 | 20,389 | 48,073 | 58,393 | 121.5 |
| • 기타 | 7,595 | 3,961 | 3,168 | 3,024 | 95.5 |
| 海 藻 類 | 236,242 | 314,535 | 397,461 | 524,127 | 131.9 |
| • 미역 | 173,978 | 225,045 | 256,436 | 346,434 | 135.1 |
| • 김 | 57,718 | 79,784 | 109,819 | 143,369 | 130.6 |
| • 다시마 | 2,122 | 3,987 | 11,796 | 9,445 | 80.1 |
| • 기타 | 2,424 | 5,719 | 19,410 | 24,879 | 128.2 |
| 其他水産動物 | 99 | 815 | 19,662 | 20,943 | 106.5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註: (1) 主要貝類는 고막, 바지락, 가무락

(2) 其他水産動物은 우렁쉥이, 새우, 꽃게, 해삼 등

料需給 원활 및 配合飼料의 供給, 養殖技術의 向上 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魚類養殖은 越冬漁場의 개발 확대와 人工種苗 생산 기술 개발 및 魚病對策 등에 큰 進 展을 보임으로써 養殖의 安 定성을 높였고, 방어 위주의 養殖에서 점차 돔, 농어, 넙치, 불락 등 새로운 어종으로 對象魚種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나. 貝類養殖

1986년 貝類養殖 生産量은 398,980 %으로 1985년의 369,035 %에 비하여 29,945 %이 증산되었다.

품종별로는 굴이 255,006 %으로 패류 生産량의 63.9 %를 점하고 있으며 珧조개, 바지락 順으로 生産되었다.

특히 바지락은 1985년 14,350 %에서 1986년에는 35,992 %을 生産하여 가장 높은 生産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다. 海藻類養殖

海藻類養殖은 미역과 김이 主종을 이루고 있으며, 1986년에는 海況 惡 化의 순조로 524,127 %을 生産하여 1985년 397,461 %에 비하여 126,666 %이 증산되었다.

全體 養殖 生産量에 對한 海藻類養殖 生産量의 점유율에 있어서는 1985년 50.5 %에서 1986년도에는 55.3 %로 4.8 % 증가하였고, 品種別로는 미역이 346,434 %으로 66.1 %, 김은 143,369 %으로 41.4 %, 톳 13,289 %, 다시마 9,445 %의 順으로 生産되었다.

4. 內水面 漁業

內水面의 효율적 活用으로 生産을 증대코자 大單位水面에 資源造成을 目的으로 稚魚를 放養하는 한편, 새로운 魚種 및 養魚方法 開發을 積極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1986년도 內水面漁業은 잉어, 송어 등의 增産에 힘입어 전년대비 7.5%가 증가한 57,053 %을 생산하였다. 이 가운데 양식에 의한 생산은 5,274 %으로서 향어, 뱀장어, 송어 등이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민물돔 등 新魚種의 생산이 증가되고 있다.

〈表 25〉 內水面漁業 品種別 生産推移

| | '83 | '84 | '85 | '86 | '86/'85 (%) |
|-----|--------|--------|--------|--------|-------------|
| 計 | 46,996 | 50,121 | 53,064 | 57,053 | 107.5 |
| 붕어 | 11,343 | 13,010 | 14,387 | 12,963 | 90.1 |
| 제철 | 10,766 | 15,513 | 13,801 | 14,890 | 107.9 |
| 잉어類 | 3,215 | 3,291 | 5,042 | 6,967 | 138.2 |
| 미꾸리 | 3,183 | 3,287 | 3,389 | 2,651 | 78.2 |
| 메기 | 1,122 | 1,196 | 1,481 | 1,133 | 76.5 |
| 뱀장어 | 1,003 | 943 | 1,324 | 1,049 | 79.2 |
| 가물치 | 888 | 876 | 1,111 | 1,108 | 99.7 |
| 송어 | 132 | 173 | 420 | 773 | 184.0 |
| 순채 | 86 | 29 | 74 | 193 | 260.8 |
| 기타 | 15,258 | 11,803 | 12,035 | 15,326 | 127.3 |

단위 : %
 資料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5. 遠洋漁業

沿岸國의 규제 강화로 생산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1986년도에는 다랭이어업의 호황과 韓·美共同漁業事業의 호조 및 北太平洋 公海上의 오징어流刺網漁業 정착, 南西大西洋 오징어채낚기漁業 등 新漁場 진출로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21.2%가 증가되었다.

가. 다랭이어업

다랭이어업은 延繩(주낙)과 旋網漁業으로 나눌 수 있으며 延繩漁業은 남개다랭이를 주로 漁獲하여 봉조된 원료로 공급하는 海外 基地式 操業方法

과 참다랭이, 눈다랭이, 황다랭이를 주로 漁獲하여 뒷감용으로 공급하는 獨航式 方法으로 구분된다.

1986년도에는 228척의 다랭이延繩 漁船이 출어하여 전년보다 2.5% 증가된 95,401%을 어획하였다.

또한 주로 가다랭이를 대상으로 한 旋網漁船은 14척이 출어하여 전년보다 148.2%가 증가된 28,000%을 어획하여 수출 및 內需용조립 원료로 공급하였다.

(表 26) 遠洋 漁業 生産 推移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595,927 | 527,819 | 767,030 | 929,886 | 121.2 |
| 참 치 주 낚 | 161,517 | 106,981 | 93,090 | 95,401 | 102.5 |
| 참 치 旋 網 | - | 12,213 | 11,279 | 28,000 | 248.2 |
| 가 다 랑 이 체 낚 기 | 9,366 | 4,815 | 260 | - | - |
| 오징어 流刺 網 및 채 낚 기 | - | 22,669 | 70,432 | 88,945 | 126.3 |
| 상 어 流刺 網 | - | - | 723 | 585 | 80.9 |
| 北 洋 트 롤 | 290,918 | 289,879 | 494,455 | 610,274 | 123.4 |
| 基 地 트 롤 | 119,543 | 85,861 | 93,653 | 101,538 | 108.4 |
| 새 우 트 롤 | 2,422 | 2,865 | 2,088 | 2,743 | 131.4 |
| 기 타 | 12,161 | 2,536 | 1,050 | 2,400 | 228.6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나. 오징어 漁業

오징어 漁業은 流刺網과 채낚기 漁業으로 구분되며, 1986년도에 流刺網 漁業은 北太平洋에 117척이 출어하여 43,028%을 어획하였고 채낚기어선도 뉴질랜드, 호주 및 南西大西洋 漁場에 출어하여 45,917%을 어획하였다.

이중 新漁場開發策의 일환으로 출어한 南西大西洋 漁場에서의 오징어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다. 트롤漁業

트롤어업은 遠洋漁業中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遠洋生産量의 77%를 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중 北洋트롤漁業은 명태, 가자미類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美國의 對外國 漁獲쿼타량은 감소하는 반면, 韓·美共同漁業事業의 확대, 公海上 操業 등이 활발하여 전년보다 23.4%가 증가된 610,274 톤을 생산하였다.

또한 海外基地 트롤漁業은 라스팔마스近海 漁場, 뉴질랜드 漁場 및 파키스탄漁場 등에서 101,538 톤을 어획하였으며, 새우트롤 어업은 中南美的 수리남 및 브라질漁場에서 2,743 톤을 어획하여 전량을 수출하였다.

第2節 水産物 輸出入

1. 水産物 輸出

1971 년도에 1 億\$을 넘어선 水産物 輸出은 '70 년대 2 차에 걸친 油類波動과 世界 主要 沿岸國家의 200 海里 水域宣布, '80 년대의 國際保護 貿易主義 膨脹과 輸出競争 激化로 1985 년까지 9 億\$ 내외에서 踏步狀態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1985 년 하반기(9 월 이후) 엔貨의 강세, 油價의 하락 및 國際金利의 인하 등 3 低의 영향을 받아 輸出環境이 크게 개선되고 輸出制度의 改善과 新製品 開發 및 꾸준한 海外市場 開拓에 힘입어 1,384 百萬\$ 어치를 수출함으로써 전년대비 42.7%가 신장하여 우리나라 總輸出額의 4.0%를 점하였다.

〈表 27〉 水産物 輸出 推移

| | '77 | '82 | '85 | '86 | '86/'85 (%) |
|-----------|--------|--------|--------|--------|-------------|
| 總 輸 出 | 10,046 | 21,616 | 30,283 | 34,714 | 114.6 |
| 水産物輸出 | 703 | 947 | 970 | 1,384 | 142.7 |
| 構 成 比 (%) | 7.0 | 4.4 | 3.2 | 4.0 | |

자료: 수산청 무역과

가. 品目別 輸出

水産物 수출을 沿岸海魚類, 遠洋魚類 및 漁網類로 크게 나누어 보면, 沿岸海魚類는 活鮮魚, 冷凍品, 海藻鹽辛品, 통조림 및 乾魚物・調味加工品 等 其他水産物로 構成되는데 대부분 이종의 수출물량 확보가 순조로와 817 百萬\$어치를 수출하여 전년보다 45.3%가 신장되었으며, 특히 活鮮魚・活貝類는 食生活의 유사성 및 지리적인 이점으르 일본에 주로 수출되었으며 붕장어, 가자미, 꽃게, 피조개, 굴, 바지락을 중심으로 輸出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1千萬\$ 이상 수출하였던 活소라와 전갱이는 생산부진으로 수출이 부진하였다. 冷凍品은 165 百萬\$어치가 수출되어 전년보다 33.9%가 신장되는 호조를 보였고, 海藻鹽辛品은 전년보다 11.9%가 신장된 108 百萬\$어치가 수출되었는데 일본과 民間協定을 통하여 수출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잔미역은 漁村契 協業加工物量을 1,700%으로 확대 지원하고 原藻收買 및 輸出單價를 인상하여 養殖漁民 所得增大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수출이 부진하였던 통조림은 72 百萬\$어치를 수출하여 31.7%가 신장되었는데 수출 主宗品인 굴통조림은 輸出指導價格制 實施, 推薦機關 移管 等 輸出制度를 개선하여 전년보다 40%가 伸張

(表 28) 品 目 別 輸 出 實 績

단위: 천\$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703,073 | 946,760 | 969,992 | 1,384,105 | 142.7 |
| 水 産 物 | 654,551 | 861,171 | 890,815 | 1,282,338 | 143.9 |
| ・活 鮮 魚 | 90,470 | 150,686 | 155,388 | 253,555 | 163.2 |
| ・冷 凍 品 | 109,010 | 130,900 | 123,549 | 165,443 | 133.9 |
| ・海 藻 鹽 辛 品 | 39,703 | 122,277 | 96,519 | 107,960 | 111.9 |
| ・통 조 림 | 33,542 | 50,790 | 54,813 | 72,162 | 131.7 |
| ・其他水産物 | 68,339 | 77,592 | 132,220 | 218,263 | 165.1 |
| ・遠 洋 魚 類 | 313,487 | 328,926 | 328,326 | 464,955 | 141.6 |
| 漁 網 | 48,522 | 85,589 | 79,177 | 101,767 | 128.6 |

자료: 수산청 무역과

된 39 百萬\$ 어치를 수출하였다.

乾魚物 및 調味加工品이 대부분인 其他 水産物은 沿近海 魚類중 가장 輸出 시장세가 커서 65.1%가 신장된 218 百萬\$ 어치를 수출하였으며 乾燥 調味오징어, 쥐치포, 캐비아 및 캐비아代用物, 乾굴, 活갯지렁이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遠洋魚類도 수출물량 확보가 순조로왔을 뿐만 아니라 珧貝용 참치와 明卵의 단가 상승, 미국에서의 명태 필렛 價格競爭力 강화로 수출이 증대되고 새우 및 底棲魚類 역시 수리남, 大西양 水域에서의 생산증가로 수출이 신장되어 전년보다 41.6%가 증가한 465 百萬\$을 수출함으로써 전체 수산물 수출의 33.6%를 차지하였다.

한편 '80년대 들어서 침체상태이던 漁網類 수출은 나이지리아 등 주수입국의 수입규제가 지속된 가운데 이란 등 일부 국가의 수출호조와 우리 상품의 國際競爭力 강화에 힘입어 102 百萬\$을 수출, 전년보다 28.6%가 신장되었고 1981년 이후 처음으로 1 億\$ 이상 수출되는 호조를 보였다.

주요 어종별 수출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單位魚種別로 1 千萬\$ 이상 수출된 魚種이 1985년도에 16개이던 것이 1986년에는 20개 魚種으로 증가되었다.

나. 國別 輸出

輸出對象國은 1985년도에 63개국이었으나 우리 상품의 國際競爭力 강화와 해외 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으로 1986년에는 66개국으로 증가되었으며, 漁網 輸出國을 포함하여 10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주요 대상국별로는 일본에 총수출의 71.8%인 994 百萬\$ 어치를 수출하여 전년보다 45.7%가 증가하였고, 미국에는 53.8%가 증가한 186 百萬\$ 어치를 수출, 총수출의 13.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順이다.

〈表 29〉 主要魚種輸出實績

단위 : 천 \$

| | '85 | '86 | '86/'85 (%) |
|--------------|---------|---------|-------------|
| 참 치 | 143,340 | 166,259 | 116.0 |
| 미 조 개 | 55,690 | 86,664 | 155.6 |
| 遠洋 명란 | 35,905 | 65,115 | 182.2 |
| 乾・調味 오징어 | 36,726 | 53,400 | 145.4 |
| 붕 장 어 | 40,263 | 50,943 | 126.5 |
| 귀 치 포 | 26,139 | 42,453 | 162.4 |
| 굴 통 조 립 | 28,222 | 39,445 | 139.8 |
| 간 미 역 | 31,172 | 32,568 | 104.5 |
| 명 태 필 멧 | 27,498 | 32,494 | 118.2 |
| 가 자 미 | 10,003 | 21,835 | 218.3 |
| 캐비어 및 캐비어代用物 | 394 | 21,432 | 5,439.6 |
| 굴 (生・乾・冷凍) | 12,652 | 19,589 | 154.8 |
| 청 어 알 젓 | 21,056 | 18,217 | 86.5 |
| 加工 붓 | 12,298 | 17,669 | 143.7 |
| 갑 오 징 어 | 10,979 | 17,248 | 157.1 |
| 바지락 (生・冷凍) | 5,543 | 16,565 | 298.8 |
| 꽃 계 | 8,500 | 14,576 | 171.5 |
| 活 갯 지 명 이 | 11,993 | 13,408 | 111.8 |
| 遠洋 새 우 | 11,196 | 12,760 | 114.0 |
| 삼 치 | 7,151 | 12,645 | 176.8 |

자료 : 수산청 무역과

(表 30) 國家別 輸 出 賣 續

단위 : 천 \$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703,073 | 946,760 | 969,992 | 1,384,105 | 142.7 |
| 日 本 | 461,026 | 618,172 | 682,249 | 994,364 | 145.7 |
| 美 國 | 95,284 | 107,203 | 121,247 | 186,454 | 153.8 |
| 스 페 인 | 24,855 | 37,926 | 23,483 | 24,098 | 102.6 |
| 캐 나 다 | 6,571 | 8,799 | 10,527 | 13,659 | 129.7 |
| 호 주 | 4,565 | 7,137 | 8,988 | 10,374 | 115.4 |
| 싱 가 폴 | 4,777 | 14,150 | 8,923 | 8,181 | 91.7 |
| 사우디아라비아 | 2,732 | 12,181 | 8,134 | 6,245 | 76.8 |
| 대 만 | 13,522 | 22,159 | 6,409 | 5,798 | 90.5 |
| 其 他 | 89,741 | 119,033 | 100,032 | 134,932 | 134.9 |

자료 : 수산청 무역과

다. 制度改善

수출 主宗品에 대하여는 輸出指導價格 및 原料收買價格을 인상 조정하여 제값을 보장하고 그 혜택이 어민에게 환원되도록 하였으며, 수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輸出節次 簡素化를 위하여 126개 推薦品目을 대폭 축소 정비하여 資源保護, 魚類 蕃養事業 등 수출제한이 불가피한 40개 품목을 제외하고 86개 품목을 1986. 7. 1부터 자유화함으로써 업계 스스로가 原價節減 등 經營改善과 國際競爭力을 갖추고 해외 輸出需要를 創出토록 하였다.

(表 31) 主要品種에 대한 價格引上效果

| 計 | 輸出價格 | 收買價格 | 漁民受惠額 93 億圓 |
|---------|---------------|---------------|----------------|
| | \$/kg | 원/kg | |
| 굴 통 조 립 | 3.43 → 4.48 | 400 → 580 | 39 |
| 간 미 역 | 1.25 → 1.30 | 85 → 97 | 21 |
| 活 갯 지렁이 | 15.00 → 18.00 | 5,000 → 7,300 | 16 |
| 活 스 라 | 3.75 → 5.23 | 2,760 → 3,953 | 17 |

자료 : 수산청 무역과

〈表 32〉 水産物 輸出 推薦品目

| 推薦維持基準 | 品目數 | 推薦存續品目 |
|--------------------------------|--------|--|
| 計 | 40 個品目 | |
| 輸出市場 支配의인 것 | 5 | 생굴, 乾굴, 冷東굴, 굴통조림, 活갯지렁이 |
| 漁民所得 增大와 總輸出 增大를 위해 自律 規制 必要品目 | 16 | 방장어(活鮮, 冷凍), 삼치(活鮮, 冷凍), 가자미(活鮮, 冷凍), 피조개("), 새조개("), 파주(活鮮, 冷凍), 活소라, 加工吳, 범장어, 조미취치포 |
| 資源保護對象品目 | 4 | 꽃게, 방어(活鮮, 冷凍), 채취 |
| 魚類蕃養事業開發品目 | 2 | 도미, 농성어 |
| 需給調節 必要品目 | 6 | 전갱이(活鮮, 冷凍), 양미리 고등어(活鮮, 冷凍), 실지렁이 |
| 취타管理品目 | 5 | 간미역, 전미역, 오징어, 감오징어, 遠洋참치 |
| 其 他 | 2 | 홍합통조림, 바지락통조림 |

자료: 수산청 무역과

2. 水産物 輸入

우리 經濟의 國際化 趨勢 및 貿易收支 黑字 示顯에 따라 수산물 輸入開 放 壓力도 점차 加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國際貿易 추세에 대처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影響이 적은 어종과 우리 食慣習上 수입 可能性이 적은 어종을 선정하여 자유화하였다.

〈表 33〉 輸 入 自 由 化

단위: 개품목

| | 品目數 | 制限品目數 | 自由化品目數 | 自由化率(%) |
|---------|-------|-------|--------|---------|
| 全 體 | 7,915 | 670 | 7,245 | 91.5 |
| 水 産 物 | 225 | 103 | 122 | 54.2 |
| 農 畜 産 物 | 492 | 145 | 347 | 70.5 |

자료: 수산청 무역과

다만, 수출용 原資材 수입은 가공후 재수출함으로써 附加價値 提高와 雇傭增大를 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輸出入 期別 公告에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海外合作事業에 의한 漁獲物중 현지에서 수출이 곤란한 일부 어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輸入 許容하고 외국인을 위하여 제공되는 觀光業所用 食資材는 外貨獲得用으로 일부 輸入이 허용되고 있다.

1986년도 수산물 수입은 명태, 연어, 청어, 대구, 오징어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34.3%가 증가한 112百萬\$어치가 수입되었으며, 이중 原資材는 103,730%(99,470千\$)으로 輸入物量 및 金額의 89%이었다.

어종별로는 명태, 대구, 연어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國際原資材確保가 비교적 어려웠던 오징어, 청어 수입은 크게 감소되었다.

(表 34) 水産物 輸入 實績 단위: %, 천 \$

| | '85 | | '86 | | '86/'85 (%) | |
|-------|--------|--------|---------|---------|-------------|-------|
| | 物量 | 金額 | 物量 | 金額 | 物量 | 金額 |
| 計 | 90,546 | 83,229 | 116,551 | 111,764 | 128.7 | 134.3 |
| 대 구 | 6,012 | 4,942 | 9,738 | 11,331 | 161.9 | 229.3 |
| 연 어 | 2,014 | 3,847 | 6,423 | 11,694 | 138.9 | 303.9 |
| 명 태 | 19,942 | 6,125 | 46,288 | 17,498 | 232.1 | 285.7 |
| 오 징 어 | 17,134 | 15,789 | 5,729 | 6,555 | 33.4 | 41.5 |
| 청 어 | 17,466 | 22,981 | 11,076 | 16,577 | 63.4 | 72.1 |
| 其 他 | 27,978 | 29,545 | 37,297 | 48,109 | 133.3 | 162.8 |

자료: 수산청 무역과
 註: C-I-F價格, 通關基準

〈表 35〉 合作漁獲物 輸入賣績

단위: %

| | '86 計劃 | 實 績 | 對 比 (%) |
|-----|--------|-------|---------|
| 計 | 7,200 | 3,649 | 50.7 |
| 오징어 | 2,400 | 938 | 39.1 |
| 전갱이 | 1,550 | 1,120 | 72.2 |
| 도미 | 270 | 16 | 5.9 |
| 남꼬기 | 50 | 50 | 100.0 |
| 상어 | 300 | 239 | 77.6 |
| 메기 | 60 | 20 | 33.3 |
| 홍어 | 350 | 187 | 53.4 |
| 其 他 | 2,220 | 1,079 | 48.6 |

자료: 수산청 무역과

第 3 節 水産物 需給

1. 水産物 需給의 一般動向

1986 년도 水産物 總供給量은 3,776 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18.2%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輸出量은 전년대비 26.9%가 증가한 1,100 천톤이며 國內消費量은 2,676 천톤으로 魚貝類의 1인당 年間消費量은 전년보다 12.7%가 증가한 34.6 kg이었다.

수산물은 동물성 蛋白質의 주된 공급원으로서 國民 食糧供給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健康食品으로서도 매우 重要하게 認識되고 있어 취식량도 계속 증가하여 1인 1일당 動物性 蛋白質 섭취량도 1975 년의 10.3 g에서 1985 년에는 16.4 g으로 59.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산물의 動物性 蛋白質 供給比率은 67.8%에서 57.6%로 줄어 들었는데 이는 畜産物 消費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表 36〉 水産物 需給動向

단위: 천톤

| | | '75 | '84 | '85 | '86 | '86/'85 (%) |
|----------|-----|----------------|----------------|----------------|----------------|-------------|
| 供 給 | 生 産 | 2,136 (100) | 2,910 (97) | 3,103 (97) | 3,660 (97) | 118.0 |
| | 輸 入 | - | 84 (3) | 91 (3) | 116 (3) | 127.5 |
| 計 | | 2,136 (100) | 2,994 (100) | 3,194 (100) | 3,776 (100) | 118.2 |
| 需 要 | 內 需 | 1,563 (73) | 2,230 (74) | 2,327 (73) | 2,676 (71) | 115.0 |
| | 輸 出 | 573 (27) | 764 (26) | 867 (27) | 1,100 (29) | 126.9 |
| 1人當年間消費量 | | 24.6 | 31.0 | 30.7 | 34.6 | 112.7 |

자료: 수산청 어정파

註: 1人當年間消費量은 魚貝類만임

〈表 37〉 動物性 蛋白質 供給量

단위: g / 1인 1일

| | '75 | '83 | '84 | '85 | '85/'84 (%) |
|--------------|-----------------|-----------------|-----------------|-----------------|-------------|
| 計 | 15.21 (100) | 29.08 (100) | 29.17 (100) | 28.52 (100) | 97.8 |
| 水産物 (魚貝類) | 10.31 (67.8) | 18.18 (62.5) | 17.85 (61.2) | 16.44 (57.6) | 92.1 |
| 畜産物 | 4.90 (32.2) | 10.90 (37.5) | 11.32 (38.8) | 12.08 (42.4) | 106.7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註: () 내는 구성비(%)임

2. 水産物の 消費構造

수산물 消費構造는 食生活 개선에 따라 加工, 便利食品의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86년의 加工用 利用量은 전체 消費量의 69.2%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煉製品, 봉조림 등 高次加工品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특히 便利, 代用食品으로서 어묵, 어육소세지 등 煉製品 需要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表 38〉 水産物 利用 動向

단위 : 천톤

| | '81 | '84 | '85 | '86 | '86/'85 (%) |
|--------|-----------------|-----------------|-----------------|-----------------|-------------|
| 漁獲量 | 2,270 (100) | 2,252 (100) | 2,336 (100) | 2,730 (100) | 116.9 |
| 鮮魚用 | 1,033 (45.5) | 889 (39.5) | 866 (37.1) | 841 (30.8) | 97.1 |
| | 加工用 | 1,237 (54.5) | 1,363 (60.5) | 1,469 (62.9) | 128.6 |
| • 乾製品 | 271 | 173 | 174 | 213 | 122.4 |
| • 冷凍品 | 281 | 387 | 384 | 516 | 134.4 |
| • 봉조림 | 99 | 140 | 133 | 167 | 125.6 |
| • 煉製品 | 76 | 180 | 173 | 222 | 128.3 |
| • 엽신장품 | 37 | 8 | 13 | 19 | 146.2 |
| • 海藻製品 | 343 | 257 | 246 | 381 | 154.9 |
| • 其他 | 130 | 218 | 346 | 371 | 107.2 |

자료 : 수산청 어정과

註 : (1) 원양생산량은 제외 (2) () 내는 구성비(%)임

(3) 원료어 기준임

第 3 章 漁業經營의 動向

第 1 節 漁 業 經 營

1. 沿岸漁業

沿岸漁業의 經營體數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86년에는 48,509개로서 전년대비 7.9%가 증가하였다.

〈表 39〉 沿岸漁業經營體 推移

단위 : 건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29,661 | 36,326 | 44,952 | 48,509 | 107.9 |
| 機 船 船 引 網 | 148 | 135 | 132 | 130 | 98.5 |
| 帆 船 底 引 網 | 212 | 67 | 48 | 36 | 75.0 |
| 鉸 鰓 網 | 1,885 | 3,576 | 2,727 | 2,544 | 93.3 |
| 流 刺 網 | 10,345 | 13,177 | 16,065 | 17,598 | 109.5 |
| 潛 水 器 | 273 | 273 | 273 | 273 | 100.0 |
| 定 置 網 | 673 | 694 | 716 | 704 | 98.3 |
| 의 술 낙 시 | 3,299 | 3,300 | 3,924 | 4,540 | 115.7 |
| 수 낙 | 5,085 | 7,706 | 9,468 | 10,140 | 107.1 |
| 第 1 種 共 同 漁 業 | 1,147 | 1,578 | 1,598 | 1,681 | 105.2 |
| 第 2 種 共 同 漁 業 | 97 | 91 | 54 | 61 | 113.0 |
| 第 3 種 共 同 漁 業 | 794 | 910 | 917 | 1,020 | 111.2 |
| 其 他 漁 業 | 5,703 | 4,819 | 9,030 | 9,782 | 108.3 |

자료 : 수산청 연근해과

이를 漁業別로 보면 資源保護와 漁業調整을 위하여 新規許可를 억제하고 있는 沿岸鮫鱈網漁業 등과 無動力船으로 운영하는 帆船底引網漁業 등은 減少趨勢에 있으며 漁村契에 免許 優先權이 있는 共同漁業과 沿岸流刺網, 주낙, 채낚기, 통발漁業 등은 증가하고 있다.

沿岸漁業은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小規模 漁業으로 兼業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大規模 埋立 干拓事業과 臨海工團造成, 沿岸漁場 汚染 등으로 漁場環境이 變化되어 漁業經營에 어려움이 많다.

2. 近海漁業

近海漁業은 대부분 어업별로 許可 定限數가 설정되어 있고 新規許可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1986 년의 近海漁業 經營體는 전년에 비해 5 개가 감소하였다.

특히 近海捕鯨漁業의 經營體는 1982. 7 第 34 次 國際捕鯨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1986 년부터 捕鯨漁業을 中止하게 되어 沿岸近海漁業 또는 遠洋漁業으로 轉業함으로써 消滅하였다.

經營形態別로 보면 近海漁業中 漁船規模가 가장 큰 大型旋網漁業의 경우만 法人體가 41.7 %를 차지하고 있고, 餘他漁業은 아직까지도 個人經營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3. 養殖漁業

1986 年 養殖漁業 經營體는 7,772 개로서 1985 年보다 468 개가 증가되었다.

品種別로는 김 양식 경영체가 2,138 개로 전체의 27.5 %이며, 다음이 主要貝類 양식 1,146 개(14.7 %), 피조개양식 815 개(10.5 %)의 순이다.

또한 경영 형태별로는 어촌계(協業包含) 經營體가 4,834 개로서 62.2 %

(表 40) 主要 近海漁業 經營體 推移

단위: 천

| | | '82 | '85 | '86 | '86/'85 (%) |
|-------|----|-----|-----|-----|-------------|
| 計 | 計 | 598 | 573 | 568 | 99.1 |
| | 個人 | 524 | 500 | 505 | 101.0 |
| | 法人 | 53 | 41 | 35 | 85.4 |
| | 共同 | 21 | 32 | 28 | 87.5 |
| 大型機底 | 計 | 291 | 276 | 280 | 101.4 |
| | 個人 | 249 | 238 | 249 | 104.6 |
| | 法人 | 30 | 18 | 14 | 77.8 |
| | 共同 | 12 | 20 | 17 | 85.0 |
| 中型機底 | 計 | 107 | 107 | 107 | 100.0 |
| | 個人 | 104 | 104 | 104 | 100.0 |
| | 法人 | - | - | - | - |
| | 共同 | 3 | 3 | 3 | 100.0 |
| 大型旋網 | 計 | 48 | 48 | 48 | 100.0 |
| | 個人 | 29 | 25 | 26 | 104.0 |
| | 法人 | 18 | 21 | 20 | 95.2 |
| | 共同 | 1 | 2 | 2 | 100.0 |
| 東海區트롤 | 計 | 43 | 43 | 43 | 100.0 |
| | 個人 | 41 | 41 | 42 | 102.2 |
| | 法人 | 2 | 2 | 1 | 50.0 |
| | 共同 | - | - | - | - |
| 大型트롤 | 計 | 88 | 90 | 90 | 100.0 |
| | 個人 | 81 | 83 | 84 | 98.8 |
| | 法人 | 3 | - | - | - |
| | 共同 | 4 | 7 | 6 | 85.7 |
| 近海捕鯨 | 計 | 21 | 9 | - | - |
| | 個人 | 20 | 9 | - | - |
| | 法人 | - | - | - | - |
| | 共同 | 1 | - | - | - |

자료: 수산청 연근해과

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이 個人經營體 1,944 개(25.0%), 水協 994 개(12.8%)의 순으로 매년 어촌계(協業) 經營體가 증가하고 있다.

(表 41) 養殖漁業 經營體 構成

단위: 개

| | 計 | 魚類 | 貝類 | | | | 海藻類 | | | 其他 |
|-------------|-------|-----|-------|-------|-----|-------|-------|---------|----|-----|
| | | | 굴 | 主要貝類 | 피조개 | 其他 | 김 | 미역, 다시마 | 其他 | |
| 計 | 7,772 | 195 | 1,140 | 1,146 | 815 | 1,032 | 2,138 | 753 | 70 | 483 |
| 水協 | 994 | 15 | 150 | 134 | 13 | 39 | 570 | 55 | 1 | 17 |
| 漁村契 (協業) | 4,834 | 86 | 610 | 755 | 324 | 656 | 1,463 | 592 | 60 | 288 |
| 個人 | 1,944 | 94 | 380 | 257 | 478 | 337 | 106 | 106 | 9 | 178 |

자료: 수산청 증식과

註: 主要貝類는 고막, 바지락, 가무라

(表 42) 養殖漁業 經營體 規模

단위: 개

| | 計 | 5人以下 | 6~9人 | 10~49人 | 50~99人 | 100人以上 |
|-----------|-------|-------|------|--------|--------|--------|
| 計 | 7,772 | 3,830 | 325 | 1,967 | 1,087 | 563 |
| 魚類 | 195 | 186 | 8 | - | - | 1 |
| 貝類 | 4,133 | 2,597 | 126 | 691 | 443 | 276 |
| · 굴 | 1,140 | 729 | 55 | 158 | 102 | 96 |
| · 主要貝類 | 1,146 | 528 | 27 | 290 | 182 | 119 |
| · 피조개 | 815 | 703 | 12 | 46 | 39 | 15 |
| · 其他 | 1,032 | 637 | 32 | 197 | 120 | 46 |
| 海藻類 | 2,961 | 663 | 166 | 1,232 | 617 | 283 |
| · 김 | 2,138 | 421 | 101 | 932 | 438 | 246 |
| · 미역, 다시마 | 753 | 209 | 61 | 272 | 175 | 36 |
| · 其他 | 70 | 33 | 4 | 28 | 4 | 1 |
| 其他水産動物 | 483 | 384 | 25 | 44 | 27 | 3 |

자료: 수산청 증식과

註: 主要貝類는 고막, 가무라, 바지락, 其他水産動物은 우렁쉥이, 새우, 꽃게 등

從業者 規模別 構成을 보면 5 인이하 종사경영체가 49.3%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 인이상 49 인이하의 순이다.

특히 養殖技術이 普遍化된 品種에 대한 양식어업권은 다수 어민의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漁村契에 優先 免許토록 함으로써 10 인이상의 다수인이 공동 경영하는 경영체가 316 개가 증가하여 3,617 개로 되었다.

또한 經營體 規模를 보면 패류양식 경영체가 주로 5 인이하의 소규모 경영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조류양식은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다. 이는 海藻類 養殖漁業權이 대부분 水協 및 漁村契 소유로 地先의 다수어민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4. 內水面 漁業

1986 년 內水面漁業 經營體는 701 개로서 전년보다 140 개가 증가되었다. 이는 송어, 민물돔, 향어, 슈피송어, 찬넬메기, 도날드송어 등의 양식기술 개발과 國內移殖 飼育에 성공을 거두고 민물고기의 수요가 증가되어 探算 性이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魚種別 構成은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로 향어 등을 양식하는 가두리 양어장과 무지개송어, 뱀장어, 민물돔 양어장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表 43〉 內水面 魚種別 經營體 推移

| | | 단위 : 개 | | | | |
|---|----|--------|-----|-----|-----|-------------|
| | | '83 | '84 | '85 | '86 | '86/'85 (%) |
| 計 | | 367 | 403 | 561 | 701 | 125.0 |
| 잉 | 어 | 212 | 215 | 232 | 214 | 92.2 |
| 뱀 | 장어 | 83 | 91 | 114 | 123 | 107.9 |
| 송 | 어 | 15 | 27 | 74 | 119 | 160.8 |
| 기 | 타 | 57 | 70 | 141 | 245 | 173.8 |

자료 : 수산청 자원조성과

5. 遠洋漁業

遠洋漁業은 연안국의 漁業資源 自國化政策 추진에 따른 入漁規制 및 入漁條件의 강화와 미국의 北太平洋 漁獲쿼타 激減 등 國際漁業環境의 惡化 및 漁船의 老朽化, 入漁料 증가 등 經費負擔이 過重되어 遠洋漁業 經營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1986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랭이어선이 11척, 오징어 어선이 17척, 트물어선이 6척, 기타어선 2척 등 36척이 증가되었으며, 遠洋漁業 經費중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油類價格의 下落과 船需品 價格이 안정세를 유지하여 出漁經費의 증가요인이 해소되는 한편, 三低景氣의 적절한 收容과 魚價의 회복 추세에 따라 收益性과 財務構造가 다소 개선되었다.

〈表 44〉 遠洋漁業 經營 推移

단위: 척

| | '83 | '84 | '85 | '86 | '86/'85 (%) |
|--------|-----|-----|-----|-----|-------------|
| 計 | 646 | 614 | 617 | 653 | 105.8 |
| 다랭이漁業 | 281 | 237 | 231 | 242 | 104.8 |
| · 獨航주낙 | 169 | 156 | 156 | 167 | 107.1 |
| · 基地주낙 | 101 | 69 | 64 | 61 | 95.3 |
| · 旋網 | 11 | 12 | 11 | 14 | 127.3 |
| 오징어漁業 | 119 | 136 | 151 | 168 | 111.3 |
| · 流刺網 | 99 | 117 | 98 | 117 | 119.4 |
| · 재낙기 | 20 | 19 | 53 | 51 | 96.2 |
| 트물漁業 | 230 | 233 | 229 | 235 | 102.6 |
| · 獨航 | 43 | 43 | 45 | 44 | 97.8 |
| · 基地 | 80 | 83 | 75 | 96 | 128.0 |
| · 새우 | 107 | 107 | 109 | 95 | 87.2 |
| 기타漁業 | 16 | 8 | 6 | 8 | 133.3 |

자료: 수산청 원양생산담당실

註: 기타漁業은 가다랭이재낙기, 상어流刺網 등임

遠洋漁業의 經營改善을 위하여 適正船腹의 유지와 省에너지 漁船 代替, 漁船員의 操業環境 및 처우를 개선하여 生産性を 극대화하고 어획물의 附加價值를 높이고 內需市場을 擴大하도록 指導하는 한편, 企業經營의 취약점을 제거함과 동시에 무리한 施設投資를 억제하고 적정 經營規模를 유지케 하여 내실있는 企業經營을 유도하였다.

第2節 價格 動向

1. 水産物

1986년 水産食品 가격은 總都賣物價가 전년대비 2.2%, 農産食品 가격 이 3.5% 하락한데 비하여 22.5%나 상승하였다. 이는 日本의 「엔」貨 값 세로 輸出需要가 증가하고 9월이후 盛需期에 漁獲이 다소 저조한데 기인 된 것으로 풀이된다.

品目別 價格은 鮫를 제외한 鮮魚類 대부분의 品目이 상승하였다. 특히, 加工原料用의 需要가 증가한 고등어와 一般 鮮魚需要가 增加한 조기 및 對美 漁獲쿼타량이 감소한 명태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乾魚類는 전품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海藻類의 김, 미역은 大豐作으로 가격이 크게 下落하였다.

(表 45) 都 賣 物 價 推 移

단위 : %

| | '84 | | '85 | | '86 | |
|-------|---------|----------|---------|----------|---------|----------|
| | 전년 말 대비 | 전년 평균 대비 | 전년 말 대비 | 전년 평균 대비 | 전년 말 대비 | 전년 평균 대비 |
| 總都賣物價 | 1.6 | 0.7 | 1.0 | 0.9 | △ 3.7 | △ 2.2 |
| 農産食品 | 13.4 | 0.0 | 1.1 | 5.9 | △ 12.1 | △ 3.5 |
| 水産食品 | △ 13.9 | △ 0.8 | 22.1 | 6.8 | 27.7 | 22.5 |
| ・鮮魚介類 | △ 8.2 | 5.3 | 26.4 | 8.9 | 39.6 | 32.1 |
| 조기 | △ 9.1 | 27.3 | 57.7 | 12.4 | 73.0 | 74.4 |
| 갈치 | △ 19.9 | △ 5.5 | 12.5 | 0.1 | 15.5 | 2.7 |
| 고등어 | 28.9 | 17.7 | 57.1 | 64.7 | 34.2 | 44.8 |
| 물오징어 | △ 4.5 | △ 2.7 | 8.0 | 0.9 | 9.6 | 10.1 |
| 명태 | △ 20.5 | △ 1.6 | 33.5 | 3.4 | 56.0 | 31.5 |
| 가자미 | 0.0 | △ 2.1 | 0.8 | 22.2 | 28.7 | 2.2 |
| 굴 | 0.4 | 13.7 | △ 10.7 | △ 15.0 | △ 24.7 | △ 18.9 |
| ・鹽乾魚類 | △ 24.3 | △ 5.6 | 8.9 | △ 5.4 | △ 6.1 | 6.1 |
| 복어 | 11.0 | 2.5 | 24.9 | 17.9 | △ 6.4 | △ 0.9 |
| 진오징어 | △ 13.1 | 6.9 | △ 3.3 | △ 1.3 | 21.6 | △ 0.1 |
| 진멸치 | △ 35.3 | △ 8.1 | 16.5 | △ 13.2 | △ 13.6 | 15.9 |
| 진어포 | △ 10.1 | △ 13.8 | △ 2.8 | 7.8 | △ 18.1 | △ 11.5 |
| ・海藻類 | △ 33.0 | △ 34.5 | 18.2 | 34.2 | △ 17.9 | △ 25.9 |
| 김 | △ 38.9 | △ 13.3 | 11.1 | 38.7 | △ 16.5 | △ 33.3 |
| 미역 | △ 3.6 | △ 13.3 | 33.4 | 4.7 | △ 22.0 | 2.2 |

자료 : 한국은행, 도매물가

2. 漁業用 油類

漁業用油類는 沿岸海 全漁船에 대하여 附加價値稅 10%와 特別消費稅 9%를 免稅供給하고 있다.

1986년에는 3.388 천%을 공급하여 전년에 비하여 11.7%를 더 공급함으로써 年間 340 億원의 어민 油類費負擔을 輕減하였으며, 免稅時限도 1986. 12. 31 까지에서 1991. 12. 31 까지로 연장하였다.

油價는 國際石油市場의 安定으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營漁活動을 크게 조장하였다.

〈表 46〉 免稅油類 供給實績

단위: 천%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1,981 | 2,553 | 3,033 | 3,388 | 111.7 |
| 輕油 | 1,122 | 2,013 | 2,413 | 2,725 | 112.9 |
| 輕質重油 | 590 | 469 | 567 | 601 | 106.0 |
| 重油 | 259 | 55 | 32 | 39 | 121.9 |
| 潤滑油 | 10 | 16 | 21 | 23 | 109.5 |
| 漁民受惠額 (百萬圓) | 6,058 | 25,980 | 32,894 | 34,010 | 103.4 |

자료: 수산청 어정과

〈表 47〉 免稅油價와 市中油價의 比較

단위: 원/드럼

| | 免稅油價 | 市中油價 | 差額 |
|------|--------|--------|--------|
| 平均 | 33,484 | 40,359 | 6,875 |
| 輕油 | 34,931 | 46,000 | 11,069 |
| 輕質重油 | 31,731 | 35,890 | 4,159 |
| 重油 | 27,612 | 31,546 | 3,934 |
| 燈油 | 39,661 | 48,000 | 8,339 |

자료: 수산청 어정과

특히 1986년에는 地域의인 均衡發展과 零細漁民에게 免稅惠澤이 高루 미치지도록 하기 위하여 落島·僻地 地域과 小型漁船에 대한 免稅油 擴大供給에 注力하였다.

落島·僻地의 경우는 油類 引受·引渡의 附帶費用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輸送 및 管理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人件費와 管理費를 지원하며, 서비스改善 및 弘報活動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1986년 落島·僻地 供給量은 전년 보다 53%가 증가한 207천%에 이르렀다.

〈表 48〉 落島·僻地 免稅油 供給

| | 目 標 | '84 | '85 | '86 |
|------------|-----|-----|-------|-------|
| 供給對象漁村契數 | 967 | 305 | 771 | 898 |
| 供給量(천%) | — | 82 | 135 | 207 |
| 漁民受惠額(百萬원) | — | 998 | 1,643 | 2,291 |

자료: 수산청 어정과

3. 漁網類

漁網類는 水産業協同組合이 系統組織을 통하여 共同購買하여 어민에게
 영가로 공급하고 있다. 漁網類의 內需價格은 1985 년에 비하여 1986 년에
 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漁網輸出 回復에 따른 漁網原絲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表 49〉 漁網類 價格推移

| | '82 | '84 | '85 | '86 | '86/'85(%) |
|-------|-------|-------|-------|-------|------------|
| 漁 網 | 2,846 | 3,782 | 3,782 | 4,300 | 113.7 |
| 로 우 프 | 900 | 1,221 | 1,188 | 1,188 | 100.0 |
| 延 繩 | 2,270 | 3,355 | 3,355 | 3,542 | 105.6 |

자료: 대한어망공업협회

註: 漁網과 延繩은 나이트론 210 D/6 ply 기준이며, 로우프는 폴리프로필렌
 기준임.

4. 漁船 및 裝備

漁船建造費는 船質別, 漁業別, 規模別로 차이가 있으나 1986 年 政府支
 援事業에 의한 50%未滿 漁船의 9%당 평균 建造費는 合成樹脂(FRP)船이
 2,949 천원, 木·鋼船이 1,968 천원으로 合成樹脂(FRP)船은 前년의 2,830
 천원보다 4.2%가 상승되어 施設의 고급화가 이루어졌으나 木·鋼船은 전

년의 2,106 천원보다 6.5%가 낮아 필수 施設裝備의에는 생략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6년도 漁船用 디젤機關의 供給價格은 機種 및 規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마력당 평균 153천원으로 전년의 148천원보다 3.4%가上昇하였고 其他裝備 供給價格도 최저 11.7%, 최고 40.4%가 올랐다.

〈表 50〉 裝 備 供 給 價 格 推 移

| | '85 | | | '86 | | | '86/'85 (%) |
|-------|-----|---------|-------|-----|---------|-------|-------------|
| | 臺 數 | 事業費 | 臺當價格 | 臺 數 | 事業費 | 臺當價格 | |
| 無 電 機 | 100 | 108,153 | 1,082 | 100 | 120,943 | 1,209 | 111.7 |
| 魚群探知機 | 19 | 54,116 | 2,848 | 15 | 60,000 | 4,000 | 140.4 |
| 方向探知機 | 7 | 7,408 | 1,058 | 8 | 10,400 | 1,300 | 122.9 |
| 로 랑 | 30 | 46,037 | 1,535 | 20 | 36,000 | 1,800 | 117.3 |
| 레 이 다 | 31 | 98,548 | 3,179 | 15 | 60,000 | 4,000 | 125.8 |

자료: 수협중앙회

第 3 節 水 産 金 融

水産金融의 自立基盤 확립을 위하여 信用店舖의 확장 및 貯蓄運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은-라인 施設을 42개소에서 47개소로 확대하여 預受金 증대를 꾀하였으며, 資金의 擴大供給 및 適期支授으로 漁民의 便益을 圖謀하였다.

〈表 51〉 水 産 資 金 推 移

| | 단위: 백만원 | | | | |
|---------|---------|---------|---------|---------|-------------|
| | '77 | '82 | '85 | '86 | '86/'85 (%) |
| 計 | 117,769 | 367,756 | 592,566 | 722,818 | 122.0 |
| 財 政 資 金 | 25,982 | 95,796 | 195,050 | 230,944 | 118.4 |
| 金 融 資 金 | 91,787 | 271,960 | 397,516 | 491,874 | 123.7 |

자료: 수협중앙회

註: 財政資金은 資特金, 國民投資基金, 水産振興基金, 後繼者育成資金 包含

1. 水産資金의 調達

水産資金은 水協 自體資金과 政府의 財政資金, 貸下金 等 金融借入金으로 구성된다.

1986 年말 信用事業 총규모는 722,818 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2.0% 증가되었으며 水協의 資金自立度는 47.9%에서 50.8%로 높아졌다.

〈表 52〉 水 産 資 金 調 達 단위: 백만원

| | '85 | | '86 | | '86/'85 (%) |
|-------------|---------|--------|---------|--------|-------------|
| | 金額 | 構成비(%) | 金額 | 構成비(%) | |
| 計 | 592,566 | 100 | 722,818 | 100 | 122.0 |
| 自體資金 | 283,896 | 47.9 | 366,932 | 50.8 | 129.2 |
| ・預受金 | 140,132 | 23.6 | 165,130 | 22.9 | 117.8 |
| ・特別會計預託金 | 57,374 | 9.7 | 73,246 | 10.1 | 127.7 |
| ・會員換授受 | 67,719 | 11.4 | 108,123 | 15.0 | 159.7 |
| ・其他 | 18,671 | 3.2 | 20,433 | 2.8 | 109.4 |
| 借入金 | 308,670 | 52.1 | 355,886 | 49.2 | 115.3 |
| ・韓銀 | 109,347 | 18.5 | 117,620 | 16.3 | 107.6 |
| ・財政資金 | 85,469 | 14.4 | 102,704 | 14.2 | 120.2 |
| ・國民投資基金 | 92,564 | 15.6 | 104,978 | 14.5 | 113.4 |
|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 14,217 | 2.4 | 20,162 | 2.8 | 141.8 |
| ・水産振興基金 | 2,800 | 0.5 | 3,100 | 0.4 | 110.7 |
| ・外貨借入金 | 4,273 | 0.7 | 7,322 | 1.0 | 171.4 |

자료: 수협중앙회

〈表 53〉 水協 自體資金 造成 實績 단위: 백만원

| | '85 末殘 | '86 純 增 | | | '86 末殘 |
|-------|---------|---------|---------|-------|---------|
| | | 目標 | 實績 | % | |
| 計 | 427,626 | 89,251 | 100,743 | 112.9 | 528,369 |
| 漁民貯蓄 | 153,125 | 29,251 | 46,440 | 158.8 | 199,565 |
| ・相互金融 | 76,315 | 15,000 | 34,025 | 226.8 | 110,340 |
| ・出資 | 37,206 | 6,468 | 5,493 | 84.9 | 42,699 |
| ・共濟 | 39,604 | 7,783 | 6,922 | 88.9 | 46,526 |
| ・般受信 | 274,501 | 60,000 | 54,303 | 90.5 | 328,804 |
| ・中央會 | 140,132 | 40,000 | 24,996 | 62.5 | 165,128 |
| ・組合 | 134,369 | 20,000 | 29,307 | 146.5 | 163,676 |

자료: 수협중앙회

2. 水産資金의 運用

1986년 運用資金중 貸出金은 602,347 백만원으로 총규모의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支拂準備金 等 其他資金에 16.7%가 운용되었다.

貸出金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營漁資金은 沿近海漁業에 2,710 억원, 遠洋漁業에는 470 억원을 공급하였으며, 1인당 信用貸出 限度도 3 백만원에서 5 백만원으로 늘렸다.

〈表 54〉 水 産 資 金 運 用

단위: 백만원

| | '85 | | '86 | | '86/'85 (%) |
|-----------|---------|------|---------|------|-------------|
| | 金額 | 構成比 | 金額 | 構成比 | |
| 計 | 592,566 | 100 | 722,818 | 100 | 122.0 |
| 貸 出 金 | 514,679 | 86.9 | 602,347 | 83.3 | 117.0 |
| 他 事 業 支 援 | 11,236 | 1.9 | 13,874 | 1.9 | 123.5 |
| • 一般事業 | 9,785 | 1.7 | 11,471 | 1.6 | 117.2 |
| • 特別會計 | 1,451 | 0.2 | 2,403 | 0.3 | 165.6 |
| 支 拂 現 金 | 47,755 | 8.0 | 56,192 | 7.8 | 117.7 |
| 其 他 | 18,896 | 3.2 | 50,405 | 7.0 | 266.7 |

자료: 수협중앙회

〈表 55〉 營 漁 資 金 供 給

단위: 억원

| | | '85 | '86 | '86/'85 (%) |
|-------|----------|--------|--------|-------------|
| 所 要 額 | | 5,789 | 6,311 | 109.0 |
| 供 給 額 | | 2,870 | 3,180 | 110.8 |
| | (供給率: %) | (49.6) | (50.4) | - |
| 沿 近 海 | 所 要 額 | 4,328 | 4,811 | 111.2 |
| | 供 給 額 | 2,400 | 2,710 | 112.9 |
| | (供給率: %) | (55.5) | (56.3) | - |
| 遠 洋 | 所 要 額 | 1,461 | 1,500 | 102.7 |
| | 供 給 額 | 470 | 470 | 100.0 |
| | (供給率: %) | (32.2) | (31.3) | - |

자료: 수협중앙회

第 4 章 水産物 増産

第 1 節 沿近海 漁場環境의 變化

1. 海 況

1986 년도 우리나라 沿近海의 海況을 季節別로, 平年海況과 比較하여 보면

冬季 海況은 暖流系水(大韓暖流, 東韓暖流, 黃海暖流)가 약세인 반면, 北韓寒流 및 黃海冷水가 강세였고 南海岸 沿岸水가 발달하여 全海域이 低溫相이었다.

春季 海況은 계속 暖流系水가 약세이고 北韓寒流 및 黃海冷水가 강세였다. 그리고 장기강沿岸域 20 m 以深層에 10°C以下 冷水가 분포하였으며, 南海岸 沿岸水는 春季初까지 지속후 春季末에는 南海中部 沿岸에 低溫水로 잔존하였다. 따라서 春季初에는 東海中部 一部 海域을 제외한 전체역이 低溫相이었으며, 春季末에는 西海의 外海域과 東海 一部 海域을 제외한 전체역이 低溫相이었다.

夏季 海況은 계속 暖流系水가 약세인 반면, 黃海冷水는 강세였다. 그리고 北韓寒流는 平年相이었으며, 南海沿岸에 低溫水가 지속하였다. 따라서 東海 中部 沿岸 一部 海域을 제외한 전체역이 低溫相이었다.

秋季 海況은 夏季까지 약세였던 黃海暖流가 秋季初에, 大韓暖流 및 東韓暖流는 秋季末에 각각 강세로 변하였다. 그리고 夏季에 平年相이었던 北韓寒流가 秋季初 이후 약세였다. 한편 秋季初까지 강세였던 黃海冷水는 秋季末에 약세를 보였다.

따라서 秋季初에는 東海 沿岸海域과 제주도 西方海域을 포함한 西海南部海域 및 제주도 南方海域은 高溫相이었으며 그의 海域은 低溫相이었다.

그리고 秋季末에는 東海의 측산 이북 沿岸海域 50 m층을 제외한 전체 海域이 高溫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986 년의 海況은 暖流系水가 강세를 보인 秋季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平年에 비하여 低溫相이었다.

2. 漁 況

가. 大型旋網漁業

겨울에서 봄철까지는 北上暖流와 冷水間에 水溫前線이 濟州道以南 海역에서 지속함으로써 이 前線邊에 고등어 삼치의 越冬群 밀집으로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으며 여름철 이후에도 沿岸側으로부터 低溫水가 外海로 확장하면서 濟州道에서 對馬島 사이에서 稠密한 水溫前線을 형성함으로써 南下魚群의 來遊量 증가로 密集漁場이 형성되었다. 이로써 旋網漁業에서는 연중 지속된 水溫前線邊에서 對象魚群의 來遊量 증가로 1985 년에 비하여 고등어 134 %, 정어리 139 %, 말쥐치 177 %의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나. 오징어 채낚기 漁業

東海岸 오징어 中心漁場인 鬱陵島에서 大和堆사이 海역에는 平年보다

강세로南下하는冷水 영향으로 低溫相 (1~5°C)이 지속되었으며 또한 北上 暖流의 弱勢로 水溫前線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魚群을 分散回遊케 하였다. 따라서 漁場은 산발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전년에 비하여 76%의 저조한 어황을 보였다. 西海岸에서는 魚群密集에 알맞은 水溫躍層은 형성되었으나 평년보다 강세인 底層冷水가 전역으로 확산됨으로써 密集漁場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漁場範圍의 확산으로 魚群密度가 낮은 값을 보임으로써 전년에 비하여 88%의 저조한 어황을 보였다.

다. 刺網漁業

東海岸 底層域에는 北韓寒流가 평년보다 강세로南下함으로써 冷水性 어족의 來遊量 증가로 명태 刺網에서는 密集漁場이 형성되었으며 表層을 操業區域으로 하는 꽁치 刺網漁業도 沿岸側에서 寒·暖流間에 稠密한 水溫前線을 형성함으로써 魚群密集으로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南海岸에는 漁期初에 低溫相 지속으로 멸치魚群의 接岸回遊가 부진함으로써 멸치 어업은 저조한 어황을 보였으나 夏季 이후 暖流의 평년상 회복으로 어황도 회복되었다. 西海 및 東支那海域을 操業區域으로 하는 조기 流刺網 漁業은 겨울에서 봄철까지에는 Socotra 近海에 형성된 15°C 水溫前線邊에서 密集漁場을 보였으나 여름철 이후 魚群의 복상으로 어장도 복잡되었으나 低溫域의 확산으로 부진한 어황을 보였다.

라. 近海 鮫鱈網 漁業

10°C 以下の 黃海底層 冷水가 평년에 비하여 強勢로 확장하면서 暖流와의 水溫前線이 濟州道 이남의 東支那 海域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水溫前線邊에서는 갈치, 조기類를 대상으로 활발한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冷水 발달 레역인 西海에서는 부진한 어황을 보였다. 이로써 鮫鱈網漁業

은 전년대비 3%가 감소된 어황을 보였다.

3. 主要 水産資源 動向

沿岸海漁業의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총 어획량은 1974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최근 5개년간 계속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6년의 어획량은 전년에 비하여 18%가 증가하였다. 반면 單位努力當 漁獲量은 1974년 이후 계속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主要 魚種에 대한 漁獲狀況을 보면 귀지류의 어획량은 전년에 비하여 28% 증가한 328천%으로서 연근해 어획량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외 멸치(202천%), 정어리(161천%), 갈치(108천%), 고등어(104천%)의 순으로 어획되었으며 이들 5개 어종의 沿岸海漁業 全體 어획물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에 해당된다.

한편 生物學的 要因과 資源密度指數 變動의 推移等 資源力學的인 諸 要因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된 沿岸海 主要 魚種別 資源動向을 보면, 정어리가 증가추세에 있는 자원이며, 멸치, 말리치, 갑오징어 등은 비교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참조기, 참돔 등 대부분의 底棲魚類와 전갱이, 꽁치 등의 資源狀態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외 꽃게자원은 불규칙한 資源動向을 보이고 있으며 多獲性 魚種인 갈치 및 고등어資源의 수준은 최근 약간 저하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第 2 節 水産資源의 造成管理

1. 人工魚礁 施設

人工魚礁는 有用 水産資源의 産卵, 棲息에 알맞는 환경을 造成해주는

효과가 있어 1971 년부터 沿岸水域 20 ~ 40 m 水深에 시설하고 있다.

1980 년까지는 1,539ha를 개발하는데 불과하였으나 1981 년부터는 개발을 확대하여 1986 년에는 8,236 백만원을 投資하여 6,193ha에 시설함으로써 總 23,994ha를 개발하였다.

(表 56) 道別 人工魚礁施設實績 단위: 헥타, 개, 백만원

| | 計 | | | '71 ~ '80 | | | '81 ~ '86 | | |
|----|--------|------------------|--------|-----------|-----------------|-------|-----------|------------------|--------|
| | 面積 | 物量 | 金額 | 面積 | 物量 | 金額 | 面積 | 物量 | 金額 |
| 計 | 23,994 | 173,180 (287) | 29,483 | 1,539 | 31,105 (100) | 1,023 | 22,455 | 142,075 (187) | 28,460 |
| 京畿 | 157 | 2,055 | 159 | 59 | 1,465 | 24 | 98 | 590 | 135 |
| 江原 | 4,144 | 32,349 (102) | 4,986 | 306 | 6,196 (58) | 291 | 3,838 | 26,153 (44) | 4,695 |
| 忠南 | 519 | 4,557 | 574 | 76 | 1,900 | 31 | 443 | 2,657 | 543 |
| 全北 | 526 | 3,720 (7) | 549 | 54 | 1,350 | 21 | 472 | 2,370 (7) | 528 |
| 全南 | 4,919 | 33,558 (47) | 6,577 | 267 | 5,490 (11) | 149 | 4,652 | 28,068 (36) | 6,428 |
| 慶北 | 4,294 | 28,757 (32) | 5,204 | 328 | 4,777 (26) | 210 | 3,966 | 23,980 (6) | 4,994 |
| 慶南 | 6,935 | 45,507 (78) | 8,509 | 247 | 4,886 (5) | 166 | 6,688 | 40,621 (73) | 8,343 |
| 濟州 | 2,500 | 22,677 (21) | 2,925 | 202 | 5,041 | 131 | 2,298 | 17,636 (21) | 2,794 |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註: () 內는 古船魚礁 隻數임

2. 種苗 生産放流

資源의 增強 및 유지를 위해 1973 년부터 1986 년까지 種苗培養場 7 개소를 완공한데 이어 1986 년에도 全北 扶安에 1 개소를 시설중에 있다.

資源造成을 위하여 國立水産振興院에서는 1986 년에 전북 756 천尾, 우

명쟁이 6,426 천尾, 보리새우 3,700 천尾, 넙치, 돔, 복어 312 천尾, 진주조개 200 천尾 등 총 11,394 천尾의 種苗를 生産하여 漁村契와 民間養殖場 등에 分讓하거나 放流하였다.

(表 57)

水産種苗培養場施設

단위: 백만원, 천미

| | 施設年度 | 施設費 | 主要生産種苗 | 生産実績 | |
|-----|------|-------|--------------------|---------|--------|
| | | | | '76~'85 | '86 |
| 計 | | 4,970 | | 26,515 | 11,394 |
| 北濟州 | '73 | 425 | 전복, 참돔 | 5,541 | 248 |
| 注文津 | '78 | 303 | 전복, 우렁쟁이 | 5,578 | 154 |
| 麗川 | '79 | 350 | 전복, 우렁쟁이, 돔, 복어 | 4,682 | 1,451 |
| 迎日 | '80 | 292 | 전복, 우렁쟁이 | 3,027 | 1,140 |
| 巨濟 | '82 | 711 | 전복, 보리새우, 넙치, 복어 등 | 7,687 | 7,803 |
| 莞島 | '84 | 975 | 우렁쟁이, 복어 | — | 598 |
| 保寧 | '85 | 959 | 전복, 조피물막, 대하 | '87생산 | '87생산 |
| 扶安 | '86 | 955 | 어류, 전복, 갑각류 | '88생산 | '88생산 |

자료: 국립수산물진흥원

또한 沿岸漁場 資源造成의 加速化和 資源造成의 民間參與 誘導를 위하여 民間 種苗培養場에서 生産한 꽃게 36 만尾, 우럭 29 만尾를 1986년도에 처음으로 買入 放流하였다.

대구 人工受精孵化 放流事業은 1981년부터 주요 産卵場인 慶南鎮海灣에서 慶尙南道 주관하에 國立水産振興院의 技術協調로 실시하고 있는데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8,121 백만알을 방류하였으며 1986년에는 2,519 백만알을 방류하였다.

또한 母川에 回歸하는 습성을 이용하는 연어 放流事業은 1967년 慶南 密陽江에서 국내 최초로 연어 稚魚 243 천尾를 人工孵化 放流한 이래 매년 확대 실시해 왔으며 1986년에도 5,590 천尾를 방류하였다.

(表 58) 연어放流 및 採捕實績

| | 計 | '67~'84 | '85 | '86 | '86/'85 (%) |
|---------|--------|---------|-------|-------|----------------|
| 放流(천마리) | 29,185 | 19,785 | 3,810 | 5,590 | 146.7 |
| 採捕(마리) | 31,831 | 16,843 | 6,011 | 8,977 | 149.3 |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3. 內水面 稚魚放養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遊漁環境을 조성하기 위해 1986년에는 국비 551백만원을 투자하여 잉어, 떠붕어, 백연어, 향어, 무지개 송어 등의 稚魚 35백만마리를 放養함으로써 1986년까지 우리나라 內水面중 稚魚放養可能面積 79천ha중 76%에 해당하는 59천ha에 稚魚를 放養하였고 내수면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11개소의 水產資源保全地域을 신규로 지정하였다.

(表 59) 稚魚放養實績 단위: 천마

| | 水面積 (ha) | 計 劃 (A) | 實 績 | | | B/A (%) |
|-------------------|-------------|------------|---------|---------|--------|------------|
| | | | 計(B) | '71~'85 | '86 | |
| 計 | 78,661 | 786,610 | 598,242 | 563,613 | 34,629 | 76.1 |
| ○ 大單位水面 | 54,044 | 540,440 | 424,276 | 389,647 | 34,629 | 78.5 |
| 牙 山 湖 | 2,800 | 28,000 | 4,603 | 4,603 | - | 16.4 |
| 昭 陽 湖 | 7,140 | 71,400 | 55,440 | 52,048 | 3,392 | 77.6 |
| 衣 岩 湖 | 1,378 | 13,780 | 2,060 | 2,060 | - | 14.9 |
| 忠 州 湖 | 9,700 | 97,000 | 31,237 | - | 31,237 | 32.2 |
| 完了水面 (14 個湖) | 33,026 | 330,260 | 330,936 | 330,936 | - | 100.2 |
| ○ 優良貯水池 | 24,617 | 246,170 | 173,966 | 173,966 | - | 70.7 |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註: 放養完了水面은 淸平, 南陽, 破壤, 春川, 槐山, 大淸, 禮唐, 插橋, 雲岩, 榮山, 羅州, 寶城, 安東, 晉陽湖等

〈表 60〉 内水面 水産資源 保全地域 指定

| | 地 域 別 | 面 積 | 告 示 日 字 |
|-------|-----------|-----------|-------------|
| 大單位水面 | 15 個所 | 27,485 ha | |
| | 清 平 湖 | 810.1 | '86. 7. 21 |
| | 牙 山 湖 | 2,270.2 | '84. 12. 27 |
| | 南 陽 湖 | 711.2 | " |
| | 破 虜 湖 | 1,026 | " |
| | 昭 陽 湖 | 5,431.6 | '86. 7. 21 |
| | 春 川 湖 | 1,507.4 | '84. 12. 27 |
| | 大 清 湖 | 1,547.9 | '86. 7. 21 |
| | 槐 山 湖 | 147.3 | '86. 7. 21 |
| | 禮 唐 湖 | 959.4 | " |
| | 挿 橋 湖 | 2,174 | " |
| | 雲 岩 湖 | 1,542 | " |
| | 羅 州 湖 | 780 | " |
| | 賈 城 湖 | 122.5 | " |
| | 榮 山 湖 | 4,508.4 | " |
| 安 東 湖 | 3,947 | " | |
| 河 川 | 4 個所 | 9,335 | " |
| | 南 漢 江 上 流 | 60 | '84. 12. 27 |
| | 襄 陽 南 大 川 | 135 | '77. 12. 13 |
| | 盈 德 五 十 川 | 2,000 | '78. 11. 22 |
| | 蔚 珍 王 避 川 | 7,140 | '82. 1. 8 |

第 3 節 沿近海漁業 育成과 秩序確立

1. 沿岸漁業의 保護育成

연안어업은 12개의 許可漁業과 10개의 申告漁業으로 구분되며, 연안어업의 어선규모는 10톤미만 동력선과 무동력선으로서 漁業許可件數와 申

告件數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연안어업은 어선의 近代化 施策에 따라 漁船의 動力化, 漁撈裝備의 現代化 및 어로기술의 발달로 漁獲強度가 높아지고 연안수역은 臨海工團造成과 都市下水의 流入 및 大單位 埋立 干拓事業으로 어장이 축소된 것은 물론 환경의 변화로 1980 년대에 들어와서는 生産伸張率이 鈍化되고 있다.

따라서 沿岸漁業의 安定的인 生産을 유지하기 위하여 資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不法漁業者에 대한 指導團束으로 漁業秩序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道知事로 하여금 管轄水域에 대한 자원상태, 어장어건, 어업허가건수 및 어선척수와 規模, 어업경영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인 생산으로 漁民所得增大와 漁業經營의 安定을 기할 수 있도록 漁業別 許可 適正件數를 정하여 沿岸 許可漁業의 全業種과 신고어업중 호망어업 등 4개 어업에 대하여 新規許可를 禁止하고 여타어업은 적정건수 범위내에서 허가하며, 沿岸數罾網漁業 등 자원보호에 영향이 큰 어업에 대하여는 적정건수에 달할 때까지 계속 억제토록 하였으며 漁船建造도 老朽漁船代替나 被害復舊漁船을 제외한 新規漁船建造를 억제하였다.

2. 近海漁業의 再編成

近海漁業은 주로 공해상에서 操業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隣接 沿岸國과 동시에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200海里를 선포하거나 적용할 경우 일부 어장의 축소로 어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水産資源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漁獲強度가 큰 大型機底, 大型트롤, 大型旋網, 近海 鮫鱈網 漁業 등 허가건수가 定限數를 초과한 業種에 대하여는 관계 업종

별수협 주관하에 자율 減隻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감척촉진을 위한 方案을 강구중에 있다.

또한, 新規許可가 억제되고 있지 않은 業種중 대상 자원의 보호와 어업 경영합리화가 필요한 기타통발, 근해붕수망 등 6개 업종에 대하여는 1986. 6. 4 신규허가를 억제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오징어채낚기 어업자들이 集魚燈을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선원들을 경쟁적으로 확보함으로써 漁業秩序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있어 1986. 5. 3 屯級別로 집어 등의 光力과 승선인원을 告示하였다.

그리고 1982. 7월 國際捕鯨委員會의 상업포경 중지 決定에 따라 우리나라도 1986년 관계포경어인들의 轉業對策 일환으로 노후된 포경선 4척에 대하여는 人工魚礁로 투입하였고 타용도 활용이 불가능한 포경선 6척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救濟資金을 지원하는 한편 捕鯨漁業者들은 원양어업 또는 연근해어업으로 전업조치중에 있으며 捕鯨船員 246명에 대하여는 3개월분의 基本給 상당액을 전업비로 지원하였다.

3. 漁業秩序 確立

近年에 들어 沿岸海漁業은 底魚類 및 高級魚種의 감소, 低級魚種의 증가 등 魚種交替와 資源減少 現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資源減少現象은 漁獲強度의 증가와 沿岸海 漁場의 環境惡化 등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不法漁業이 根絶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원인이 있어 1986년에는 指導船에 의한 海上團束과 더불어 漁村契를 중심으로 不法漁業 自體追放運動展開, 淨化次元에서의 地域單位 漁業秩序 確立, 漁民意識構造 改革運動의 지속적인 展開, 不法漁獲物 및 漁具 流通經路 封鎖에 역점을 두고 指導團束을 실시하였다. 1986년도의 團束實績은 1985년도 보다 418건이 증가한 2,985건으로 海域別로는 南海岸이 2,281건으로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東·西海는 23.6%인 704건에 불과하였다.

漁業別로는 小型機底가 1,549 건으로 51.9%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施策推進 및 團束強化로 漁民, 水産團體 및 有關機關 等の 不法漁業根絶 認識은 提高되었으나 아직도 滿足할 만한 漁業 秩序 確立이 되지 않고 있어 市·道의 不法漁業防止協議會 運營, 班常會 및 監視網의 원활한 활용 등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對策을 추진하고 있다.

〈表 61〉 不法漁業 團束 實績 단위: 건

| | '82 | '83 | '84 | '85 | '86 |
|------|-------|-------|-------|-------|-------|
| 計 | 3,164 | 3,410 | 3,033 | 2,567 | 2,985 |
| 大型機底 | 19 | 16 | 28 | 40 | 27 |
| 中型機底 | 25 | 37 | 27 | 40 | 42 |
| 小型機底 | 1,688 | 1,766 | 1,539 | 1,186 | 1,549 |
| 機船桁網 | 441 | 336 | 451 | 226 | 276 |
| 漕水器 | 129 | 180 | 146 | 93 | 103 |
| 船引網 | 18 | 62 | 16 | 34 | 17 |
| 洗刺網 | 207 | 201 | 191 | 91 | 120 |
| 其他 | 637 | 812 | 635 | 857 | 851 |

자료: 수산청 지도과

4. 安全操業 指導

가. 海難事故 現況

海上 交通量의 增加와 老朽 小型漁船의 遠海出漁 等 海難事故의 發生要因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5개년간의 연평균 事故發生 건수는 291척으로 이중 226척이 구조되고 65척은 침몰되었으며 人命被害는 160명으로 나타났다.

〈表 62〉 漁 船 海 難 事 故 推 移

| | '82 | '83 | '84 | '85 | '86 | 年平均 |
|---------|------|------|------|------|------|------|
| 事故發生(척) | 349 | 343 | 270 | 255 | 241 | 291 |
| ・ 救 助 | 283 | 278 | 211 | 189 | 170 | 226 |
| (%) | (81) | (81) | (78) | (74) | (71) | (77) |
| ・ 未 救 助 | 66 | 65 | 59 | 66 | 71 | 65 |
| 人命被害(명) | 172 | 129 | 115 | 201 | 185 | 160 |

자료: 수산청 지도과

1986 년의 海難事故를 發生原因別로 보면 機關故障 및 運航過失로 인한 船舶事故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氣象惡化로 인한 事故는 적으나 人命被害가 전체의 52%로 가장 많았다.

또한 類型別로는 機關故障 등으로 인한 漂流事故가 4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人命被害는 浸水, 顛覆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6%로 가장 많았다.

〈表 63〉 海 難 事 故 原 因 및 類 型

단위: 척, 명

| | | 發 生 | 未 救 助 | 人 命 被 害 |
|-------|----------|-----------|----------|-----------|
| 計 | | 241 (100) | 71 (100) | 185 (100) |
| 原 因 別 | 機 關 故 障 | 119 (49) | 11 (15) | 25 (14) |
| | 運 航 過 失 | 100 (42) | 41 (58) | 64 (34) |
| | 氣 象 惡 化 | 22 (9) | 19 (27) | 96 (52) |
| 類 型 別 | 漂 流 | 107 (44) | - | 1 (1) |
| | 浸 水, 顛 覆 | 60 (25) | 37 (52) | 140 (76) |
| | 衝 突, 坐 礁 | 70 (29) | 32 (45) | 34 (18) |
| | 火 災, 其 他 | 4 (2) | 2 (3) | 10 (5) |

자료: 수산청 지도과

事故 海域別로는 연중 漁場이 형성되고 他海域에 비해 海上交通量이 가장 많은 南海岸이 전체 事故發生의 46%를 점유하고 침몰어선도 51%로

가장 많았으며 漁船規模別로는 50 ~ 100 톤급 어선이 전체사고 발생의 38 %, 인명피해 39 %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100 톤이상 大型漁船은 9 %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表 64〉 海域 및 톤級別 海難事故 단위:척, 명

| | | 發 生 | 未 救 助 | 人 命 被 害 |
|-------|------------|-----------|----------|-----------|
| 計 | | 241 (100) | 71 (100) | 185 (100) |
| 海 域 別 | 東 海 | 31 (13) | 10 (15) | 52 (28) |
| | 西 海 | 74 (30) | 22 (31) | 59 (32) |
| | 南 海 | 111 (46) | 36 (51) | 69 (37) |
| | 東 支 那 海 | 24 (10) | 2 (2) | 5 (3) |
| | 大 和 堆 | 1 (1) | 1 (1) | — |
| 톤 級 別 | 10 %未滿 | 45 (19) | 20 (28) | 49 (27) |
| | 10 ~ 50 % | 82 (34) | 26 (36) | 37 (20) |
| | 50 ~ 100 % | 93 (38) | 18 (26) | 73 (39) |
| | 100 %以上 | 21 (9) | 7 (10) | 26 (14) |

자료: 수산청 지도과

〈表 65〉 業 種 別 海 難 事 故 단위:척, 명

| | | 發 生 | 未 救 助 | 人 命 被 害 |
|--------|-------|-----------|----------|-----------|
| 計 | | 241 (100) | 71 (100) | 185 (100) |
| 鮫 | 鰹 網 | 86 (36) | 8 (11) | 16 (9) |
| 流 | 刺 網 | 39 (16) | 12 (17) | 24 (13) |
| 延 | 繩 | 36 (15) | 12 (17) | 10 (5) |
| 총 | 발 | 29 (12) | 16 (23) | 43 (23) |
| 底 引 網, | 트 룰 | 19 (8) | 12 (17) | 38 (21) |
| 오 징 어 | 채 낚 기 | 16 (6) | 6 (8) | 42 (23) |
| 旋 網, | 其 他 | 16 (7) | 5 (7) | 12 (6) |

자료: 수산청 지도과

나. 出入港統制 및 安全操業 教育

연근해 출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統制所 및 合同申告所에 水協의 漁船安全點檢要員 92 명을 配置하여 出入港 漁船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요원은 申告所長의 지휘하에 特定海域 및 操業自制海域 출어선에 대한 出漁登錄, 漁船團編成, 乘船指導員 配置業務를 遂行하는 한편 나침의, 海罾, 救命胴衣와 같은 重要 法定 航海裝備, 漁船檢査有効期間, 선원 자격 등을 확인 점검함으로써 어선이 항해 또는 조업중 발생할 지 모르는 각종 海難事故 및 越線被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다.

선원 안전조업교육으로는 地區別 또는 業種別 水協에서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94,414 명을 대상으로 정부시책, 안보, 직무교육, 안전조업에 관하여 연 1 회 5 시간을 실시하였고, 황해·동지나해 병어 성어기를 맞아 출어하는 鮫鱈網,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안전조업 및 월선방지에 관한 特別教育을 실시하였다.

다. 海難救助

海難事故 漁船을 신속하게 救助하기 위하여 漁業無線局과 海警, 海軍等 救助機關間에 通信網을 構成, 사고발생 즉시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부근 조업어선에 傳播하여 救助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긴박한 사고에 대하여는 空軍과 協助, 航空搜索과 人命救助 활동을 펴고 있다.

東支那海, 大和堆漁場 盛漁期에는 福祉母船 및 大型 指導船을 현장에 파견하여 遭難漁船의 救助保護와 의료활동을 수행하였다.

1986 년도에는 漁業無線局의 신속한 通信維持와 적극적인 救助活動을 전개함으로써 救助機關에 의한 海難漁船 救助率이 많이 신장되었다.

〈表 66〉 機關別 海難漁船 救助實績

단위:척

| | | '82 | '83 | '84 | '85 | '86 |
|---|---------|-----|-----|-----|-----|-----|
| 事 | 故 發 生 | 349 | 343 | 270 | 255 | 241 |
| 救 | 助 | 283 | 278 | 211 | 189 | 170 |
| 機 | 漁 船 相 互 | 170 | 185 | 132 | 127 | 81 |
| 關 | 救 助 機 關 | 102 | 78 | 67 | 51 | 79 |
| 別 | 其 他 | 11 | 15 | 12 | 11 | 10 |

자료:수산청 지도과

라. 漁船檢査

漁船의 安全性 確保와 海難事故 防止로 漁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 海難事故原因을 分析하여 事故가 많이 發生하는 부분에 대한 檢査 徹底와 救命器具·遭難信號機 등의 人命安全設備에 대한 檢査強化 및 海難事故多發部品中 法定備品의 豫備品 確保를 啓導하고 老朽漁船의 各種 設備 老朽度 測定 및 補完檢査 등으로 漁民으로 하여금 安全運航을 위한 事前整備點檢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漁船檢査時마다 集中 啓導하였다.

1986 년도의 檢査對象漁船은 37,782 척이며 漁船檢査實績은 定期檢査 15,656 척, 中間檢査 1,243 척, 臨時檢査 5,965 척으로 總 22,864 척에 대한 漁船檢査를 실시하였다.

〈表 67〉 漁 船 檢 査 實 績

단위:척

| | '82 | '83 | '84 | '85 | '86 |
|---------|--------|--------|--------|--------|--------|
| 檢 査 對 象 | 30,493 | 33,969 | 36,046 | 35,734 | 37,782 |
| 檢 査 實 績 | 17,972 | 20,988 | 20,710 | 21,689 | 22,864 |
| • 定期檢査 | 12,737 | 14,489 | 14,400 | 15,222 | 15,656 |
| • 中間檢査 | 1,084 | 731 | 750 | 1,074 | 1,243 |
| • 臨時檢査 | 4,151 | 5,768 | 5,560 | 5,393 | 5,965 |

자료:한국어선협회

5. 災害復舊 支援

가. 共濟制度 擴大

불의의 事故나 災害를 당한 어민의 경제적 損失을 신속히 補償하여 漁家經濟의 안정과 지속적인 生産活動을 뒷받침하기 위해 水協에서는 共濟事業을 遂行하고 있다.

漁船共濟는 船主들의 自己 財産保護를 위한 認識이 擴散되어 共濟加入이 증가하고 있으나 船員共濟는 共濟料의 負擔이 船主와 船員間的 利害關係가 얽혀 가입이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船員共濟의 加入率 제고를 위하여 1986 년에 沿岸海 漁船員 43,742 명에게 414 백만원을 國庫에서 補助하였다.

1986 년 漁船共濟는 計劃 6,100 척에 6,806 척이 가입하였으며 船員共濟는 1986 년부터 船員普通共濟와 船員特殊共濟로 二元化시켜 실시하였으며 46,726 명이 가입하여 전년에 비하여 4%가 증가하였다.

특히 30%以上 漁船員을 대상으로 선원법상의 災害補償 履行을 위하여 1986. 1 월부터 실시한 船員特殊共濟는 加入對象 40,600 여명중 11,144명만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30%이상 漁船員 多數가 船員普通共濟에 殘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68〉 漁船 및 船員 共濟 加入

단위: 백만원

| | | 漁 船 | | | 船 員 | | |
|-------|-----|---------|---------|----------------|---------|---------|----------------|
| | | '85 | '86 | '86/'85 (%) | '85 | '86 | '86/'85 (%) |
| 加 入 | 件 數 | 6,202 | 6,806 | 109.7 | 44,942 | 46,726 | 104.0 |
| | 契約高 | 271,542 | 288,186 | 106.1 | 219,332 | 344,748 | 157.2 |
| | 共濟料 | 4,884 | 6,292 | 128.8 | 2,010 | 3,226 | 160.5 |
| 共濟金支給 | 件 數 | 557 | 585 | 105.0 | 643 | 1,275 | 198.3 |
| | 金 額 | 2,722 | 3,559 | 130.7 | 1,973 | 2,155 | 109.2 |

자료: 수협중앙회

赤潮, 異常暖冬 等 현행 풍수해 대책법으로는 被害補填이 어려운 災害漁民에 대하여 적절한 補填方案 講究를 위하여 養殖共濟制度를 도입하고 자 韓國農村經濟研究院으로 하여금 下垂式 養殖漁業에 대한 養殖共濟試驗事業設計를 研究토록 하여 1986 년에 共濟로서의 成立可能性에 대한 檢討를 마쳤으며 同 試驗事業設計 研究는 1988 년에 마침 계획이다.

나. 被害復舊 支援

1986 년도 피해발생 횟수는 7 회였으며 그중 피해가 maximized 태풍 1 회 暴風 1 회 등에 대하여 復舊費 20,560 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8. 27 ~ 8. 29 사이에 발생한 颱風 “베라” 피해에 대하여는 19,181 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1986 년 전체 復舊支援額의 93 %를 차지한다.

(表 69) 被害復舊費 支援實績

단위: 백만원

| | 被害內譯 | | 復舊內譯 | | | |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復 舊 費 | | | | |
| | | | | 計 | 國 庫 | 融 資 | 地方費 | 自 擔 |
| 計 | | 22,143 | | 20,560 | 8,033 | 6,262 | 2,864 | 3,401 |
| 漁 船 | 927척 | 1,851 | 842 | 4,208 | 842 | 2,525 | - | 841 |
| 漁 港 | 497개소 | 10,129 | 317 | 6,033 | 3,169 | - | 2,864 | - |
| 增養殖 | 670건 | 4,378 | 494 | 4,087 | 2,768 | - | - | 1,319 |
| 漁 網 | 377건 | 5,751 | 323 | 6,206 | 1,241 | 3,724 | - | 1,241 |
| 其 他 | 8건 | 34 | 1 | 26 | 13 | 13 | - | - |

자료: 중앙재해대책본부

註: 復舊費 內譯은 中央災害對策本部 支援額임

다. 油類 汚染被害

1986 년에 발생한 油類汚染事故는 135 건으로 1985 년 대비 19 건이 감소되었으나, 油類流出量은 12,640 D/M으로 1982 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油類汚染事故中 水産被害를 수반한 사고는 5 건으로 859 백

단원을賠償한 바 있다.

이와 관련 海洋汚染으로 인한 被害를 예방하고 被害賠償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1986. 12. 31 海洋汚染防止法을 改正, 船舶內 備置하여야 할 海洋汚染防止裝備를 확대하고 海洋汚染被害에 대한 賠償根據와 賠償節次 등에 관한 別途法 制定根據를 新設하는 등 關係制度를 改善토록 하였다.

第 4 節 養殖 및 內水面漁業開發

1. 養殖漁業

1986 년까지 淺海養殖漁場 開發 面積은 101.189ha로 總 開發 可能 面積의 54.0 %이다.

種類別로는 魚類養殖 358 ha (0.3 %), 貝類養殖 44,564 ha (44.0 %), 海藻類養殖 54,008 ha (53.4 %), 其他 水産動物養殖 2,259ha(2.2 %)이다.

최근 養殖漁場 開發은 干拓, 埋立, 臨海工團 建設 등 內灣性 漁場의 축소 및 汚染에 대처하여 外延漁場 開發에 주력하고 있다.

1986 년 政府 支援事業은 3,890 백만원을 投資하여 바지락, 가무락, 새꼬막 등 養殖技術이 일반화된 품종은 漁村契 所得源 開發事業으로 지원하였고, 魚類, 우렁쉥이 및 眞珠養殖事業은 높은 기술이 소요되어 일반어민에게 지원함으로써 養殖漁場 559ha와 魚類養殖 21 개소를 개발하였고, 單位 生産性 提高 및 優良種苗普及 등 養殖 基盤施設 확충을 위하여 1,229백만 원을 投資하여 전복種苗培養場, 김냉동망 저장고, 사료저장시설 등 23 개소를 지원하였다.

2. 內水面 漁業

大單位水面的 稚魚放養과 더불어 향어가두리, 뱀장어, 무지개송어 및

민물돔 養魚場 施設을 支援하였으며 뱀장어, 민물돔의 경우 新規 施設者에게는 에너지 절약형인 溫泉水를 이용한 養魚場 施設을 권장하였고 기존 養魚漁民에게는 생산성이 낮은 止水式 養魚를 지양하고 高密度 養殖인 循環濾過式으로 전환토록 지도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國立水産振興院 산하 3개 內水面 研究所와 道立內水面 開發試驗場에서 有用 魚種에 대한 새로운 養魚技術開發과 적극적인 기술 지도로 新品種을 보급함과 동시에 對漁民 養魚技術 정착화에 노력하였다. 또 大單位水面의 基礎環境調査를 실시하여 漁場 環境을 보전토록 하였으며 內水面 불법어업근절에도 주력하였다.

〈表 70〉 內水面 養魚 支援 實績

단위: 개소, 백만원

| |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 計 | 補 助 | 融 資 | 自 擔 |
| 計 | | 68 | 4,660 | 21 | 2,421 | 2,218 |
| 施 設 費 | 小 計 | 14 | 561 | 21 | 372 | 168 |
| | 가 두 리 | 6 | 192 | | 135 | 57 |
| | 뱀 장 어 | 1 | 119 | | 83 | 36 |
| | 송 어 | 3 | 120 | | 84 | 36 |
| | 共 同 | 2 | 30 | 21 | | 9 |
| | 민 물 돔 | 2 | 100 | | 70 | 30 |
| 運 營 費 | 小 計 | 54 | 4,099 | | 2,049 | 2,050 |
| | 가 두 리 | 10 | 634 | | 317 | 317 |
| | 뱀 장 어 | 22 | 2,011 | | 1,005 | 1,006 |
| | 송 어 | 20 | 1,370 | | 685 | 685 |
| | 민 물 돔 | 2 | 84 | | 42 | 42 |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第5節 遠洋漁場の 安定的 確保

1. 遠洋 資源動向

延繩 및 旋網漁業 對象인 다랭이類의 資源狀態를 보면 황다랭이는 大西洋과 太平洋에서 현재의 어획량이 最大 持續의 生産量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資源狀態는 일정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나 太平洋에서의 어획량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印度洋 황다랭이는 최근 大西洋에서 操業하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旋網船團이 印度洋으로 이동함에 따라 과거 다랭이 延繩漁業을 대상으로 추정된 最大持續의 生産量을 상회하는 급격한 漁獲量 增加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는 旋網對象 利用資源으로 바뀌어 졌다.

가다랭이는 3大洋에서 資源評價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資源診斷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開發의 여지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눈다랭이는 大西洋과 印度洋에서 最大開發水準에 도달했으며 太平洋에서는 深層 延繩漁業의 漁獲量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새치類와 小型 다랭이類의 資源은 評價되지 않고 있으나, 小型 다랭이類는 沿岸國들의 이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트롤漁業의 대상이 되는 底魚類의 資源狀態를 보면 명태는 베링海 및 알류산 海域에서는 양호한 상태에 있고 알라스카灣에서는 감소상태에 있다. 알라스카灣 대구와 베링海 각시가지마는 다같이 양호한 상태에 있으나 적어는 베링海 및 알류산海域, 알라스카灣이 다같이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임연수어는 베링海에서는 높은 수준에 있으나 알라스카灣은 낮은 수준에 있다.

〈表 71〉 大洋別 다랭이 資源評價

단위: 천톤

| | | 大西洋 | 印度洋 | 太平洋 |
|--------------|-------|--------|------|---------------------------------|
| 황다랭이 | 魚獲量 | 135 | 104 | {108~177 (東部) 180~214 (中西部)} |
| | M S Y | 116 | - | {150~175 (東部) 80~90 (中西部)} |
| | 資源狀態 | 安定 | 旋網增大 | 增大기대 |
| 가다랭이 | 魚獲量 | 140 | 140 | 600 |
| | M S Y | - | - | - |
| | 資源狀態 | 減少징후없음 | 旋網增大 | 開發可能 |
| 눈다랭이 | 魚獲量 | 74 | 40 | 97~144 |
| | M S Y | 69~155 | - | - |
| | 資源狀態 | 安定 | - | 深層추락增大 |
| 세지류 소형다랭이 | 魚獲量 | 낮은水準 | 左 同 | 左 同 |
| | 魚獲量 | 44 | 210 | 400 |

자료: 大西洋 다랭이 보존위원회, 日本 遠洋水産研究所, 다랭이 資源現況, 1985

印度 太平洋 다랭이開發 및 管理機構

註: MSY; 最大持續的 生産量

〈表 72〉 北·東太平洋의 主要魚種 資源狀態

단위: 천톤

| 魚種 | MSY | ABC | 資源狀態 | 魚種 | MSY | ABC | 資源狀態 |
|-------|-------|-------|------|-------|------|-----|------|
| 명태 | | | | 적어 | | | |
| 베링해 | 1,500 | 1,200 | 양호 | 베링해 및 | 9~17 | 5 | 낮은수준 |
| 알류산 | 100 | 100 | " | 알류산 | | | |
| 알라스카만 | 408 | 114 | 감소 | 알라스카만 | 17 | 10 | 낮은수준 |
| 대구 | | | | 임연수어 | | | |
| 알라스카만 | 125 | 125 | 양호 | 베링해 | 39 | 39 | 높은수준 |
| 각시가자미 | | | | 알라스카만 | 8 | 0 | 낮은수준 |
| 베링해 | 160 | 187 | 양호 | | | | |

자료: 北太平洋 漁業資源評價 및 管理에 관한 韓·美會議

註: ABC; 生物學的 許容魚獲量

또한 최근의 오징어漁業 動向을 보면 北太平洋의 流刺網 漁業은 幅當 漁獲量이 5.1 kg / 幅으로 다소 增加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오징어채낚기 漁業은 포클랜드漁場은 125.9 kg / 臺, 뉴질랜드 近海漁場은 49.1 kg / 臺, 호주近海漁場은 50.8 kg / 臺로 포클랜드漁場이 單位努力當 漁獲量(CPUE)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表 73〉 오징어漁業의 漁場別 單位 努力當 漁獲量

| | 漁 場 | 使用 漁 具 | 漁 獲 量 | 單位努力當 漁 獲 量 |
|------|---------|--------|----------|--------------|
| 1985 | 北 太 平 洋 | 오징어流刺網 | 70,754 % | 5.1 kg / 幅 |
| 1985 | 포클랜드근해 | 오징어채낚기 | 2,800 " | 125.9 kg / 臺 |
| 1986 | 뉴 질 랜 드 | " | 1,117 " | 49.1 " |
| 1986 | 호 주 | " | 264 " | 50.8 " |

자료 : 국립수산진흥원

2. 新海洋秩序의 動向

海洋法 協約은 1982. 12. 10 자마이카에서 채택되어 2 년간의 署名期間에 159 개국이 署名하였으며, 60 번째 批准書 또는 加入書가 기탁되면 1년 후 발효토록 되어 있으나 1987. 5 현재 튀지, 멕시코 등 32 개국만이 批准하였고 署名國인 우리나라는 아직 批准書를 기탁치 않고 있다. 그리고 세계 140 개 沿岸國中 97 개국이 200 海里 水域을 宣布하였으며 美國 등 주요 沿岸國들이 漁業自國化 政策을 推進, 漁業規制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遠洋漁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表 74) 200 海里 水域 宣布

1987. 5 현재

| | 沿岸國數 | 宣 布 國 數 | | | | 未 宣 布 國 數 |
|-------|------|---------|-----|------|------|-----------|
| | | 計 | 領 海 | 漁業水域 | 經濟水域 | |
| 計 | 140 | 97 | 15 | 20 | 62 | 43 |
| 아프리카 | 37 | 26 | 7 | 4 | 15 | 11 |
| 아시아 | 20 | 16 | - | 3 | 13 | 4 |
| 南·北美 | 33 | 29 | 8 | 4 | 17 | 4 |
| 유럽 | 24 | 13 | - | 7 | 6 | 11 |
| 中 東 | 15 | 2 | - | - | 2 | 13 |
| 오세아니아 | 11 | 11 | - | 2 | 9 | 0 |

자료: 수산청 국제협력과

3. 漁業協力事業

가. 漁業 協定締結

1986년에는 新規 漁業協定締結은 없었으나 既締結된 協定中에서 기간이 만료된 뉴질랜드와의 漁業協定을 1986. 9. 16 延長 (1986. 10. 1 ~ 1990. 9. 30) 하였고 프랑스 등 4 개국과는 現行協定에 의한 附屬約定을 更新하여 入漁期間을 연장하였다.

또한 遠洋漁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漁業協定延長 및 附屬約定更新을 위한 大洋洲(뉴질랜드, 濠洲) 漁業交涉團, 韓·美共同事業 擴大 및 漁獲쿼타 확보를 위한 對美交涉團, 멕시코水域 進출을 위한 漁業協力交涉團을 파견하였다.

(表 75) 附 屬 約 定 更 新

| | 日 字 및 場 所 | 主 要 內 容 | | |
|------------|-------------------|-----------------------|---------|--------------|
| | | 入 漁 期 間 | 許 可 隻 數 | 入 漁 料 |
| 프랑스 濠 洲 | '86. 11. 22 서 울 | '87. 1. 20~'88. 1. 19 | 150 척 | 2,730 천 Fr |
| | '86. 12. 16 전 버 라 | '86. 10. 1~'87. 9. 30 | 10 척 | 64,900 AU \$ |
| 투발루 국 | '86. 2. 26 파고파고 | '86. 2. 1~'87. 2. 28 | 44 척 | 72,000 \$ |
| | '86. 5. 15 라로통가 | '86. 6. 1~'87. 5. 31 | 48 척 | 80,000 \$ |

자료 : 수산청 국제협력과

나. 國際會議 參席 및 水産關係人士 招請

既存協定の 원활한 運用과 漁業資源管理에 대처 및 漁業協力 增進方案을 협의코자 日本, 美國 등 9 개국과 兩國間 會議를 開催하고 大西洋참치 保存委員會 등 7 개 國際會議에 참석하였으며 日本,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의 水産行政責任者를 招請, 既存漁場의 지속적인 확보와 新漁場開發을 摸索하였다.

다. 技術協力

政府의 對外技術供與計劃에 따라 28 개국으로부터 水産分野研修生 46명을 招請, 訓練을 실시하였다. 地域別로는 아시아 4 개국 15 명, 中東 2 개국 4 명, 아프리카 8 개국 10 명, 中南美 8 개국 9 명, 大洋洲 6 개국 8 명이다.

(表 76) 技 術 協 力 단위 : 명

| | 計 | '68~'80 | '81~'84 | '85 | '86 |
|-----------|-----|---------|---------|-----|-----|
| 研 修 生 訓 練 | 398 | 119 | 155 | 78 | 46 |

자료 : 수산청 국제협력과

4. 新漁場 開發事業

沿岸國의 200 海里水域 宣布에 따른 國際漁業規制에 대처한 代替性 漁場確保와 미래의 食糧資源으로 脚光을 받고 있는 南水洋漁場을 개발하기 위하여 1978 년부터 1986 년까지 6 차에 걸쳐 南水洋크릴漁場 試驗操業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5 ~ 6 차 試驗調査를 실시한 大西洋側 南水洋의 스코티아 漁場은 印度洋側의 엔디비랜드 漁場이나 월키스 漁場에 비하여 大型 크릴의 群集과 2 倍以上의 漁獲強度를 보여 漁場성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南水洋漁場 調査實績이 國際機構에서 公認되어 1985.11.19 南極海洋生物 資源保存委員會와 1986.11.28 南極條約에 加入케 됨으로써 南水洋은 물론 南極大陸開發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第 5 章 새로운 水産技術의 開發·普及

第 1 節 水産技術의 開發

1. 養殖技術의 開發

沿岸漁場의 합리적·종합적인 利用·開發方案樹立에 활용하기 위하여 淺海 및 干潟地의 漁場環境, 棲息生物狀態, 漁場利用狀態, 漁業實態, 生産狀況 및 關聯與件에 대한 養殖漁場實態調查와 人工魚礁漁場 適地調查, 水質汚染調查, 沿岸漁業 實態調查, 基盤施設 實態調查 등 5개 분야별로 구성된 沿岸漁場 基本調查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는 1987년까지 現地 調查를 完了하고 1988년까지 전국 및 각 시·도별로 報告書를 발간, 배부하게 될 것이다.

연안 資源增強과 漁民所得增大를 위하여 진북, 우렁새이, 브리새우, 넙치, 진주조개, 감성돔, 자주복 및 참돔의 人工種苗 1,280萬마리를 생산하였으며, 농어, 참가자미, 조피볼락, 돌돔 등 10종의 새 어종에 대한 人工種苗生産試驗을 실시하였다.

魚類養殖技術 開發을 위하여 魚類 越冬場 開發과 越冬 飼育管理 技術開發 試驗을 실시하여 慶南 梁山郡 古里 越冬保護水面과 巨濟 舊助羅, 巨文島 등에서 越冬可能性을 밝혔고 남해안의 주요 養殖場에 대한 環境調查를 실시하여 漁場適正管理를 위한 基本資料를 수집하였으며, 방어雜魚 먹이

馴致試驗, 승어 養殖技術開發試驗 및 陸上飼育 基礎試驗을 실시함으로써 魚類養殖技術을 向上시키는 한편 配合飼料의 개발을 위해 농어 및 참돔에 대한 配合飼料製造試驗과 效果調査를 실시하여 海産魚 配合飼料 開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有用 貝類養殖 기술개발을 위하여 진주조개의 越冬場 環境과 野外 採苗 可能性 및 稚貝 成長度를 조사한 결과 慶南 梁山郡 七岩, 全南 巨文島, 濟州 西歸浦地域이 有望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單位面積當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西海岸 굴養殖 方法 改良(바다식→垂下式) 試驗을 계속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優良 養殖品種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김, 가무라, 소라, 노랑가리비, 우렁쉥이, 북쪽말동성게 등의 어장 환경조사와 생태조사 및 養殖試驗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계의 人工種苗 生産條件과 성계 産卵生態 및 幼生 出現相을 究明하였다.

沿岸 水産增養殖에 필요한 耐病性, 多收穫性的 優良形質을 지닌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년에 이어 참굴의 地域間 特性調査, 交雜育種試驗 및 養成試驗結果 東海岸 참굴과의 交雜은 西南海岸것과 비교하여 受精 및 孵化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西海岸과 南海岸의 交雜은 다소 좋은 결과를 얻었다. 김의 優良品種 選拔 育種試驗 및 色彩變異形的 遺傳學的 調査 등을 실시하였다. 또 진복의 育種學的 品種改良으로 優良種을 개발하기 위하여 巨文島産과 濟州道産 진복의 種別 生理, 生態學的 調査와 형태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으로 同種間 相互交配 시험을 실시하여 受精率 80%, 孵化率 85%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에 棲息하는 불가사리와 별불가사리의 生物學的 最小型을 연구하여 生物學的 成熟腕長이 불가사리는 4.1~4.4 cm, 별불가사리는 2.9~3.2 cm 임을 究明하였으며, 불가사리類에 대한 藥品 驅除效果調査를 실시하였다.

內水面에서의 養殖技術開發 試驗으로 잉어, 이스라엘잉어 優良種 改良試驗을 실시한 결과 優良種의 성장과 사료 효율이 양호하였고, 이스라엘

잉어의 早期種苗生産試驗을 실시하여 당년에 식용어 양성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 외에 틸라피아 品種改良 試驗, 쓰가리 養殖試驗, 찬넬메기 養殖試驗을 실시하였으며, 연어資源造成 및 開發事業과 아울러, 산천어 養殖試驗, 얼룩어 養殖試驗, 무지개 송어 養殖試驗 및 Donaldson송어 飼育試驗을 실시하였다.

2. 新漁場·漁法 開發

가. 北太平洋 빨강오징어漁場 資源調查

遠洋漁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韓美合同으로 北太平洋에서 빨강오징어의 資源調查를 실시하여 오징어流刺網 漁船의 操業能率 향상을 위한 漁業情報資料와 오징어漁場의 國際的 漁業紛爭에 대처할 수 있는 科學的인 基礎資料를 수집하였다.

나. 로프트틀 漁具漁法 開發

기존 底層트틀漁具의 構造를 개량하여 漁獲性能을 높일 수 있는 로프트틀 漁具漁法을 개발코자 '85년도에 실시한 모형시험 결과를 응용한 海上實用化 基礎試驗을 실시한 結果 동일규모의 기존 漁具에 비하여 그 性能의 優秀함이 立證되었다.

다. 音響漁法 研究

새로운 音響漁法 개발을 위한 基礎資料를 確保코자 魚類蕃養場내의 水中音을 測定하고 그 변화 현상과 魚類의 音響反應을 조사하였고, 音響부이의 性能試驗을 실시하여 國產化 可能性을 구명하였다.

라. 漁具漁法 基礎調查

우리나라 沿近海漁業의 漁具漁法과 漁撈裝備에 대한 基本資料와 漁業別

海域別 標準値 究明을 위하여 東海岸과 西海岸 및 內水面을 대상으로 한 實態調査에 이어 1986 년에는 南海岸과 濟州道를 대상으로 實態調査를 실시하였다.

다. 定置網 揚網 省力化 研究

定置網漁業의 人力難을 해소하고 漁業經費의 절감을 기하고자 人力爲主의 揚網方法을 지양하고 浮力資材를 利用함으로써 적은 인력으로 보다 간편하게 揚網할 수 있는 方法을 구명하기 위하여 模型漁具에 의한 水槽試驗과 現地 海上 基礎試驗을 실시하여 揚網 소요시간, 從事者數 등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바. 불가사리 驅除 漁具開發 試驗

우리나라 沿岸 養殖場의 主要 害敵生物인 불가사리의 驅除를 위하여 適正漁具의 개발이 요망됨에 따라 여러종류의 多重 剌針網과 통발을 이용, 불가사리 驅除試驗을 실시하여 실용 가능성을 구명하였다.

3. 處理加工技術의 開發

水産物의 食糧化를 위한 多獲性 및 低利用 資源에 대한 加工技術開發이 요청되고 있어 1986 년에는 정어리 製品開發을 위하여 필렛(fillet, 精肉) 통조림 및 醃酵液化製品 加工試驗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1985 년에 새로운 脫皮方法을 구명하여 정어리, 고등어 등의 필렛통조림 製造 基本技術을 개발한데 이어 1986 년에는 脫皮의 機械化로 企業의 量産技術을 확립하였다. 또 우렁쟁이의 凍結貯藏에 있어 그 處理方法과 貯藏中에 일어나는 黑變防止技術을 개발함과 동시에 우렁쟁이의 凍結製品으로서의 가능성을 밝혔다. 그리고 남극새우(크릴)의 製品開發을 위하여 液化蛋白質의 抽出 및 抽出蛋白質의 眞空凍結乾燥食品의 加工試驗과 未利用海藻類에 대한 가라

기난(Carrageenan) 含量調査 및 寒天製造用 漂白劑 開發試驗을 실시하였으며, 水産物の 營養價値와 이용에 따른 科學的 基礎資料 제공을 위하여 86 種의 魚貝類에 대한 成分分析과 불가사리의 비료효과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漁獲物의 鮮度에 관한 試驗과 韓·美貝類衛生協定運營과 관련한 輸出用 貝類生産指定海域 및 指定豫定海域에 대한 細菌調査와 더불어 비브리오 敗血菌汚染, 貝毒 및 貝類의 重金屬含量 調査도 실시하였다.

4. 産學協同

“韓國産 *Artemia Salina* (일종의 動物性 프랑크톤)의 Cyst 大量生産을 위한 生物學的 研究”의 2개 과제를 연구하였고 6개 분야에 13명의 兼職研究官을 任用하여 産學協同토록 하였다.

또한 中央水産産學協同審議會 委員委嘱(4명)과 各道 審議會 委嘱職委員(5개도 7명)을 委嘱하였으며, 水産系 專門大學 在學生들에게 5개소의 産業體를 指定하여 10개교 30명의 學生을 現場實習토록 하였다.

(表 77) 補助研究課題 遂行實績

단위: 천원

| | '79 ~ '81 | '83 | '84 | '85 | '86 |
|------|-----------|--------|--------|--------|--------|
| 課題數 | 12 | 3 | 2 | 2 | 3 |
| 所要豫算 | 42,000 | 13,171 | 13,984 | 14,000 | 20,300 |

| '86 課題名 | 所要豫算 | 研究責任者 |
|---|-------|-------------|
| ○ 韓國産 <i>Artemia Salina</i> 의 Cyst 大量生産을 위한 生物學的 研究 | 8,000 | 釜山水大 허성범 |
| ○ 遠洋産 魚類의 檢索 및 分類 (太平洋産 魚類中心) | 6,000 | 釜山水大 김용익 |
| ○ 漁村指導 活性化 方案에 關한 研究 ※ 水協委託事業 | 6,300 | 釜山水大 최경윤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表 78〉 水産系 學生實習實績

단위: 개소, 명

| | '82 | '83 | '84 | '85 | '86 |
|-------|-----|-----|-----|-----|-----|
| 實習業體數 | 55 | 37 | 27 | 28 | 5 |
| 實習生數 | 177 | 205 | 94 | 148 | 30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表 79〉 兼 職 研 究 官

단위: 명

| | '80 | '82 | '84 | '86 |
|-----|-----|-----|-----|-----|
| 人 員 | 7 | 14 | 14 | 15 |

| '86 兼 職 研 究 官 | | | 動 務 活 用 部 署 |
|---------------|-------|-------|-------------|
| 活用分野 | 所 屬 | 姓 名 | |
| 海洋環境 | 釜山水大 | 姜 容 均 | 海洋資源部 海洋科 |
| | " | 朴 清 吉 | " 環境科 |
| 水産増殖 | 仁 荷 大 | 崔 仲 基 | 仁川水産研究所 |
| | 釜山水大 | 許 聖 範 | 増殖部 貝藻類科 |
| | " | 張 東 錫 | " 病理科 |
| | 江 陵 大 | 金 一 會 | 注文津水産研究所 |
| | 群山水專 | 李 廷 烈 | 群山水産研究所 |
| | 麗水水大 | 高 楠 表 | 麗水水産研究所 |
| | 濟州大 | 鄭 相 喆 | 濟州水産研究所 |
| 水産資源 | 釜山水大 | 李 澤 烈 | 鎮海內水面研究所 |
| | " | 洪 性 潤 | 海洋資源部 遠洋資源科 |
| 漁具漁法 | " | 高 冠 瑞 | 漁具漁法 研究室 |
| | 浦項實專 | 權 赫 師 | 浦項水産研究所 |
| 食品加工 | 釜山水大 | 李 應 昊 | 列川加工研究室 |
| 漁村指導 | " | 孔 龍 植 | 指導課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5. 先進技術 導入과 研究 活性化

가. 研究團地 造成

水産研究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國立水産振興院과 國立水産技術訓練所等 3個 機關을 移轉하고자 慶南 梁山郡 機張에 水産研究團地를 造成中에 있다.

1986년에는 敷地 總面積 192천㎡중 110천㎡의 敷地造成工事を 마쳤으며, 計劃 敷地中 買入하지 못했던 18천㎡를 收用 買入하였다.

1986년 施行計劃인 建築工事は 1986. 7월 實施設計를 끝내고 全體 建築面積 25천㎡중 水産振興院 本館 및 研究棟 11천㎡의 一部工事を 1986. 10월 着工하였다.

나. 研究員資質向上과 先進技術 導入

日本, 프랑스, 美國 등에서 增養殖分野 11명, 海洋環境 7명, 漁業資源 3명, 漁具漁法 및 海洋法 2명 등 23명에 대하여 長·短期 海外研修를 실시하였고 國內大學에서도 博士課程 6명, 碩士課程 19명, 其他 8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쿠웨이트, 수리남에 2명의 專門家를 파견하였으며, 프랑스 海洋研究所에서 專門家 1명을 초청하여 共同研究를 통한 技術協力 增進과 先進技術導入에 기여하였다.

다. 試驗機器 및 裝備補強

尖端 水産技術開發의 일환으로 海洋遠隔探查 및 魚類養殖用 最新機器·裝備를 보강하기 위하여 日本 海外經濟協力基金(OECF) 借款에 의한 試驗研究機器 補強計劃(總 672점)에 따라 1차년도 도입분 409점을 導入하였고, 國內調達이 가능한 142종 242점의 試驗機器를 政府 一般會計豫算으로 구입 보강하였다.

라. 水産研究基金 造成

大統領閣下 特別 下賜金 1 億원을 근간으로 하여 1984 년부터 1986 년 말까지 水産團體 등의 출연으로 研究基金 511.774 천원 ('86 : 196.256 천원)을 조성하였다.

(表 80) 水産研究基金 造成 단위 : 천원

| 機 關 別 | 造成目標額 | 造 成 額 |
|--------------|---------|---------|
| 計 | 500,000 | 511.774 |
| 閣 下 下 賜 金 | 100,000 | 100,000 |
| 水協中央會 및 會員組合 | 150,000 | 150,000 |
| 遠洋協會 및 會員社 | 100,000 | 100,000 |
| 釜山共同魚市場 | 60,000 | 60,000 |
| 其 | 90,000 | 101,774 |

자료 : 국립수산진흥원

第 2 節 漁村指導 및 技術普及

1. 技術指導 및 弘報

새로운 水産技術과 科學營漁 技術普及을 위하여 1,518 개 漁村契를 대상으로 현지를 순회하면서 김, 미역, 굴, 미조개 등 多獲性 品種의 適正 漁場管理指導를 실시하고 魚類蕃養殖에 대하여 稚魚(確保·飼料需給 및 魚病對策)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適正 漁場管理指導를 위하여 주요 養殖團地에 대한 乘船 巡廻豫察을 실시함은 물론 赤潮 및 病蟲害의 豫防 또는 被害 극소화를 위하여 特別豫察班을 편성 운영하고, 漁村指導所 주관으로 地域別 養殖指導評價會議를 개최하여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有關機關間的 協助體制를 確立하였다.

〈表 81〉 乘船巡迴豫察實績

| 지역별 | 예찰지점 | 주요양식품종 | 실적 |
|-----|------------------------------|---------------------------|-------|
| 계 | 24 개소 | 6 종 | 130 회 |
| 전 남 | 가막, 해창, 여자, 독방 완도, 진도, 해남 | 김, 미역, 굴, 피조개, 어류축양 | 75 |
| 경 북 | 영일 | 우렁생이, 어류축양 | 12 |
| 경 남 | 진해, 거제, 한산, 고성 자란 | 김, 굴, 피조개, 우렁 생이, 어류축양 | 43 |

자료 : 국립수산진흥원

그리고, 養殖技術의 普遍化와 새로운 所得源 開發을 위하여 전복수하양식·魚類蓄養殖 등 25 개소의 示範漁場을 운영하였으며 共同漁場의 資源造成 및 漁場保全의 필요성을 계도하였다.

한편으로 신속한 水産情報 및 새로운 技術의 普及을 위한 海·漁況 豫報 및 增養殖 豫報와 水産技術誌를 發刊 配付하고, 슬라이드 및 비디오를 製作하여 弘報活動을 실시하였다.

2. 漁民教育 및 漁民後繼者 指導

어민의 영어기술향상 및 의식개혁을 통한 전전어촌 육성에 목표를 두고 국립수산진흥원 산하의 어촌지도소에서 전국의 72 개 水協과 합동으로 漁民 141 천명에게 水産施策과 漁業技術에 대한 集體教育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굴, 피조개, 김, 우렁생이 양식 등 주요품종에 대하여는 지역별 어업순기에 맞추어 採苗 및 種苗培養 등에 관하여 어촌 現地를 巡廻하면서 26 천명에 대한 技術教育을 병행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漁村指導所長을 대상으로 教官教育을 실시하고, 전복양식, 어류축양 등 새로운 양식기술에 대한 VTR교재 6 종을 제작하여 漁民教育時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게 하였다.

한편 1981 ~ 1986 년까지 선발된 漁民後繼者 2,931 명에 대하여 전담지 도사를 배치하고 매월 1 ~ 2 회 현지사업장을 방문하여 營漁設計, 漁場管 理指導 및 新技術 보급 등 科學營漁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복지어 촌 건설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지도하였다.

〈表 82〉 漁民後繼者 地域社會活動

단위: 명

| 計 | 地 域 社 會 活 動 內 容 | | | | | | | 其 他 |
|----------------|-----------------|------------|-----------|------------|-----------|-----------|------------|---------------|
| | 小 計 | 漁村契長 | 새 마을 指導者 | 靑少年會 指導者 | 里 長 班 | 水 任 協 員 | 其 他 | |
| 2,931 (100) | 637 (22) | 103 (4) | 65 (2) | 149 (5) | 96 (3) | 46 (2) | 178 (6) | 2,294 (78)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3. 漁村 指導機能 強化

가. 漁村指導所 廳舍 確保

1985 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0 개 漁村指導所 중에서 독립청사를 확보 하지 못한 義昌 등 6 개 어촌지도소에 대하여 1986 년에 건물신축예산 346 백만원울 확보하여 건물을 준공함으로써 총 20 개 漁村指導所가 자체 청 사건물을 확보하였다.

〈表 83〉 漁村指導所 廳舍 確保

단위: 개소, 백만원

| | '81 ~ '85 | '86 | 計 |
|---------|-----------|-------|-------|
| 廳 舍 確 保 | 14 | 6 | 20 |
| 新 築 豫 算 | 531.4 | 345.6 | 877.0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나. 漁村指導裝備 補強

漁村指導活動의 機動力 향상과 과학적인 기술지도를 위하여 예산사업으

로 二輪車 등 2종 35대를 보장하였으며, 또한 OECF 차관으로 水質測定器 등 4종 130대를 도입하였다.

〈表 84〉 漁村 指導 裝備 補強 단위: 대

| | 計 | '85 까지 | '86 |
|-----------|-----------|-----------|-----------|
| | 313 (9 種) | 148 (7 種) | 165 (6 種) |
| 이 물 차 | 43 | 23 | 20 |
| 지 도 선 박 | 1 | 1 | — |
| V T R | 16 | 1 | 15 |
| 영 사 기 | 13 | 13 | — |
| 환 동 기 | 18 | 18 | — |
| 현 미 경 | 97 | 77 | 20 |
| 조 도 계 | 45 | 15 | 30 |
| 염 분 계 | 40 | — | 40 |
| 수 질 측 정 기 | 40 | — | 40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다. 漁村 指導 公務員 資質 向上

國立水産振興院 및 그 산하의 研究所와 種苗培養場에서 54명에 대한 전문 技術教育을 실시함으로써 漁村 指導 公務員에게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통한 실력을 배양토록 하였다.

〈表 85〉 漁村 指導 公務員 教育 實績 단위: 명

| | 計 | 長期 專門 教育 (2 月 ~ 1 年) | | 短期 專門 教育 (1 ~ 2 週) | | | | |
|--------|-----|----------------------|---------|--------------------|-------|--------|-------|-------|
| | | 研究所 (科) | 種 苗 培養場 | 김 養 殖 | 진 육 殖 | 우렁 이 殖 | 魚 類 殖 | 漁 船 業 |
| 計 | 269 | 44 | 55 | 37 | 51 | 35 | 17 | 30 |
| '85 까지 | 215 | 35 | 50 | 24 | 39 | 29 | 8 | 30 |
| '86 | 54 | 9 | 5 | 13 | 12 | 6 | 9 | —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第 3 節 漁業技術訓練

1. 水產技術 訓練

가. 精神教育 課程

國民精神教育 9 大德目的 體質化로 공직관과 사명감에 투철한 水產公職者像을 정립하기 위하여 管理者 反復班, 在職者班, 新規採用者班으로 編成, 총 5 회 411 명을 대상으로 精神教育을 실시하였고 특히 管理者 反復班에 는 수산청 소속 4.5 급 공무원 94 명과 산하단체 간부직원 59 명을 합동으로 교육함으로써 水產施策의 효율적인 추진과 相互理解 증진을 도모하였다.

나. 基本教育 課程

전국 수산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職務遂行에 필요한 基本資質의 함양과 새로운 知識, 技術 습득으로 行政能力의 培養을 教育目標로 설정하고 水產中堅管理者班 1 회 32 명, 水產中堅實務者班 2 회 121 명, 新規採用者班 1 회 58 명 등 4 회 211 명에게 職務教育을 실시하였다.

다. 專門教育 課程

漁村指導, 水產物 檢査, 不法漁業團束業務 擔當 공무원에게 先進水產技術情報을 제공하고 대어인 지도에 필요한 實用技術教育을 3 회 149 명에게 실시하여 專門技術要員을 양성하였다.

또한 水產政策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効率的인 養殖 漁場管理方案"을 主題로 政策세미나班 (30 명)을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중

합적인 管理能力 배양에 주력하였다.

라. 漁民後繼者 教育課程

漁村에 定着하여 地域社會의 개발과 福祉漁村建設을 주도할 漁民後繼者 養成을 위하여 漁船漁業, 海藻類養殖, 貝類養殖, 魚類養殖 등 분야별로 13회 983 명의 어인후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漁村定着의 基盤을 구축하고 後繼者 育成事業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마. 現役兵 水産技術 教育課程

轉役後 漁村定着을 희망하는 現役兵을 대상으로 漁業全般에 대한 技術 教育을 1회 92 명에게 실시하여 漁村定着의 意慾 鼓吹와 漁村開發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바. 漁船員 素養教育課程

遠洋 및 沿近海 漁船員의 資質 向上과 투철한 安保意識 및 國家觀의 확립을 위하여 海技士 2,638 명, 一般 船員 6,187 명, 총 8,825 명에게 素養 教育을 실시하였다.

(表 86)

教 育 訓 練 實 績

단위: 명

| | '82 | '83 | '84 | '85 | '86 |
|-------------------|--------|--------|-------|-------|--------|
| 計 | 16,895 | 10,792 | 9,348 | 9,447 | 10,701 |
| 精 神 教 育 | 398 | 489 | 343 | 331 | 411 |
| 基 本 教 育 | 279 | 243 | 207 | 209 | 211 |
| 專 門 教 育 | 158 | 176 | 238 | 186 | 179 |
| 漁 民 後 繼 者 教 育 | 202 | 200 | 510 | 958 | 983 |
| 現 役 兵 水 産 技 術 教 育 | - | - | - | - | 92 |
| 漁 船 員 素 養 教 育 | 15,858 | 9,684 | 8,050 | 7,763 | 8,825 |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海技員 養成

漁船 海技士 養成機關은釜山水産大學을 비롯하여 전국에 16 개 水産系 學校와 特殊法人體인 韓國漁業技術訓練所가 있다.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는 1986 년까지 5,475 명의 漁船海技士를 양성 하였고, 船舶職員の 자질 향상과 어선의 安全運航을 위해 1986. 7 부터 漁船 海技士 安全教育課程을 신설, 967 명을 교육하였으며 政府의 對外技術 供與計劃에 의한 外國人 訓練生 274 명을 배출하였다.

< 表 87 >

韓國漁業技術訓練所 訓練 實績

단위 : 명

| | 計 | '66~'83 | '84 | '85 | '86 |
|---------------|--------|---------|--------|--------|--------|
| 計 | 6,716 | 4,807 | 325 | 365 | 252 |
| 內 國 人 | 5,475 | 4,654 | 299 | 312 | 210 |
| ・ 海 技 士 課 程 | 3,282 | 3,025 | 115 | 119 | 23 |
| ・ 普 通 船 員 課 程 | 2,061 | 1,497 | 184 | 193 | 187 |
| ・ 通 信 課 程 | 132 | 132 | - | - | - |
| 外 國 人 | 274 | 153 | 26 | 53 | 42 |
| (國 家 數) | (70) | (60) | (22) | (33) | (26) |
| 海 技 士 安 全 教 育 | 967 | - | - | - | 967 |

자료 : 수산청 국제협력과

註 : 國家數중 重復된 나라는 除外하였음

第 6 章 水産物の食糧化와 流通改善

第 1 節 水産物 價格安定

수산물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腐敗變質性이 강하고 規格化가 어려운데다 불확실한 생산으로 需給調節의 어려움 등 流通上의 특수성으로 價格安定을 기하기 어렵다.

1986년 수산물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政府備蓄事業으로 農安基金 42억 원을 투입 간미역 2,000톤, 김 100萬束, 건멸치 2萬包를 收買하여 盛需期에 방출하였으며 또한 價格支持事業으로 農安基金 495억 원을 投入, 水協出荷調節事業 31천%, 冷凍保管販賣事業 85천%, 加工販賣事業 22천%, 輸出促進事業 39천%, 합계 177천%을 收買하였다.

그밖에 農安基金 205억 원을 지원하여 委販場 出荷를 촉진하였으며 先給金 지원으로 包裝規格化 出荷를 유도하였다.

第 2 節 水産物 流通改善

1. 流通施設의 擴充

産地에서의 수산물 流通을 원활히 하기 위한 委販場施設은 1985년말

175 개소(115,019 m^2)가 전국 主要漁村에 分散되어 있으나 落島 僻地 一部地域에는 施設이 不足하고 또한 老朽化한 施設이 있어 1986 년에 2 개소(전남 고흥수협, 제주 성산포수협) 860 m^2 를 증설하였다.

2. 流通構造改善

水産物의 流通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出荷組合에 대한 低利資金 지원과 缺損補填으로 1986 년에는 內陸地 系統出荷를 전년보다 13 천%이 늘어난 117 천%으로 확대하였고 消費地의 販賣底邊을 확대하기 위하여 移動販賣 網을 확충하고 大量 需要處를 개발하여 直去來를 확대하였다.

또한 産地委販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핸드 카(Hand Car), 起重機, 손수레 등 委販裝備의 機械化를 촉진하였고 休憩室, 沐浴湯 등 福祉施設을 확충하고 魚代金 支給을 電算化하였다.

水産物의 取扱管理 향상과 公正去來 秩序 확립을 위하여 캠페인을 벌여 委販場 環境을 淨化하였으며, 水産物 取扱管理要領을 제정하여 流通從事者 및 漁民 16 천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商品性 提高와 위생처리에 단전을 기하였다.

産地和 消費地間의 신속한 魚價情報 交換으로 원활한 流通과 價格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팩시밀리 7 개소와 自動應答電話 2 개소를 증설하였다.

第 3 節 水産物의 加工과 食生活 改善

1. 加工品 生産

1986 년 水産製品 生産은 738 천%으로 전년대비 19 % 증가하였으며, 製品 形態別로는 高次加工品이 16 %, 單純加工品이 21 % 각각 증대하

였다.

이중 加工品の 대중을 이루고 있는 冷凍品은 392 천%으로서 갈치, 명태, 고등어, 가자미 등 原形凍結이 303 천%으로 77%, 명태, 봉장어, 감오징어 등 處理凍結이 89 천%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煉製品은 어묵, 어단, 어육소세지, 맛살류, 즉석어묵 등 製品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전년보다 6%가 증가된 73 천%을 생산하였으며, 최근 品質도 高級化 되어가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食生活改善과 營養供給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表 88〉 水産加工品 生産推移

| | '77 | '82 | '85 | '86 | '86/'85 (%) |
|-------------|---------|---------|---------|---------|----------------|
| 단위 : % | | | | | |
| 計 | 196,025 | 489,024 | 620,232 | 737,654 | 118.9 |
| 고 차 가 공 품 | 50,046 | 151,206 | 248,235 | 286,868 | 115.6 |
| 냉 동 품 (처 리) | 21,121 | 54,750 | 77,373 | 88,875 | 114.9 |
| 연 제 품 | 1,656 | 45,321 | 69,156 | 73,231 | 105.9 |
| 봉 조 립 | 20,663 | 19,525 | 26,619 | 26,298 | 98.8 |
| 어 육 분 | 3,197 | 22,328 | 53,369 | 66,700 | 125.0 |
| 조 미 가 공 품 | 3,078 | 8,695 | 21,010 | 31,099 | 148.0 |
| 한 천 | 331 | 587 | 708 | 665 | 93.9 |
| 단 순 가 공 품 | 145,979 | 337,818 | 371,997 | 450,786 | 121.2 |
| 냉 동 품 (원 형) | 63,365 | 198,305 | 255,430 | 302,873 | 118.6 |
| 해 조 제 품 | 28,109 | 67,870 | 54,059 | 66,666 | 123.3 |
| 자 건 품 | 5,622 | 32,434 | 24,728 | 25,387 | 102.7 |
| 소 건 품 | 13,358 | 25,748 | 19,909 | 27,380 | 137.5 |
| 염 건 품 | 502 | 116 | 65 | 35 | 53.9 |
| 염 장 품 | 21,813 | 1,316 | 1,120 | 653 | 58.3 |
| 염 신 품 | 7,532 | 9,840 | 11,956 | 20,469 | 171.2 |
| 기 타 | 5,678 | 2,189 | 4,730 | 7,323 | 154.8 |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계연보

註 : 원양제품 제외

통조림은 굴, 참치, 고등어, 정어리, 꽁치, 골뱅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 26천%을 생산하였다. 특히 최근 정어리 食用化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어리통조림 生産량이 전년 2,589%에서 5,296%으로 급격히 증가되어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調味加工品은 1969년부터 生産되기 시작하여 매년 增加하고 있으며 國民嗜好度 高級化 경향에 따라 1986년에는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31천%이 生産되었다.

單純加工品인 海藻製品(김, 미역등), 乾製品(멸치, 오징어, 명태 등) 및 鹽辛藏品(멸치, 새우 등)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2. 食生活 改善

人口增加에 따라 食糧自給 및 食生活 改善은 國家的 차원에서 중요한 課題로 대두되고 있어 年間 360만% 이상 生産되는 水産物의 食糧化가 시급한 실정이다.

1985년 1인당 年間 水産物 消費量(純食品)은 37.2kg이며, 水産食品에 대한 國民의 嗜好度가 從來의 반찬 概念에서 健康食 위주로 主食化됨에 따라 통조림, 煉製品, 調味加工品, 處理凍結等 高次加工品の 소비가 증가되고 있어 國民 食生活이 改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86년에도 水産物 消費를 높이기 위하여 정어리, 고등어 등 등푸른생선과 굴, 피조개, 미역, 김 등 多獲性 水産物 및 主食代用 食品으로 開發한 魚肉煉製品에 대한 TV, 라디오, 新聞, 雜誌 등 言論媒體 活用 弘報를 515회 실시하였으며, 水産物 食糧化 弘報用 料理集(48,500卷), 리후렛(100,000매)과 비디오 "식탁위에 바다를"(70번, 18분-용)製作 各 教育機關과 關聯機關 및 團體에 배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沿岸에서 大量 漁獲되나 대부분 魚料 등 非食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어리의 食用化 擴大 施策을 계속 추진하고 水産食品 料理

講習 및 試食會(12회)를 서울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 개최하여 汎國民의인 食生活改善 運動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國民嗜好에 맞는 다양한 加工製品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특히 調味맛김, 미역스-프 등 便利小包裝食品을 확대생산 보급하였으며, 加工業體育成을 위하여 55억원의 運營資金을 지원하였다.

〈表 89〉 水産物 消費推移(純食品) 단위: kg / 1인년간

| | '80 | '82 | '83 | '84 | '85 |
|-----|-----|-----|-----|-----|-----|
| 韓 國 | 27 | 32 | 38 | 38 | 37 |
| 日 本 | 35 | 35 | 36 | 36 | |

자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註: 동연구원 소급정정공표로 '83 ~ '84년 수치조정

第4節 水産物 檢査

1. 檢査 趨勢

1986년 水産物 檢査實績은 沿近海 및 遠洋漁業의 生産增大, 輸出用 原資材의 輸入增加 등으로 10個 製品, 547品種에 대하여 275천%을 檢査함으로써 전년도의 204천%에 비하여 34.8%가 증가하였으며 檢査品種은 1977년 이후 계속하여 多樣化되고 있다.

〈表 90〉 檢 査 推 移 단위: 천%

| | '77 | '82 | '85 | '86 | '86/'85 (%) |
|---------------|--------------|----------------|----------------|----------------|----------------|
| 검 사 량 (지수) | 249 (100) | 209 (83.9) | 204 (81.9) | 275 (110.4) | 134.8 |
| 품 종 수 (지수) | 388 (100) | 398 (102.6) | 500 (128.9) | 547 (141.0) | 109.4 |

자료: 국립수산물 검사소

(表 91) 加工品種別推移

| | '77 | '82 | '85 | '86 | '86/'85 (%) |
|------------------|-------------|-------------|-------------|-------------|----------------|
| 計 | 249 | 209 | 204 | 275 | 134.8 |
| 고차가공품 (구성비:%) | 197 (79) | 167 (80) | 156 (76) | 223 (81) | 142.9 |
| 저차가공품 (구성비:%) | 52 (21) | 42 (20) | 48 (24) | 52 (19) | 108.3 |

자료: 국립수산물검사소

2. 檢査의 效率性 提高

檢査員의 資質을 향상시켜 檢査의 正確性 및 科學化를 도모코자 細菌分野 7명, 重金屬分野 2명에게 自體技術教育을 실시하였고, 食品添加物分野 1명, 微生物分野 2명, 水質分野 2명 총 5명에 대하여는 國立保健院 등 關聯機關에서 委託教育을 실시하였다.

또한, 專門教育分野는 國立水産技術訓練所의 水産物 利用加工班 課程教育(30명)을 통하여 새로운 加工技術을 습득토록 하였으며, 檢査判定의 標準化로 檢査의 正確, 公正을 도모하고 檢査判定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檢査員과 加工業者 總 269명이 참석한 가운데 冷凍品 등 7개제품에 대하여 標準品 査定會를 4회 개최하였다.

水産製品的의 品質을 향상시키고자 調味위치포, 魚肉煉製品, 凍조림 등 10개 주요제품에 대하여 鮮度維持, 加工方法, 選別, 衛生管理 및 包裝改善 등 技術指導를 延 1,232회 실시하였고 새로운 海外技術情報을 入手, 이를 業界에 제공하였다.

한편, 冷凍, 凍조림, 魚肉煉製品의 104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加工工場 衛生管理點檢을 실시하여 施設 不備業體는 시정조리하고 優秀 加工業體는 檢査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第 7 章 漁業基盤施設의 擴充과 現代化

第 1 節 漁 撈 施 設

1. 漁船建造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이전에는 沿近海漁業 育成을 위하여 船腹量 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나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期間中에는 船腹量 增大를 止揚하고 老朽船 代替와 船質改良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維持補修 등 管理費가 절감되어 경제성이 우수한 合成樹脂(FRP)船으로 船質을 改良 建造토록 적극 勸奨함으로써 漁船構造改善 및 現代化를 추진하였다.

2. 動力 및 裝備 改良

操業能率 向上과 海難事故의 未然防止 및 에너지節約을 위하여 低效率 機關인 槳球機關, 陸上用發動機, 老朽機關 등을 효율이 좋은 船船用 디젤 機關으로 代替하고 無動力漁船을 動力化하였다.

機關供給은 漁民이 希望하는 機關을 구입할 수 있도록 水協으로 하여금 製作會社 機種別로 單價契約을 체결하여 共同購買케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購入토록 하고 사후봉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는 등 需要漁民의 편

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漁船의 裝備 現代化를 위하여 航海 및 漁撈裝備를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安全操業과 操業能率을 향상시켰다.

<表 92>

漁撈施設事業實績

단위: 백만원

| | 數 量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 計 | 補 助 | 融 資 | 自 擔 |
| 計 | | | 36,084 | 1,819 | 26,220 | 8,045 |
| 漁 船 建 造 | 334隻 | 9,627 ⁹ | 33,760 | 1,499 | 24,866 | 7,395 |
| -老朽漁船代替 | 177 | 3,680 | 7,936 | 1,499 | 4,495 | 1,942 |
| • FRP船建造 | 51 | 709 | 2,091 | 402 | 1,204 | 485 |
| • 木・鋼船建造 | 126 | 2,971 | 5,845 | 1,097 | 3,291 | 1,457 |
| -計 劃 造 船 | 30 | 5,678 | 25,022 | - | 19,649 | 5,373 |
| -船質改良(FRP船) | 127 | 269 | 802 | - | 722 | 80 |
| 動 力 改 良 | 301대 | 13,822HP | 2,037 | 320 | 1,168 | 549 |
| 裝 備 改 良 | 158대 | - | 287 | - | 186 | 101 |
| -無電機(30w) | 100 | - | 121 | - | 70 | 51 |
| -魚探機 | 15 | - | 60 | - | 42 | 81 |
| -方探機 | 8 | - | 10 | - | 7 | 3 |
| -레이다 | 15 | - | 60 | - | 42 | 18 |
| -로망 | 20 | - | 36 | - | 25 | 11 |

자료: 수산청 어선과

3. 漁船法 改正

제반 漁業與件 변동과 관련 법규인 船船法 등의 개정에 따라 漁船의 建造調整 및 漁船管理制度를 보완하고, 漁民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6. 5. 12 法律 第 3829 號로 漁船法을 改正 公布하여 1986. 11. 1 부터 施行하였다.

第 2 節 漁 港 開 發

全國 1,941개의 漁港은 漁港法에 의하여 指定한 1·2·3종어항 386개 항과 漁港法에 의거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漁村단위 地先에서 자연 또는 인공적으로 형성된 港浦口인 小規模港 1,555개항으로 분류되며 第1·3種漁港은 水産廳長이, 第2種漁港은 市·道知事가, 小規模港은 市長·郡守가 각각 개발 관리하고 있다.

漁港開發 실적은 總計劃物量 403 km중 1986년까지 2,252억원을 투자하여 防波堤 등 269 km를 시설함으로써 66.8%를 개발하였다.

〈表 93〉 全 國 漁 港 단위 : 개항

| | 漁港數 | 指 定 漁 港 | | | | 小規模 |
|-----|-------|---------|-------|-------|-------|-------|
| | | 計 | 第 1 種 | 第 3 種 | 第 2 種 | |
| 計 | 1,941 | 386 | 37 | 24 | 325 | 1,555 |
| 釜 山 | 16 | 5 | 1 | — | 4 | 11 |
| 仁 川 | 3 | 1 | — | — | 1 | 2 |
| 京 畿 | 121 | 35 | — | 3 | 32 | 86 |
| 江 原 | 56 | 24 | 8 | — | 16 | 32 |
| 忠 南 | 64 | 32 | 3 | 1 | 28 | 32 |
| 全 北 | 45 | 17 | 1 | 3 | 13 | 28 |
| 全 南 | 854 | 126 | 6 | 8 | 112 | 728 |
| 慶 北 | 120 | 35 | 7 | 2 | 26 | 85 |
| 慶 南 | 563 | 95 | 7 | 5 | 83 | 468 |
| 濟 州 | 99 | 16 | 4 | 2 | 10 | 83 |

자료 : 수산청 어항과

1. 第1·3種漁港

1·3種漁港은 總施設計劃物量 66 km중 1986년까지 防波堤 등 34 km를 시설하였다. 1986년에는 15개항에 274억원을 투자하여 防波堤 등 2,984 m를 시설하였고 21개항에 대한 補修·補強事業을 추진하였다.

2. 第 2 種 및 小規模港

2 種漁港은 總施設計劃物量 98 km 중 1986 년까지 60 km 를 시설하였고, 小規模港은 總施設計劃物量 239 km 중 175 km 를 시설하였다.

1986 년에는 2 種漁港 41 개항에 40 억원을 투자하여 防波堤 등 1,335 m 를 시설하였으며, 小規模港 역시 149 개항에 39 억원을 투자하여 船着場 등 4,125 m 를 시설하였다.

(表 94) 漁 港 施 設 단위: m

| 計 | | 總 計 劃 | '86 까지 施設 | 對 比 (%) |
|-------|-------|---------|-----------|---------|
| 計 | | 403,044 | 269,252 | 66.8 |
| 1 · 3 | 種 漁 港 | 65,829 | 34,437 | 52.3 |
| | 防 波 堤 | 26,983 | 18,053 | |
| | 物 揚 場 | 27,451 | 11,006 | |
| | 船 着 場 | 938 | 828 | |
| | 其 他 | 10,457 | 4,550 | |
| 2 | 種 漁 港 | 98,050 | 59,884 | 61.0 |
| | 防 波 堤 | 42,488 | 23,974 | |
| | 物 揚 場 | 10,490 | 4,542 | |
| | 船 着 場 | 24,619 | 18,865 | |
| | 其 他 | 20,453 | 12,503 | |
| 小 | 規 模 港 | 239,165 | 174,932 | 73.1 |
| | 防 波 堤 | 40,777 | 23,082 | |
| | 物 揚 場 | 11,265 | 7,145 | |
| | 船 着 場 | 141,733 | 106,300 | |
| | 其 他 | 45,390 | 38,405 | |

자료: 수산성 어항과

3. 漁港 機能 施設

漁港 機能 施設 가운데 政府豫算 550 백만원을 투입하여 給油施設 4 개소 (8,500 m) 와 小型 漁船簡易修理所 4 개소를 시설하였다.

第 8 章 水産團體 및 漁民後繼者 育成

第 1 節 水産業協同組合

1. 組 織

水産業協同組合는 會員 水協數 등 조직은 변동이 없었으나 組合員은 전국 143,867 漁業家口의 96.6%인 138,930 명으로 늘어 어민 유일의 協同組織으로 성장하였다.

〈表 95〉 水 協 의 組 織

| | 單 位 | '83 | '84 | '85 | '86 |
|-----------|-----|-------|-------|-------|-------|
| 水 協 中 央 會 | 개 소 | 1 | 1 | 1 | 1 |
| 會 員 水 協 | " | 72 | 72 | 72 | 72 |
| • 地 區 別 | " | 56 | 56 | 56 | 56 |
| • 業 種 別 | " | 14 | 14 | 14 | 14 |
| • 製 造 業 別 | " | 2 | 2 | 2 | 2 |
| 組 合 員 | 천 명 | 138.1 | 137.3 | 138.8 | 138.9 |
| 任 職 員 | 명 | 5,841 | 5,727 | 5,837 | 5,915 |

자료: 수협중앙회

註: 非常勤 인원 미포함

2. 運 營

가. 事業規模

1986 년 수협 의 사업규모는 33,340 억원(中央會 20,161, 會社水協 13,179)으로 1985 년에 비하여 3,965 억원(13.5%)이 증가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共濟, 經濟, 信用事業이 전반적으로 신장하였고 借款事業은 58.5%로 감소하였다. 회원수협 의 사업규모는 1985 년에 비하여 17.4%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信用, 共濟 및 相互金融事業의 신장에 기인하며 사업별 구성비 면에서 보면 經濟事業이 58.5% 信用事業이 26.7%로서 어획물 위판과 조합원에 대한 영여자금 공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表 96〉 水協中央會事業規模 단위: 억원

| | '83 | '84 | '85 | '86 | '86/'85(%) |
|--------|--------|--------|--------|--------|------------|
| 計 | 14,336 | 16,100 | 18,147 | 20,161 | 111.1 |
| 信用事業 | 3,650 | 4,344 | 5,147 | 6,023 | 117.0 |
| 外換事業 | 1,651 | 1,441 | 1,344 | 1,373 | 102.2 |
| 經濟事業 | 3,089 | 3,067 | 3,501 | 3,713 | 106.1 |
| 共濟事業 | 5,262 | 6,423 | 7,257 | 8,749 | 120.6 |
| 借款事業 | 122 | 95 | 82 | 48 | 58.5 |
| 指導事業 | 44 | 49 | 53 | 64 | 120.8 |
| 相互金融事業 | 518 | 681 | 763 | 191 | 25.0 |

자료: 수협중앙회

〈表 97〉 會員水協事業規模 단위: 억원

| | '83 | '84 | '85 | '86 | '86/'85(%) |
|--------|--------|--------|--------|--------|------------|
| 計 | 10,090 | 10,725 | 11,228 | 13,179 | 117.4 |
| 信用事業 | 2,145 | 2,527 | 2,921 | 3,525 | 120.7 |
| 經濟事業 | 6,871 | 6,867 | 6,890 | 7,711 | 111.9 |
| 共濟事業 | 601 | 683 | 701 | 913 | 130.2 |
| 指導事業 | 57 | 66 | 65 | 65 | 100.0 |
| 相互金融事業 | 416 | 582 | 651 | 965 | 148.2 |

자료: 수협중앙회

나. 收支狀況

水協中央會의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종합한 事業收益은 1985년에 比하여 8,266 萬圓이 증가한 301,622 萬圓인데 購買品 販賣代金이 134,764 萬圓으로 전체 事業收益의 44.6%를 차지하고 貸出金利子는 52,786 萬圓으로 17.5% 共濟料 및 共濟選入金은 49,306 萬圓으로 16.3%이다. 事業費用은 1985년도에 比하여 11,801 萬圓이 증가한 280,543 萬圓인데 購買品 販賣原價가 131,347 萬圓으로 46.8%, 共濟金 및 共濟編入金이 49,665 萬圓으로 17.6%, 販賣品 販賣原價는 36,818 萬圓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다. 事業利益에다 事業外收益과 事業外費用을 가감한 經常利益은 1985년도에 比하여 1,230 萬圓이 감소한 616 萬圓이며 經常利益에 特別利益과 特別損失 및 法人稅를 가감한 當期純利益은 1985년에 比하여 1,120 萬圓이 감소한 450 萬圓을 示現하였다.

〈表 98〉 水協中央會 收支狀況

단위 : 萬圓

| | '83 | '84 | '85 | '86 | '86/'85 (%) |
|-----|---------|---------|---------|---------|-------------|
| 收 益 | 240,812 | 271,887 | 312,668 | 302,724 | 96.8 |
| 費 用 | 239,462 | 270,751 | 311,098 | 302,274 | 97.2 |
| 剩 餘 | 1,350 | 1,136 | 1,570 | 450 | 28.7 |

자료 : 수협중앙회

한편, 會員水協은 地區別 水協의 경우 委販手數料과 貸出金利子가 주된 수익으로 1985년 대비 18,058 萬圓이 증가한 108,987 萬圓이며 費用面에서는 收益의 대부분을 借入金金利子, 사업관리비, 委販造成金 및 指導事業費로 1985년 대비 16,351 萬圓이 증가한 104,179 萬圓을 지출하였다. 그 中 業種別 및 製造業 水協은 貸出金利子和 地區別 水協이 지급하는 委販造成金이 주된 수익원이며 借入金金利子, 사업관리비 및 指導事業費로 수익의 대부분을 지출하였다.

〈表 99〉 會員 水協 收支 狀況

단위: 백만원

| | '83 | '84 | '85 | '86 | '86/'85(%) |
|-----|--------|--------|--------|---------|------------|
| 收 益 | 71,844 | 80,611 | 90,928 | 108,987 | 119.9 |
| 費 用 | 68,782 | 78,522 | 87,828 | 101,179 | 118.6 |
| 剩 餘 | 3,062 | 2,089 | 3,100 | 4,808 | 155.1 |

자료: 수협중앙회

다. 出資金 造成

水協經營 自立基盤의 기초가 되는 출자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增資 運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986 年 水協中央會 出資金은 전년대비 6.9 %가 증가한 9,841 백만원을 조성하였고 會員組合에 대한 出資配當金도 1.4 % (140 백만원)를 배당하였으며, 회원수협의 出資金은 전년대비 15.1 %가 증가한 39,919 백만원을 조성하였고 조합원에 대한 出資配當金은 6.3 % (2,317 백만원)을 배당하였다. 또한 조합원 1人 平均 出資金은 전년도 250 천원에서 287 천원으로 14.8 % 신장되었다.

〈表 100〉 出 資 金 造 成

단위: 백만원

| | '83 | '84 | '85 | '86 | '86/'85(%) |
|---------|--------|--------|--------|--------|------------|
| 計 | 30,435 | 36,597 | 43,900 | 49,760 | 113.3 |
| 水協中央會 | 6,320 | 7,397 | 9,205 | 9,841 | 106.9 |
| 會員水協 | 24,115 | 29,200 | 34,695 | 39,919 | 115.1 |
| · 地區別 | 19,753 | 23,949 | 28,457 | 32,886 | 115.6 |
| · 業種製造別 | 4,362 | 5,251 | 6,238 | 7,033 | 112.7 |

자료: 수협중앙회

第 2 節 水産物 輸出團體

輸出業界의 부담을 경감하고 輸出團體 機能 活性化를 도모코자 1986. 5. 1 부터 기능이 유사한 4개단체(活鮮魚, 冷凍品 輸出組合, 魚貝類, 海産鹽 辛品輸出協會)를 1개 단체로 統合, 韓國水産物 輸出組合을 설립하였으며

대량 생산된 굴의 생산, 비축 및 수출 등 원만한 需給調節을 위하여 굴품조립 輸出推薦權을 룡조립輸出組合에서 水協中央會로 移管하여 輸出秩序를 유지토록 하였다. 수출단체는 管掌品目에 대한 輸出推薦과 會員商社에 대한 輸出支援資金配定, 輸出秩序 및 會員共同利益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水協, 韓國遠洋漁業協會, 韓國內水面漁業協會 및 大韓漁網工業協會는 生産者團體이나 輸出團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表 101〉 水 產 物 輸 出 團 體

| 團 體 別 | 根 據 法 律 | 許 可 者 (許 可 日 字) | 推 薦 品 目 |
|------------------|-------------|-------------------------|--|
| 韓國水產物輸出組合 | 輸出組合法 第 8 條 | 商工部長官 (‘86. 5. 1) | 活鮮·冷凍魚類, 산미역, 꽃게, 귀치포, 갯지렁이 等 34 品目 |
| 韓國遠洋漁業協會 | 民法 第 32 條 | 水 産 廳 長 (‘64. 6. 3) | 참치 |
| 韓國內水面漁業協會 | “ | 水 産 廳 長 (‘70. 4. 15) | 뱀장어, 실지렁이 |
| 大韓漁網工業協會 | “ | 水 産 廳 長 (‘66. 3. 31) | 망 및 끈류 |
| 水 協 中 央 會 | 水産業協同組合法 | 水 産 廳 長 (‘62. 4. 1) | 굴품조립 |
| 韓國農林水産食品 輸出組合 | 輸出組合法 第 8 條 | 商工部長官 (‘64. 12. 11) | 홍합, 바지락품조립 |

자료: 수산청 무역과

第 3 節 漁村 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 育成

漁村 새마을運動은 水産廳을 推進求心體로 하여 傘下機關 및 團體와 전 체 어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福祉漁村建設의 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노력하였다.

1986년 漁村새마을事業은 漁業生産基盤事業, 所得増大事業, 漁村副業事業 및 精神啓發事業 등에 10,21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船着場, 物揚場, 防波堤 등 小規模漁港開發事業 4,419 m와 共同作業場 11개소, 多目的 漁船 15척, 增養殖事業 666 ha, 內水面開發 34'백만마리 放養과 27건의 漁業附帶施設을 추진하였다.

漁民後繼者 育成을 위하여 1986년에 漁船漁業, 增養殖漁業, 水産物加工分野에서 어촌청소년 937명을 선발하여 6,593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1人當 支援金額은 漁船漁業과 貝類養殖 및 魚類蕃養漁業者는 8백만원씩, 海藻類養殖과 水産物加工에는 6백만원씩 지원되었으며 支援條件은 3年据置 4年 均等分割 償還에 適用金利는 年 5%이다.

(表 102)

漁民後繼者 育成事業 實績

단위 : 명, 백만원

| | 計 | % | '81~'85 | % | '86 | % |
|---------|--------|-----|---------|-----|-------|-----|
| 人 員 | 2,931 | 100 | 1,994 | 100 | 937 | 100 |
| • 漁船漁業 | 1,686 | 58 | 1,077 | 54 | 609 | 65 |
| • 增養殖漁業 | 1,215 | 41 | 899 | 45 | 316 | 34 |
| • 水産物加工 | 30 | 1 | 18 | 1 | 12 | 1 |
| 支 援 額 | 20,936 | - | 14,343 | - | 6,593 | - |

자료 : 수산청 협동조합과

또한, 이들에게는 農漁民後繼者로서의 긍지와 시명감을 고취시키고,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精神教育和 技術教育을 실시하였다. 精神教育은 새마을運動中央本部 研修院에서 3일간씩, 技術教育은 國立水産技術訓練所에서 6일간씩 專門分野別로 실시하였으며 이들이 어촌에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漁村指導所의 專擔指導員 212명이 指定 配置되어 사후 지도를 담당토록 하였다.

第 9 章 水產事業 總括

第 1 節 投 融 資 實 績

1986 年 投融資事業은 增殖事業外 62 개 단위사업과 1985 년도에서 이
 일된 漁港建設事業 等 6 개사업에 대하여 1,676 억원(補助 790, 融資 507,
 地方費 103, 民間負擔 276)을 投入하여 1985 년도 이월사업은 1986. 8 월까
 지 완료하였으며 1986 年 사업은 增殖事業 等 5 개사업이 1987 年에 移越
 되었다.

〈表 103〉

水產振興事業 執行實績

단위 : 백만원

| 事業名 | 單位 | 事業量 | | | 總事業費 |
|-----------|-----|-------|-------|----|-------|
| | | 計劃 | 執行 | 移越 | |
| ○ 資源保護 | | | | | |
| - 人工魚礁施設 | ha | 6,100 | 6,193 | - | 8,236 |
| - 種苗買入放流 | 千마리 | 600 | 649 | - | 30 |
| - 卵子受精卵放流 | 百萬尾 | 2,500 | 2,519 | - | 80 |
| - 種苗培養場 | 個所 | 1 | - | 1 | 55 |
| ○ 遠洋漁業開發 | | | | | |
| - 알젠틴漁業進出 | 棟名 | 25 | - | 25 | 1,012 |
| - 南水洋漁場調査 | 隻 | 19 | 19 | - | |
| | | 1 | - | 1 | 1,009 |

| 事業名 | 單位 | 事業量 | | | 總事業費 |
|--------------|-----|--------|--------|----|--------|
| | | 計劃 | 執行 | 移越 | |
| ○ 水產物流通 | | | | | |
| - 委販場施設 | 坪 | 260 | 260 | - | 119 |
| - 給油, 給水施設 | 個所 | 4 | 4 | - | 310 |
| - 漁船簡易修理所 | 個所 | 4 | 4 | - | 240 |
| ○ 漁政管理 | | | | | |
| - 漁家副業 | 個所 | 4 | 4 | - | 88 |
| - 西海五島支援 | 隻 | 2 | 2 | - | 77 |
| ○ 水產資金利差補填 | 個事業 | 3 | 3 | - | 1,078 |
| ○ 漁村指導 | 個課題 | 6 | 6 | - | 648 |
| ○ 淡水魚試驗研究 | " | 4 | 4 | - | 248 |
| ○ 試驗研究 | " | 37 | 37 | - | 6,983 |
| ○ 漁業技術訓練 | 名 | 347 | 321 | - | 694 |
| ○ 增殖事業 | | | | | |
| - 養殖漁場開發 | ha | 559 | 559 | - | |
| | 欄 | 4,500 | 4,500 | - | 3,890 |
| | 個所 | 21 | 21 | - | |
| - 養殖基盤施設 | " | 23 | 23 | - | 1,229 |
| - 被害復舊 | 件 | 1,105 | 1,074 | - | 9,140 |
| ○ 漁港施設 | | | | | |
| - 1・3種漁港 | m | 2,720 | 2,984 | - | 27,402 |
| - 2種漁港 | " | 1,140 | 1,335 | - | 3,966 |
| - 小規模漁港 | " | 2,970 | 4,125 | - | 3,887 |
| ○ 漁撈施設 | | | | | |
| - 老朽漁船代替 | % | 3,500 | 3,680 | - | 7,936 |
| - 計劃造船 | % | 6,500 | 5,678 | - | 25,022 |
| - 動力改良 | HP | 11,000 | 13,822 | - | 2,037 |
| - 船質改良 | % | 250 | 269 | - | 802 |
| - 被害復舊 | 隻 | 1,576 | 1,576 | - | 27,305 |
| ○ 內水面開發 | | | | | |
| - 稚魚放養 | 千尾 | 34,000 | 34,629 | - | 551 |
| - 연어人工孵化放流 | 千마리 | 5,500 | 5,590 | - | 50 |
| - 養魚場施設 | 個所 | 14 | 14 | - | 561 |
| - 道立內水面開發試驗場 | " | 1 | | 1 | 700 |

자료: 수산청 행정관리담당관실

註: 1) 試驗研究行政, 機關運營, 基本經費等除外.

2) 漁港施設執行 및 總事業費에는 (表 105)의 漁港 移越分 包含

〈表 104〉 移 越 事 業(1985→1986)

단위: 백만원

| 事 業 內 容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計 | 補 助 | 融 資 | 自 擔 |
| 計 | | 6,415 | 5,966 | 20 | 429 |
| 漁港被害復舊工事 (’85브렌다, 豪雨被害) | 6個港 994 m | 2,550 | 2,550 | - | - |
| 南水洋漁場調査 | 1隻 | 828 | 414 | - | 414 |
| 保寧種苗培養場施設 | 1個所 | 612 | 612 | - | - |
| 小黑山島港工事 | 38 m | 1,531 | 1,531 | - | - |
| 漁村副業事業 | 1個所 | 50 | 15 | 20 | 15 |
| 研究團地造成工事 (敷地買入包含) | 1個所 | 844 | 844 | - | - |

자료: 수산청 행정관리담당관실

〈表 105〉 移 越 事 業(1986→1987)

단위: 백만원

| 事 業 內 容 | 物 量 | 事 業 費 | | | 移 越 事 由 |
|-----------------------|-----------------|-------|-------|-----|-----------------------------------|
| | | 計 | 補 助 | 自 擔 | |
| 計 | | 7,864 | 7,220 | 644 | |
| 漁港建設 (築造 및 颱風被害復舊) | 13個港 359.6 m | 866 | 866 | - | 颱風 베라호(’86.8.27~ 8.29)被害로 計劃變更 |
| 南水洋漁場調査 | 1隻 | 1,009 | 365 | 644 | 事業與件上 明示 移越 (’86.12 ~ ’87.3) |
| 扶安種苗培養場 | 1個所 | 755 | 755 | - | 敷地買入 造成遲延 |
| 小黑山島港建設 | 〃 | 2,819 | 2,819 | - | 베라호被害로 計劃變更 |
| 研究團地造成工事 | 〃 | 2,415 | 2,415 | - | 絶對工期不足 |

자료: 수산청 행정관리담당관실

第 2 節 事 業 成 果

1986년에는 水産物生産 300만톤과 輸出 10억불의 目標 아래 水産資源造成事業의 확대, 沿近海漁業 育成과 秩序確立, 새로운 水産技術의 開發 普

及, 遠洋漁場의 安定的 確保, 水産物 食糧化와 流通改善, 漁業基盤施設의 擴充과 現代化의 重點施策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수산물 생산은 3,660 천톤, 수출은 1,384 백만달러로 계획대비 각각 22%, 38%가 증가되었고 漁家所得도 전년대비 10.9% 증가한 5,402 천원으로 늘어났다.

事業別 主要 實績을 보면 水産資源造成을 위하여 人工魚礁를 6,193ha에 시설하여 1986 년까지 40 m 이내 總適地 80,000ha의 30%인 23,994ha를 개발하였으며, 種苗培養場 증설과 同 培養場에서의 放流를 확대하는 한편 民間培養場에서 생산한 꽃게, 우럭 총묘 65 만마리를 최초로 買入 放流하였다.

養殖場 開發은 技術開發과 政策支援 擴大로 양식어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1986 년말 현재 總適地 187 千ha중 54%인 101 千ha를 開發 利用토록 하였고,

內水面 漁業에 있어서도 34 百萬尾의 稚魚를 放養하여 總水面積 54천ha의 78.5%를 開發하였으며 養魚場 施設도 확대하여 1985 년말 561 개소에서 701 개소로 늘어났다.

沿近海漁業 育成과 秩序確立을 위하여 漁業指導船 1 隻을 建造하고 沿岸漁場에 대한 基本調査를 實施하였으며 資源보호에 영향이 큰 沿岸許可漁業 全業種과 申告漁業中 호망어업 등 4 個漁業에 대해서는 新規許可를 抑制하고 近海 樺受網 등 6 個 近海漁業에 대해서는 新規許可 抑制와 業種別 上限船腹量을 정하여 부분별한 増屯을 禁止시켰다.

새로운 水産技術의 開發 普及을 위하여 水産研究團地工事 敷地 造成을 마치고 일부 建築工事に 着手하였으며 研究基金 512 백만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유수 연구기관 및 대학에 56 명을 研修시켜 新技術을 習得토록 하였으며, OECF 借款에 의해 試驗機器 及 指導裝備 409 점을 買入 設置하였고, 漁村指導所 6 個所를 建築하여 총 20 개 漁村指導所의 獨立廳舍를 確保하였다.

새로운 養殖技術研究로 농어, 참가자미 등 새로운 10개品種의 種苗人工生産 試驗을 실시하고 魚類蕃養에 따른 飼育管理, 越冬可能性, 飼料開發試驗, 外國産 淡水魚의 移殖試驗과 育種試驗 등을 실시하였다.

新漁具 漁法을 開發하여 기존의 저층트를 어구의 구조를 로프트를 어구로 개량하여 實用化하였으며, 音響漁法 研究를 통해 音響부이의 國産化 可能性을 究明하였고 浮力材를 이용한 定置網 魚捕部 揚網 方法을 밝혔다.

利用加工 分野에는 정어리, 고등어 脫皮方法의 機械化와 우렁쉥이 凍結處理方法 및 凍結貯藏中 色變防止 技術을 개발하였고, 未利用 海藻類를 이용한 가라기난 製造技術 등을 연구하였다.

南水洋漁場調査의 結果로 南極海洋保存協約 및 南極條約에 加入하였고 아르헨티나에 선원 34 명과 그가족 24 세대 64 명이 移住하였으며, 가봉 근해 트를 어장 및 페루·칠레 근해, 하와이북부어장, 앙골라·케이프타운 근해의 참치어장 試驗操業을 實施하였다.

水産物 食糧化와 流通改善을 위하여 정어리 食用化 計劃을 수립 施行하고, 加工品 生産에 주력하여 1985 년보다 18.9%가 늘어난 738천톤을 생산하였으며 委販場 施設擴大와 더불어 直出荷 및 內陸地 系統出荷를 擴大('85 : 104 → '86 : 117 천%)하고 政府備蓄 및 民間出荷 調節事業으로 179 천톤을 수매, 성수기에 방출하였다.

漁港施設에 354 억원을 205 개항에 투입, 63 개항을 완공하였으며 총계 획 403.044 m 중 269.250 m를 완정하여 66.8%를 개발하였다.

漁撈施設에 있어서는 老朽漁船代替(177 隻)와 船質改良(127 隻) 및 被害復舊(1.576 隻), 動力化(14 천HP)와 어보장비 현대화(5종 158대)에 주력하여 동력선이 79.0%에서 79.4%로, 合成樹脂船은 1.5%에서 1.9%로 늘어났으며 21 년이상 노후선은 3.0%에서 2.9%로 줄어들었다.

1986.3 農漁村綜合對策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특히 農漁村負債輕減對策을 樹立 施行함으로써 농어가의 부담을 크게 輕減토록 하였다.

第 10 章 水産法令 整備 및 制度改善

第 1 節 法 令 整 備

漁船의 建造調整 및 漁船 管理制度를 보완하고, 漁民 便宜를 도모키 위하여 1986. 5. 12 法律 第 3829 號로 漁船法을 改正 公布하여 1986. 11. 1 부터 施行하였다.

主要 改正內容은

첫째, 水産資源의 保護, 漁業調整, 其他 公益을 위하여 漁船建造를 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크기·隻數외에 船腹量과 성능에 대한 기준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어선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漁船의 所有者는 정기적으로 船舶國籍證書 또는 船籍證書의 檢認을 받도록 하였다.

셋째, 어선의 安全性 확보와 性能 향상을 위하여 漁船用品을 製造함에 있어서 水産廳長의 型式承認 또는 製造施設 承認을 미리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承認을 얻어 제조된 漁船用品이 소정의 檢認에 합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어선의 製造檢査 및 최초의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第 2 節 制 度 改 善

1. 沿近海漁船의 規模 上限線 設定

연근해 어선규모의 上限線이 設定되어 있지 아니한 近海流網, 刺網, 樺受網, 近海 其他 통발, 문어단지, 근해연승 어업에 대하여 그 상한선을 설정(10% 以上 → 8% 以上 70% 未滿) 함으로써 水産資源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生産增大를 기하도록 하였다.

2. 漁船 檢査節次 改善

漁船 製造檢査 또는 豫備檢査에 合格한 후 최초로 행하는 定期檢査, 中間檢査, 特別檢査 및 임시검사를 면제케 하여 漁船檢査에 따른 어민생산활동 불편을 해소하였고 漁船檢査에 불복한 再檢査 申請期間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재검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으며 어선의 발주허가 또는 등록취소시 聽問制度를 두어 어민권익을 보호하였다.

3. 養殖水産物 委託 販賣制度 改善

養殖水産物의 產地 去來制度(強制上場制)를 任意上場制로 變更코자 公聽會를 개최하였다.

그 結果 任意上場制의 導入原則은 수급되거나 與件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여건이 성숙시까지 現行制度를 개선 보완하여 줄 것을 대부분의 어민이 요망하여 5개 양식위주 복지수협(굴수하식, 1, 2구잡수기, 진도, 고흥, 화성수협)의 김·미역·굴 委販手數料率을 4.0%~5.0%에서 0.5% 포인트 引下하였다.

여백

第 2 編

1987 年 度 水 産 施 策

여백

第 1 章 水産施策 方向

第 1 節 目標와 重點施策

水産業은 그동안 高度成長施策을 추진한 결과 生産, 輸出 및 漁船勢力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反面, 이 과정에서 漁獲手段의 增大, 漁業秩序의 未定着 및 遠洋漁業의 規制強化 등 水産業自體의 內在的 要因과 干拓 埋立, 工業化, 都市化 등 他部門의 發展에 따른 相衝的 要因으로 資源減少, 漁場縮小 및 水産人力의 量的 減少와 質的 低下라는 어려운 局面을 맞고있다.

1987 년에는 지금까지 이룩한 基盤과 水産業 發展過程에서의 經驗을 土臺로 당면한 여건을 조화시켜 生産 340 만톤, 輸出 15 억\$을 目標로 設定하고 아래의 施策을 重點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沿岸漁場의 牧場化

둘째, 沿近海 漁業의 秩序 確立

셋째, 遠洋漁業의 安定的 成長

네째, 水産技術의 開發과 普及

다섯째, 水産物 食糧化와 流通改善

여섯째, 漁業基盤 施設의 擴充

〈表 106〉 生 産 計 劃 단위 : 천%

| | '87 計 劃 | 3 個 年 平 均 ('84 ~ '86) | 對 比 (%) |
|-------|---------|----------------------------|------------|
| 計 | 3,400 | 3,224 | 105.5 |
| 沿 近 海 | 1,590 | 1,582 | 100.5 |
| 養 殖 | 850 | 804 | 105.7 |
| 內 水 面 | 60 | 53 | 113.2 |
| 遠 洋 | 900 | 785 | 114.6 |

자료 : 수산청 연근해과

〈表 107〉 輸 出 計 劃 단위 : 백만\$

| | '87 計 劃 | 3 個 年 平 均 ('84 ~ '86) | 對 比 (%) |
|---------|---------|----------------------------|------------|
| 計 | 1,500 | 1,103 | 136.0 |
| 水 産 物 | 1,400 | 1,017 | 137.7 |
| • 沿 近 海 | 905 | 634 | 142.7 |
| • 遠 洋 | 495 | 383 | 129.2 |
| 漁 網 | 100 | 86 | 116.3 |

자료 : 수산청 무역과

第 2 節 投融資 規模

1987 년도에 水産部門에 지원되는 政府豫算은 1,165 억원으로 전년보다 6.5%가 증가되었다. 主要 新規事業은 담수어 直賣場 및 加工施設 각각 1 개소, 指導船(1척) 및 試驗船(1척) 건조, 自營水産科 支援事業이며, 전년도 보다 특히 增額된 豫算事業으로는 資源造成事業, 試驗研究事業, 內水面開發, 漁港建設 및 漁民支援이다. 資源造成事業은 人工魚礁施設 (86 : 6,100ha → 87 : 7,000ha)과 自營水産科 支援이 늘었고 試驗研究事業은 研究團地 工事事業費와 試驗船代替, OECF借款事業費가 增加하였으며

內水面 開發事業은 直賣場, 加工施設의 新規支援과 養魚施設 事業費가, 漁民支援은 '85년 태풍 키티, 리號와 브렌다號 발생으로 인한 어민 약정이자 免除額의 政府補助가 增加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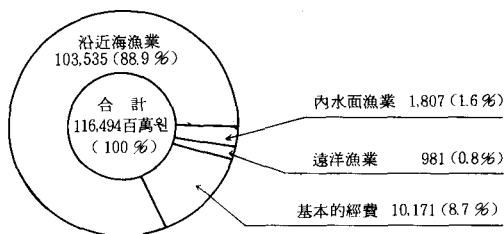
이밖에도 營漁資金 3,500 億원, 水産振興基金 및 財政資金 128 億원, 계획조선을 위한 國民投資基金 285 億원, 價格安定을 위한 農安基金 857 億원, 漁民後繼者育成基金 69 億원, 財政施設回收資金 50 億원, 農漁村地域 開發基金 76 億원 및 農漁家負債輕減을 위한 資金을 支援할 것이다.

〈表 108〉 水 産 豫 算
(會計別) 單位: 億 元

| | '87 | '86 | 增 △ 減 | '87/'86 (%) |
|-----------|---------|---------|-------|-------------|
| 一 般 會 計 | 88,365 | 81,625 | 6,740 | 108.3 |
| 資金管理特別會計 | 25,129 | 24,763 | 366 | 101.5 |
| 國庫債務負擔行爲 | 3,000 | 3,000 | - | 100.0 |
| 計 | 116,494 | 109,388 | 7,106 | 106.5 |
| 事 業 費 | 106,323 | 99,994 | 6,329 | 106.3 |
| 基 本 的 經 費 | 10,171 | 9,394 | 777 | 108.3 |
| 人 件 費 | 8,906 | 8,184 | 722 | 108.8 |
| 基 準 經 費 | 648 | 624 | 24 | 103.8 |
| 官 署 當 經 費 | 617 | 586 | 31 | 105.3 |

자료: 수산청 계획예산담당관실

(漁業別)



(事業別)

단위 : 백만원

| | '87 | '86 | 増減 | '87/'86 (%) |
|----------------|---------|---------|---------|----------------|
| 計 | 116,494 | 109,388 | 7,106 | 106.5 |
| 事業費 | 106,323 | 99,994 | 6,329 | 106.3 |
| ○ 水産資源造成 | 9,459 | 8,443 | 1,016 | 112.0 |
| ○ 養殖漁業開發 | 3,459 | 7,456 | △ 3,997 | 46.4 |
| ○ 安全操業指導 | 6,459 | 6,134 | 325 | 105.3 |
| ○ 内水面漁業開發 | 1,807 | 1,296 | 511 | 139.4 |
| ○ 試驗研究 및 漁村指導 | 8,115 | 6,882 | 1,233 | 117.9 |
| ○ 遠洋漁業의 安定的 成長 | 981 | 956 | 25 | 102.6 |
| ○ 水産物流通施設 | 841 | 1,308 | △ 467 | 64.2 |
| ○ 漁港建設 | 45,548 | 36,029 | 9,519 | 126.4 |
| ○ 漁撈施設 | 9,217 | 13,885 | △ 4,668 | 66.4 |
| ○ 漁民支援強化 | 1,512 | 969 | 543 | 156.0 |
| ○ 水産資金 | 17,136 | 15,000 | 2,136 | 114.2 |
| ○ 其他經常事業 | 1,789 | 1,636 | 153 | 109.4 |
| 基本的經費 | 10,171 | 9,394 | 777 | 108.3 |

자료 : 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第 3 節 水産物 生産 및 輸出 計劃

1987년도 6월말 현재 水産物 生産實績은 1,915 천톤으로서 계획대비 109%, 前年同期對比 95%, 3개년 평균대비 115%로 전년 에 비해서는 다소 저조하나 전반적으로 好調를 보이고 있다.

어업별로 보면 沿岸海漁業에 있어서는 정어리, 고등어, 갈치 등이 暖流 勢力 強勢로 生産이 순조로우나 멸치, 갑오징어 등은 氣象惡化로 生産이 저조하며 養殖漁業은 연조 冬節期 異常高溫 影響으로 김 生産이 부진하였으나 피조개 등 패류 양식품종의 生産은 순조롭다. 内水面漁業은 洛東江河口堰工事로 제철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遠洋漁業은 新漁場開拓에 힘입어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1987. 5. 1 부터는 共同漁業事業量을 수입으로 취급되도록 하였다.

〈表 109〉 水産物 生産動向 단위: 천%

| | '87 計 劃 | | 實 績 | | 對 比 (%) | |
|-------|---------|-------|-------|--------------------------|---------|---------|
| | 年 間 | 6 月 末 | 6 月 末 | 3 年 平 均 ('84 ~ '86) | 計 劃 | 3 年 平 均 |
| 計 | 3,400 | 1,762 | 1,915 | 1,666 | 109 | 115 |
| 沿 近 海 | 1,590 | 730 | 730 | 727 | 100 | 100 |
| 養 殖 | 850 | 599 | 537 | 553 | 90 | 97 |
| 內 水 面 | 60 | 22 | 20 | 19 | 92 | 108 |
| 遠 洋 | 900 | 411 | 628 | 367 | 153 | 171 |

자료: 수산청 연근해과

註: 遠洋漁業의 6 月末 實績에는 5 ~ 6 月 共同事業物量 80 천% 包含

輸出은 輸出環境의 好調와 市場 多邊化, 新製品 開發 및 수산물 선호 등 國際交易 環境의 改善으로 1987. 6 월말 실적은 879 백만\$로서 6 월가 지의 계획대비 123%, 3 개년 평균대비 171%가 증가되었다.

이는 필렛, 피조개, 간미역 등의 輸出單價 上昇과 참치, 굴 등의 海外 需要가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表 110〉 水産物 輸 出 動 向 단위: 백만\$

| | '87 計 劃 | | 實 績 | | 對 比 (%) | |
|-------|---------|-------|-------|--------------------------|---------|---------|
| | 年 間 | 6 月 末 | 6 月 末 | 3 年 平 均 ('84 ~ '86) | 計 劃 | 3 年 平 均 |
| 計 | 1,500 | 717 | 879 | 515 | 123 | 171 |
| 水 産 物 | 1,400 | 667 | 826 | 473 | 124 | 175 |
| 沿 近 海 | 905 | 431 | 542 | 295 | 126 | 184 |
| 遠 洋 | 495 | 263 | 284 | 178 | 120 | 160 |
| 漁 網 | 100 | 50 | 53 | 42 | 106 | 126 |

자료: 수산청 무역과

第 2 章 沿岸漁場の 牧場化

第 1 節 人工魚礁施設

沿岸海 水産資源의 감소에 대처하여 水産資源의 産卵 棲息場을 조성하고 아울러 불법어업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沿岸漁場의 牧場化計劃의 일환으로 人工魚礁施設을 추진하고 있다.

1987년에는 1986년의 6,193ha보다 807ha가 증가한 7,000ha에 人工魚礁를 시설하고 이미 施設한 海域中 25 個所에 漁獲效果和 魚礁의 保存 狀態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調査 研究結果를 토대로 새로운 魚礁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表 111〉

人工魚礁施設計劃

단위: ha

| 計 | | 既施設('71~'86) | '87 計劃 | '87 까지 總施設 |
|-----|--|--------------|--------|------------|
| 計 | | 23,994 | 7,000 | 30,994 |
| 釜 山 | | - | 100 | 100 |
| 京 畿 | | 157 | 100 | 257 |
| 江 原 | | 4,144 | 1,000 | 5,144 |
| 忠 南 | | 519 | 300 | 819 |
| 全 北 | | 526 | 300 | 826 |
| 全 南 | | 4,919 | 1,300 | 6,219 |
| 慶 北 | | 4,294 | 1,200 | 5,494 |
| 慶 南 | | 6,935 | 1,800 | 8,735 |
| 濟 州 | | 2,500 | 900 | 3,400 |

자료: 수산청 자원조성과

第 2 節 人工種苗 放流

海域別 特性에 맞는 有用品種의 種苗生産開發 및 放流를 위하여 1986년에 착공한 全北 扶安種苗培養場을 완공할 계획이며, 濟州道 南濟州郡에도 975 백만원을 투입, 種苗培養場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種苗培養場 7개소에 대해서도 패조류 위주의 시설에서 어류위주의 시설로 보강하기 위하여 484 백만원을 지원하였다.

1987년에는 國立水産種苗培養場에서 1,382 만마리의 種苗를 생산하여 漁村契 등에 분양하고 바다에도 放流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민간종묘 배양장에서 꽃게, 조피불락 등 稚魚 220 만마리를 매일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資源의 증강을 위하여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정부 주관하에 실시한 대구人工受精卵 방류사업은 1987년부터 수협 주관하에 慶南道와 國立水産振興院의 협조로 대구의 主産卵場으로 밝혀진 鎭海灣의 利水島 연안에 受精卵 20 억알을 1987. 1. 31 방류하였다.

〈表 112〉 種 苗 生 産 計 劃

단위 : 천마리

| | 計 | 注文津 | 木浦 | 麗水 | 浦項 | 忠武 | 濟州 | 大川 |
|------|--------|-----|-------|-----|-------|-------|-----|-------|
| 計 | 13,820 | 850 | 1,760 | 800 | 1,250 | 7,310 | 700 | 1,150 |
| 전복 | 2,000 | 350 | 200 | 400 | 250 | 150 | 600 | 50 |
| 우렁쉥이 | 6,000 | 500 | 1,500 | | 1,000 | 3,000 | | |
| 브리새우 | 4,000 | | | | | 4,000 | | |
| 진주조개 | 200 | | | 200 | | | | |
| 넙치 | 220 | | 10 | 50 | | 160 | | |
| 참돔 | 100 | | | | | | 100 | |
| 감성돔 | 200 | | 50 | 150 | | | | |
| 조피불락 | 100 | | | | | | | 100 |
| 대하 | 1,000 | | | | | | | 1,000 |

자료 : 수산청 자원조성과

연어 稚魚는 1986 년 대비 47 %가 증가한 620 만마리를 방류할 것이며 연어의 回歸率을 높이기 위하여 遼上河川의 整備와 孵化用水의 개선, 稚魚飼育技術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第 3 節 增養殖漁業 開發

1. 養殖漁業 開發 및 調整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深海 및 外延養殖漁場의 개발, 生産性 提高를 위한 養殖漁場 指導 管理體制의 강화, 各種 災害로 부터의 예방 및 일부 生産調節品種에 대한 安定生産을 증점 추진할 계획이다.

養殖漁場 개발에 있어서는 진주조개, 어류 양식 등 많은 자본과 기술을 요하는 養殖品種은 漁場開發을 적극 확대하고, 바지락, 가무락, 새꼬막, 김 등 養殖技術이 일반화된 품종은 다수 沿岸 漁民이 공동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이른게 所得源 事業으로 개발하며, 굴, 미역, 피조개 등 需給이 불안정하여 價格 및 收益性의 기복이 심한 다획성 품종에 대하여는 開發調節 品種으로 지정하여 안정적 需給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養殖漁場의 指導管理에 있어서는 전국 7,772 개의 養殖漁業權을 品種別, 養殖 時期別로 구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不實管理 養殖 漁業權을 정비함으로써 養殖漁場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密殖과 계속적인 사용에 의한 漁場老化 방지 및 漁場의 保全管理, 각종 病害 예방을 철저히 기하고 있다.

2. 生産基盤의 擴充

颱風, 갯벌 등의 災害에 대비하여 南·西海岸의 김 主産地에 김 冷凍網

貯藏庫 8 개소를 시설하고, 魚類蕃養用 飼料貯藏施設 2 개소를 시설하여 飼料供給問題를 해결토록 할 것이며, 전복種苗培養場 10 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다.

第 4 節 内水面漁業의 促進

1. 内水面 稚魚放養

遊休 内水面의 水産資源 造成을 위해 551 백만원을 投入하여 잉어, 떡붕어, 향어, 송어 등 經濟性 魚類의 稚魚(體長 5 ~ 7 cm) 34 백만 마리를 昭陽湖(江原)와 忠州湖(忠北)에 放養할 계획이다.

〈表 113〉

稚魚放養事業計劃

단위 : 백만미, 백만원

| | '71 ~ '86 | | '87 | |
|----------------------|-----------|-------|-----|-----|
| | 數 量 | 金 額 | 數 量 | 金 額 |
| 計 | 598 | 5,753 | 34 | 551 |
| 一 般 魚 種 (잉어, 떡붕어) | 554 | 4,948 | 25 | 354 |
| 開 發 魚 種 | 44 | 805 | 9 | 197 |
| • 송 어 | 15 | 410 | 4 | 115 |
| • 향어 • 백연어 | 29 | 395 | 5 | 82 |

자료 : 수산청 자원조성과

2. 養魚場 施設

内水面에서의 高級魚種 生産增大를 위해 674 백만원을 투입하여 10 개소의 企業養魚場을 施設하고 運營資金 20 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신규사업자에 대한 養魚技術教育을 실시하여 企業養魚를 育成하는 한편 自體資金 調

達能力이 빈약한 새마을 養殖契에 共同養魚場 2 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表 114〉

內水面 養魚場 施設支援計劃

단위: 개소, 백만원

| | | 計 | 가 두 리 | 맹 장 어 | 송 이 | 共同養魚場 | 민 물 읍 |
|-------|--|-------------|-------|-------|-----|-------|-------|
| 物 産 | | 18 | 8 | 1 | 5 | 2 | 2 |
| 事 計 | | 704 | 256 | 118 | 200 | 30 | 100 |
| 業 融 資 | | 472 (21) | 179 | 83 | 140 | (21) | 70 |
| 費 自 擔 | | 211 | 77 | 35 | 60 | 9 | 30 |

자료: 수산성 자원조성과

註: ()는 補助

3. 內水面漁業 技術 開發

全國에 걸쳐 균형있는 內水面 開發을 위하여 1987년에는 경기도에 7 억원을 투입하여 內水面 開發試驗場 新設을 추진하고 있어 濟州道를 제외한 8개도가 內水面 開發試驗場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인력증원과 시설보강으로 치어방양사업을 주관토록 할 계획이다.

4. 內水面漁業 秩序 確立

遊漁人들의 자발적인 資源保護意識 제고와 遵法精神 함양을 위하여 新聞, 傳單, 專門誌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봄철 産卵期, 가을철 盛漁期 및 연어 등 遡河性 魚類의 遡上時期를 特別團束期間으로 설정하여 行政機關과 有關團體가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社團法人 全國낚시회聯合會에서도 會員들이 낚시風土淨化 現地 캠페인을 실시하여 遊漁秩序를 준수하도록 善導하고 內水面 資源保護에 열의가 있는 새마을養殖契長, 洞里長 등 현지 住民中 指導級 人士들과 낚시界 著名人士를 內水面 資源保護 名譽監視官으로 委囑하여 指導・啓蒙할 계획이다.

第5節 持續的生產과 制度改善

産業廢水 및 都市下水, 廢棄物, 油類 등 각종 汚染物質에 의한 水質汚染과 公有水面 埋立・干拓으로부터 沿岸漁場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요 沿岸 및 工團周邊水域에 대한 環境汚染調査를 강화하고 水産資源保全地域 등 保全水域 管理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老化 漁場의 底質改善 및 汚物收去 등 環境淨化事業을 실시하고 關係部處와 협조하여 汚染行爲規制・團束 및 制度改善 등 沿岸漁場 汚染防止對策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1. 沿岸漁場 環境調査 및 保全水域 管理

主要沿岸 및 臨海工團 周邊水域에 340개, 水産資源保全地域에 120개 觀測點을 선정하여 一般汚染度와 重金屬含量調査를 실시하는 한편, 淸淨海域에 대하여도 113개 觀測點을 선정, 海水 및 貝類에 대한 細菌含量 등 衛生調査를 실시하여 基礎資料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안에 지정된 水産資源保全地域(10개소, 4,125.69 畝)內에는 工場設置 및 家畜放牧을 禁止시키고, 公有水面 埋立, 干拓, 浚渫, 鑛物採掘 등의 行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1986~1987년에 실시중인 沿岸漁場 基本調査 결과를 검토하여 水産業上 保全이 요청되는 海역에 대하여는 水産資源保全地域으로 추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淸淨地域으로 지정된 慶南 巨濟-開山灣과 紫蘭-蛇梁海域에 대하여도 水質保全管理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1984~1986년까지의 衛生調査結果를 검토하여 全南 龍莫灣과 慶南 山陽海域을 淸淨海域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2. 沿岸漁場 環境淨化

沿岸漁場에 沈積되거나 방치된 廢杭木, 廢網, 로프 등 汚物과 양식장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漁場老朽化로부터 漁場被害를 예방하고 生産性を 증대시키기 위하여 1987 년에도 國庫 150 백만원을 지원, 淸淨海域 및 水産資源保全地域內 어장과 양식장 밀집 수역 등을 중심으로 底質 改善과 汚物을 收去토록 할 계획이다.

3. 赤潮對策

여름철 高水溫期에 發生할 우려가 있는 赤潮被害防止를 위하여 嶺海灣 동 慶南沿岸과 麗水沿岸, 西海岸의 仁川海岸에 57 개 관측점을 선정, 赤潮生物分布 및 赤潮發生環境 등을 조사하고 漁村指導員의 機動配置, 漁民赤潮監視員 指定運用, 關係機關 合同 航空豫察 등 赤潮豫察 및 監視活動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赤潮防除技術開發을 위한 基礎試驗과 有毒性 플랑크톤의 出現量을 조사하는 등 研究事業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4. 關係部處 合同對策 講究

沿岸漁場 汚染의 根本原因이 되고 있는 廢水, 廢棄物, 기름 등의 海洋流入防止를 위하여 臨海都市의 下水 및 糞尿, 工團廢水 등 汚染物質處理施設을 확충하고, 汚染物質의 海洋投棄行爲를 강력히 규제 단속하는 한편, 오염사고 발생시 汚染源의 조기 제거 및 被害救濟對策을 강구토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大單位 公有水面 埋立·干拓 등으로부터 어장을 보전하기 위하여 埋立免許官廳과 적극 협조, 水産資源保全地域과 淸淨海域, 漁場密集水域 등 水産業上 保全이 요망되는 수역에 대한 埋立·干拓을 적극적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第 3 章 沿近海 漁業의 秩序 確立

第 1 節 漁 民 教 育

安全操業教育은 安保教育에 역점을 두고 定期教育으로는 地區別水協 및 業種別水協 주관하에 연근해어선의 선주 및 간부선원(선장, 기관장, 통신장)에게 年 4 시간씩 政府施策, 安保教育 및 安全操業科目과 월선피남방 지를 위하여 어선안전점검과목을 追加하여 教育하고 있다.

東·西海 漁撈保護本部에서는 동해 大和堆漁場 및 황해·동지나해에 出漁하는 船員과 船主, 水協 任職員에게 安保教育, 國內外 情勢 및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特定海域에 출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출항전 時事性 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的 港浦口와 어촌 그리고 어선에 표어, 포스타, 팜플렛 및 弘報教材를 배포하여 어민의 對共姿勢 확립 및 警覺心을 고취시킴으로써 對北僥浸透對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수협 임직원과 어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으로 밝고 믿음 있는 漁村社會 건설과 水産施策의 理解와 호응을 위해 今年 2월 부터 3월 까지 11개 지역에서 延人員 1,416명에게 '87 水産施策, 2,000년대의 미래상, 국가관 확립과 우리의 자세 등에 대해 漁民教育을 실시하였다.

第 2 節 安全操業指導

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하여 東·西海 特定地域 및 西海 自制海域, 大和堆 漁場에서의 안전조업에 역점을 두고 어르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東海·大和堆 오징어 盛漁期(6.15~12.31), 黃海·東支那海 병어 盛漁期(3.1~7.31), 西海 종어 盛漁期(11.1~익년 4.30)에는 500톤급 이상 大型 指導船을 1~2척 機動配置하고 西日本水域에는 500톤급 이하 지도선을 배치하여 操業紛爭 예방 및 漁撈保護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福紐母船을 遠海漁場에 출동시켜 操業漁船에 油類, 얼음, 기관부속품 등의 船用品을 공급하고 의사를 乘船시켜 應急患者에 대한 치료도 하고 있다.

海難事故 예방을 위해서는 主要 港浦口 37개소(出入港 統制所 15, 合同申告所 22)에 安全點檢要員 92명을 배치하여 出入港 漁船에 대한 安全點檢, 船團編成, 出入港申告業務 등을 수행토록 하고, 東·西海 漁撈保護本部에 乘船指導員 각 10명씩을 배치하여 漁船의 越線操業 및 被拉豫防, 선단 무단이탈 방지, 漁船 動態把握 등 安全操業指導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漁業無線局에서는 出漁船에 관한 動態把握, 선단 이탈 어선의 추적관리, 조난어선 구조, 漁船의 待避 등 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盛漁期前에 군·경기관과 협조하여 원활한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盛漁期 漁船安全操業指導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第 3 節 不法漁業 團束

상습적인 企業型 不法漁業을 척결하기 위하여 常習企業型 不法漁業인 小型機底, 機船桁網, 潛水器, 남장망, 스쿠버다이버 등에 대해 地域責任擔

當制 실시, 매 분기별 有關機關 合同團束 실시, 出入港團束 강화, 불법어획물 流通經路 追跡調査를 실시할 계획이며, 漁民, 水産關係機關 및 自體 任職員에 대한 弘報 및 教育을 강화하고 自體 不法漁業追放運動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0% 미만 小型 漁船의 建造 發注許可를 抑制하는 등 小型船 建造를 조정하고 無許可 漁船에 대한 罰則 整備 등 處罰規定을 강화할 계획이며, 內務部, 法務部 등 관련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不法漁船의 出入港 統制, 합동단속시 警察要員 적극 참여, 不法漁業者 엄중처벌, 漁業指導船 운영 개선 및 機構補強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第 4 節 漁業無線局 運營과 施設補強

漁船測位業務를 강화하여 越線·被拉事故를 防止하고 특히 北傀의 '88 올림픽 妨害工作으로 間諜船 浸透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전 어민에게 緊急報告要領 教育을 실시하고 間諜船 발견시를 가상한 謀議通信訓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主要 港浦口의 魚種別 時勢를 出漁船에 통보하여 所得 增大에 기여하고 漁業無線局의 通信機 整備技術者를 최대한 활용하여 어선의 通信裝備를 무료로 修理 支援하고 通信士의 자질 향상을 위한 專門知識과 通信保安教育을 실시할 계획이다.

遠距離 出漁船의 通信疏通難을 解消하기 위하여는 漁業通信用 周波數를 追加確保하여 試驗通信을 거친후 운용할 계획이며, 國庫補助 586백만원을 投入, 瑞山無線測位局을 移設하고 方向探知機도 최신 裝備로 交替하여 測位能率 제고와 方探範圍를 확대할 계획이며, 摩瑟浦 漁業無線局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東支那海 출어선의 動態把握業務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東草漁業無線局 등 5개소의 老朽通信裝備 9대를 대체할 계획이다.

第 4 章 水産技術의 開發과 普及

第 1 節 水産振興院의 活性化

1. 研究團地 造成

1986 年 移越 施工中인 水産振興院 本館 및 研究棟 11 千 m^2 의 一部工事は 1987. 2 月 再着工하여 금년에 준공 예정이며, 1987 년에 시행할 建築工事의 實施設計를 8 月까지 完成하고 建築工事(15 千 m^2)를 9 월에 착공하여 1988. 10 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水産振興院은 1988 년도에 1 次 移轉하고, 水産技術訓練所 및 漁業技術訓練所 건물은 1988 년에 所要豫算을 추가 확보하여 1989 년에 이전할 계획이다.

2. 機構 및 機能 補強

1987. 4. 3 및 8. 14 水産振興院 職制를 2 部 11 課(科) 1 研究室 12 研究所 778 명에서 2 部 10 課(科) 2 研究室 12 研究所 829 명으로 개정하여 水産種苗培養場 新設에 따른 所要人員을 增員하고 1985 년에 신설된 研究科 및 研究所 人員을 보강하며 漁具漁法科를 漁具漁法研究室로 分離시켰다. 또한 1987. 4. 24 및 8. 14 漁村指導所와 水産種苗培養場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에 關한 規則을 개정하여 水産種苗培養場은 6 개소에서 8

개소로 증설(보령, 부안 신설)하고 종묘배양장 및 지도소의 명칭과 관찰구역을 일부 조정하였다.

또한 遺傳育種研究와 遠隔探查 등 尖端 水産技術의 개발과 指導需要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職制改正을 추진할 계획이다.

3. 試驗機器 및 裝備補強

日本 海外經濟協力基金(OECF)에 의한 機器導入 殘餘分 263 점을 1987년 말까지 購買完了(총 672점, 7억엔) 할 계획이며, 忠武水産研究所와 扶安種苗培養場 등 신설 기관용 및 老朽裝備代替를 위한 試驗機器 및 裝備 305 점은 一般會計豫算으로 購入할 계획이다.

4. 研究員 資質向上

2000년대를 향한 첨단 수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遺傳工學, 海洋遠隔探查 등을 內實化하고, 연구원의 국내외연수, 專門家交流, 海外研究所와의 情報交流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987년에는 日本, 프랑스, 美國 등에 20명의 연수생을 파견하고 專門家を 교류하는 한편 國內研修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 19차 韓·日 農林水産技術協力委員會 合意事項 및 韓·佛 姉妹 結緣事業을 통하여 日本에서는 魚類種苗生産 및 養殖技術開發, 海漁況 豫測 및 新漁具漁法開發, 水産加工 分野를, 프랑스에서는 海洋資料處理 및 바다가게 양식에 대한 연수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5. 研究基金造成 및 運用

1986년까지 조성된 水産研究基金 511,774천원의 이자 수익금 51,100

천원을 연구지원금, 연구원 자녀장학금 및 연구공적포상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表 115〉 研究基金 活用計劃

단위:천원

| 活 用 用 途 | 金 額 |
|----------------------|--------|
| 計 | 51,100 |
| 研 究 支 援 金 | 24,000 |
| 子 女 獎 學 金 | 12,000 |
| 功 績 褒 賞 金, 其 他 獎 學 金 | 4,000 |
| 研 究 基 金 算 入 | 11,100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6. 産學協同

1987.3 中央水産産學協同審議會 定期會議을 개최하여 임기만료된 2개 분야 2명 및 신규 1명의 兼職研究官을 任用하였고(검직연구관 총 16명) 임기만료된 中央審議會 專門委員(7개분야 27명)과 各道 審議會 委囑職委員(8개도 38명)을 委囑함으로써 産學協同體制를 갖추었다.

各道 審議會에서 접수된 13개 補助研究課題中 “海産魚類의 品種改良을 위한 遺傳育種學的 基礎研究”의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補助研究課題를 확대할 계획이다.

〈表 116〉 産學協同補助研究課題

단위:천원

| 課 題 名 | 所要豫算 | 研究責任者 |
|--------------------------------------|--------|-----------|
| 3 個 課 題 | 20,000 | |
| ○ 海産魚類의 品種改良을 爲한 遺傳育種學的 基礎研究 | 8,000 | 釜山水大 김동수 |
| ○ 西海沿岸漁場의 生産力 調査 | 6,000 | 仁 荷 大 최중기 |
| ○ 地域의 特殊性과 水産經營의 活性化 (水協中央會 委託事業) | 6,000 | 釜山水大 장수호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한편 1987년도 水産系 專門大學生 現場實習 産業體로 22개소를 지정하여 2개 專門大學 68명을 現場實習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2節 所得과 直結되는 技術開發

1. 養殖技術 開發試驗

가. 有用 貝藻類 增産試驗

서해안 백합의 漁場回復試驗, 寄生蟲感染率, 漁場環境 調查를 착수하였으며 제주 연안의 소라 漁場環境, 棲息密度 및 먹이生産量 조사, 標識放流試驗, 寄生蟲 感染率 조사와 노랑 가리비의 養成 및 人工採苗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김의 갯병 진단을 위한 基礎試驗을 실시하고 漁場別 김品種 分布調査 및 適品種 양식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한편 優良種 選拔에 의한 遺傳育種學의 研究基盤 확립을 위하여 굴, 전복, 진주조개의 優良形質 특성조사 및 種間 相互交配 시험과 김의 優良品種 選拔, 色彩 變異形의 遺傳子 분석 및 繼代培養에 의한 유전형질의 특성을 비교 조사중에 있다.

나. 淺海 有用生物 增産試驗

貝藻類 이외의 淺海 有用生物의 養殖技術 개발을 위하여 深海産인 북쪽 말동성계의 生態 및 淺海 移殖效果 시험과 우렁쟁이의 斃死原因 규명을 위한 환경 조건별, 양식방법별, 水層別 成長度와 斃死率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서해안 輸出品種인 갯지렁이의 分布相, 양식시설효과, 어장 환경 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다. 種苗生産 및 魚類養殖技術 開發 試驗

淺海 자원증강과 양식용 종묘의 안정적 공급기반조성을 위하여 넙치,

조피불락, 들휴, 전복, 진주조개, 대하, 보리새우, 우렁쟁이 등의 有用 水産種苗 13,820 천마리를 생산하는 한편 가자미류, 농성어류, 농어, 보라성게 등 20 종의 人工種苗 생산기술 개발 시험을 실시한 계획이다.

어류양식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1984 년 이래 실시하여온 주요 양식장 환경조사와 어병조사 및 송어 양식기술 개발시험, 방어막이 순치 시험, 육상사육시험과 海産魚配合飼料 개발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어류의 遺傳育種學的 연구의 착수와 함께 넉치 海上飼育試驗을 실시한 계획이다.

라. 沿岸漁場 基本調査

水面的 종합적인 이용방안 수립과 계획적인 개발추진을 위하여 養殖漁場 활용상태 및 養殖場 개발가능성 조사와 人工魚礁施設 適地調査, 水質 汚染調査, 臨海邑面の 漁業權 현황과 漁業別 漁具·漁期·漁獲量 등 沿岸 漁業 實態調査와 기타 1,513 개 어촌계의 附帶施設, 水産觀光施設 등 基盤 施設 실태조사를 1986 ~ 1987 년까지 2 년간 계획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다.

마. 淡水魚 試驗研究

忠州湖의 환경변화와 서식생물 조사로 수면개발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槐山湖, 寶城湖, 南大川 등 수산자원보전지역의 수질 및 자원동태조사를 실시하며 우량종묘의 생산 보급과 함께 틸라피아 구량종 개발시험, 메기, 쏘가리 및 산천어, 열목어, 무지개송어와 같은 냉수성 어류에 대한 양식 시험과 찬넬메기, 슈머송어의 種苗生産 및 養魚技術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유용담수어류의 어병 예방을 위한 어병연구의 함께 어류육종시험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이다.

2. 漁業技術 開發試驗

가. 로프트를 漁具漁法 開發試驗

底層引網漁具의 流水抵抗을 감소시키면서 網高의 網入口의 斷面積을 크

게 하여 어획성능을 높일 수 있는 로프트를 漁具漁法 개발이 요망되어 模型漁具 水槽試驗 및 해상에서의 실용화 基礎試驗 결과를 토대로 실제 海上操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물크기의 어구를 제작하여 海上適應試驗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 音響漁法 研究

선진 수산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중에서 電波나 光波보다 전달효과가 크고, 水産動物의 反應도 민감한 音響을 이용한 새로운 漁法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어업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音響漁法 研究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1983년부터 基礎段階로서 多獲性 魚類에 대한 水中發生音 録音, 音響에 대한 魚類의 反應資料 등을 수집하는 한편, 學習用 音響부이를 개발코자 電子音響 發生裝置를 설계, 제작하여 기초적인 性能試驗을 실시한 바 있다.

1987년에는 周波數와 音壓의 변화에 따른 魚類의 集魚 및 驅魚 反應調査를 실시하는 한편, 音響사용시와 비사용시의 漁獲性能 변화를 비교 究明하고, 音響부이 性能試驗을 통한 魚類의 音響學習 可能性도 계속 究明할 계획이다.

다. 定置網 揚網 省力化 研究

人力不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定置網漁業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定置網의 魚捕部에 浮力資材를 이용한 새로운 揚網方法을 개발코자 模型漁具에 의한 水槽試驗과 현지 海上基礎試驗을 실시한 바 있으며, 1987년에는 實物漁具를 제작하여 海上適應試驗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定置網 種類別 揚網適正浮力 및 資材를 연구할 계획이다.

라. 帆布를 이용한 트롤用 展開裝置 開發試驗

트롤漁業 展開板은 대부분 鐵材로서 자체 重量이 과대하여 취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展開板의 安定性과 展開性能 향상을 위한 특수 구조로 인하여 많은 製作費가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模型試驗 결과를 토대로 帆布로 된 展開裝置를 설계 제작하여 展開性能과 適正 投揚網方法 등 實用化 基礎試驗을 해상에서 실시중에 있다.

3. 水産物 利用加工試驗

가. 加工技術 開發試驗

多獲性 및 低利用 수산물의 加工技術開發을 위하여 정어리, 남극새우(크린)에 대한 製品加工을 비롯하여 海藻類, 水産廢棄物 등의 이용에 관한 시험을 실시중에 있다. 정어리에 대해서는 1985년에 개발한 脫皮方法을 응용하여 기존 방법에 비해 加工收率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새로운 煉肉加工과 調味料素材開發을 시도하고 있는 한편 1986년에 이어 단기간에 정어리 간장을 제조하기 위한 速成醱酵에 관한 연구도 계속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남극새우의 식용화를 위한 肉採取技術開發試驗과 製品加工過程에서 廢棄物 및 副産物로 나오는 가다랭이 및 피조개 內臟物, 굴 및 우렁쉥이 접질에 대한 利用調査試驗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寒天漂白劑 및 가라기난 抽出方法改良에 관한 研究와 더불어 未究明된 각종 수산물에 대한 成分分析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나. 魚貝類 衛生管理 改善試驗

冷凍貝類의 對美輸出에 따른 韓·美貝類衛生協定 이행을 위하여 수출용 패류 生産指定海域 2개소 11,613ha와 指定豫定海域 2개소 20,000ha에

대한 細菌調查와 더불어 重金屬 및 貝毒에 관한 조사, 殺蟲劑의 汚染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류 양식장의 위생관리 지침 설정을 위하여 降雨에 의한 水質汚染度와 그 회복에 관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는 한편 수산물의 비브리오 敗血菌 汚染調查도 추진할 것이다. 이 외에 시중 유통 생물의 細菌學的 汚染實態調查를 실시중이다.

第 3 節 基礎調查事業

1. 海洋環境調查

韓國 沿岸漁場의 海洋變動調查(海洋物理, 化學, 生物學的 調查)를 동·서·남해의 22개 定線 175개 지점에서 연 6회 실시하며, 海洋調查體制의 첨단화를 위해 人工衛星映像受信裝置로 人工衛星 NOAA의 海面圖像을 수신하고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表面水溫을 통보 받아 海況을 파악하는 海洋遠隔探查를 병행 실시하는 한편 122개 沿岸定地觀測所에서 매일 海洋物理 및 氣象學的 調查를 실시한다. 아울러 20개 장소 25개소에서 연 4회 人工魚礁效果 調查를 실시하며, 南海中部沿岸 海域 32개 점에서는 底質組成 및 變動狀況을 究明코자 연 2회 底質調查를 실시한다.

全國 沿岸漁場 조사를 위하여 주요 臨海工團周邊 등에 설정된 246개 지점에서 化學的 酸素要求量, 溶存酸素 및 營養塩類 등 理化學的 水質指標成分을 연 6회, 海水, 水産物의 重金屬 含量調查 연 2회, 底質中の 重金屬 含量調查 연 4회 조사하여 연안 수질의 經年 汚染度 變化樣狀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경남 鎮東灣에 있어서는 養殖漁場의 自家汚染 變動을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赤潮에 의한 養殖生物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남·서해안에서 赤潮豫察을 연 16회 이상 실시하고 底質改良에 의한 赤潮防

除技術 開發試驗도 착수하였다.

또한 海水 및 貝類中의 有毒性 플랑크톤의 出現種과 出現量을 조사하고 있으며, 沿岸汚染 指標生物로 중요한 種에 대해서는 室内 人工培養實驗에 의해 그들의 生理 生態의 特性을 究明하고 있다.

2. 漁業資源 調査

沿近海 漁業資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沿近海 主要 漁業(10개 어업) 對象資源에 대한 漁獲量 變動調査 및 生物學的 調査, 魚卵·稚魚 調査를 실시하고 資源의 動態 및 生態를 연구하고 있다.

한편 고래資源의 評價 및 管理를 위하여 高래資源 目視調査를 실시하고 있으며, 魚群의 移動狀況과 漁況의 전망을 분석하여 주간 및 월간 漁況豫測을 실시하고 오징어어업에 대하여는 漁獲試驗에 의한 漁場調査를 실시하여 漁況豫測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遠洋漁業資源의 지속적 이용과 합리적 管理를 위하여 트롤, 새우트롤, 다랭이 延繩 및 旋繩, 오징어流刺網 및 채낚기, 遠洋꽂치棒受網, 상어流刺網 등 9개 주요 어업을 대상으로 漁業實績資料를 수집 분석하여 資源 動態를 파악하고, 명태, 대구, 다랭이類, 오징어類 등 14개 어종에 대한 生物學的 조사와 오징어, 다랭이類 등 4개 어종에 標識放流를 실시하여 어종별 資源豊度變動 把握 및 資源狀態評價를 실시하며 아울러 電氣泳動法에 의한 重要 어종의 系統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및 평가된 결과를 大西양 다랭이 保存委員會 및 韓·美漁業專門家會議 등 16개 國際漁業會議과 遠洋漁業政策資料로서 제공할 것이다.

한편 기존 어장인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試驗調査船 釜山 851 號로 60일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사관이 합동으로 빨강오징어의 분포, 이동과 海洋環境과의 關係를 조사하고, 현지 어선의 操業動態를 파악하여 漁業情報資料를 어선에 제공하여 增産에 기

여하고 韓·美合同調査計劃에 의한 연어 및 海上 哺乳動物의 混獲狀態와 環境關係를 구명하여 公海상의 국제적 漁業紛爭에 대처할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며, 南水洋 海域의 分轄 및 漁獲쿼타制 실시에 대비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시작한 南水洋 새우漁場調査는 1987년에도 民間試驗船에 研究陣을 승선시켜 70여일 동안 漁場環境, 海洋生物, 資源 및 生態調査를 실시할 계획이다.

第 4 節 漁村 指導 事業

1. 技術指導 弘報

國立水産振興院의 漁村指導職 250 명이 漁村을 巡廻 指導한다.

굴, 김 등 다핵성 품종에 대한 乘船豫察을 통하여 作況과 病蟲害에 대한 대책을 지도하고 重要地點에 대한 海況을 매일 관측하여 養殖施設 및 採苗 適期와 採苗場所를 예보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낙후되었거나 새로운 所得事業으로 개발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示範漁場을 확대 운영할 것이다.

〈表 117〉 示範 漁場 運營 計劃

단위 : 개소

| 계 | 김 | | 전 복 | | | 우 명 생 이 | | 굴 채 요 | 참 모 자 반 (수 하 식) | 못 말 목 식 | 어 류 축 양 |
|----|-------|-----------|-----|-------|---------------|---------|-------|-------|-----------------|---------|---------|
| | 김 양 식 | 사 상 체 배 양 | 방 류 | 수 하 식 | 중 간 육 성 (수 조) | 수 하 식 | 가 이 식 | | | | |
| 32 | 3 | 2 | 7 | 8 | 1 | 4 | 1 | 1 | 1 | 1 | 3 |

자료 : 국립수산진흥원

어장의 관리부실로 최근에 늘어나는 어장피해 예방을 위하여 순회지도와 養殖評價로 密殖, 過占 및 無免許施設 방지와 漁場整理後 施設을 하도

목 지도도를 강화하고 27 개灣 47 개소에 漁村指導公務員을 배치하여 赤潮 등 異常海況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漁村指導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민의 關心品種에 대한 水産技術誌와 리후렛을 發刊 配付하고 海・漁況豫報 및 増養殖豫報를 통하여 水産情報를 신속히 전달하며, 비디오와 슬라이드 製作・活用 및 신문・잡지와 TV・라디오 등 大衆媒體를 통한 수산기술보급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漁民教育 및 漁民後繼者 指導

水協과 합동으로 굴, 피조개, 김, 우렁쉥이 및 어류양식 등 주요 품종에 대하여 지역별 어업순기에 맞추어 採苗, 種苗培養 및 漁場管理 방법과 새로운 所得開發 품종에 대하여 어촌 현지를 순회하며 75 천명의 어민에게 技術教育을 실시하는 한편, 漁村指導職 공무원 60 명을 대상으로 '87. 2 월 국립수산기술훈련소에서 1 주간의 敎官養成班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VTR 교재 4 종을 제작하여 어민 교육시 활용토록 할 것이다.

어민후계자 3,747 명에게는 전담지도사를 배치하고 營漁技術指導와 水産技術誌 등 각종 간행물을 배부하여 어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과학영이실천을 통한 복지이촌건설의 지도자로 육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3. 漁村 指導機能 強化

가. 漁村指導公務員 資質向上

국립수산진흥원 산하의 연구소와 종묘배양장에서 50 명의 漁村指導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과 연구개발된 기술에 대한 장단기 專門技術教育을 실시하여 어민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는 기술지도를 수행토록 할 것이다.

〈表 118〉

漁村指導公務員 專門教育計劃

단위: 명

| | 計 | 長期專門教育 (3個月) | 短期專門教育 (1週) |
|--------|----|-----------------|----------------|
| 計 | 50 | 10 | 40 |
| 內水面研究所 | 3 | 3 | - |
| 種苗培養場 | 47 | 7 | 40 |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나. 自願漁村指導者 確保

漁村契長, 漁民後繼者 또는 篤漁家로서 指導力을 갖춘 자 등 지역내 덕망과 營漁經驗을 가진 有力人士를 어촌지도소별로 1~2명씩 36명을 委囑하여 새 品種, 새 技術의 示範實踐, 水産施策事項에 대한 홍보, 지역특성에 맞는 지도방향 설정에 대한 咨文 등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도 效과를 鉅양할 계획이다.

第5節 漁業 技術의 向上과 訓練

1. 水産技術 訓練

수산공직자에게 정신교육(5개반 293명)과 직무교육(9개반 470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專門教育課程에 있어서는 漁村指導士의 對漁民 指導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漁民教育教官養成班을 운영하며, 主要 水産施策事業인 “水産物 加工業의 효율적인 育成 方案”을 政策開發班 主題로 선정하여 問題點을 발굴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漁民後繼者 育成을 위하여 1987년 漁民後繼者 826명(1986년 漁民後

繼者 技術教育 未履修者 10명 包含)과 轉役後 漁業從事希望 現役兵 270명에게 수산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漁船員의 資質向上과 保安意識을 고취하기 위하여 9,100명의 海技士, 一般船員에게 素養教育을 실시할 계획이다.

2. 海技員 養成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 海技士課程 205명과 普通船員 課程 200명 등 우리나라 訓練生 405명과 政府對外技術供與計劃에 의한 外國人 訓練生 50명을 양성 배출할 계획이며 乘船職員의 자질향상과 어선의 安全運航을 위하여 지난 해에 이어 4,000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第 5 章 遠洋漁業의 安定的 成長

第 1 節 漁 業 協 力

1. 沿岸國과의 協力

韓·美漁業協定 更新協議 및 美國水域漁獲쿼타 확보를 위하여 官·民交涉團을 2 회, 뉴질랜드, 濠州와의 附屬約定 更新 및 漁獲쿼타 확보를 위하여 大洋洲交涉團을 1 회 과전할 계획이며, 漁業協定 締結 및 施行議事錄 更新을 위하여 모리타니아와 모로코의 水産海運長官을 초청할 계획이다.

또한 南南協力 精神에 입각하여 開發 途上國 31 개국으로부터 40 명의 研修生을 초청하여 훈련시키고 6 개국에 6 명의 水産專門家를 과전하여 水産技術을 지도할 예정이다.

기존 漁業協定の 수행과 協力增進을 위하여 兩國間 會議을 13 회 개최 하고 國際水産機構會議에도 11 회 참석할 계획이다.

2. 漁獲쿼타 確保

가. 美 國

우리나라는 美國의 200 海里 排他的 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과 北太平洋 公海에서 30 척의 大型트롤漁船이 조업하여 遠洋漁業總生

産量の 약 65%를 생산하고 있다. 美國水域에서의 操業은 1977 年 美國의 200 海里 經濟水域 宣布後 韓・美漁業協定이 체결되어 淸타操業으로 전환한 이래 1984 년까지 漁獲淸타는 매년 증가되어 왔으나 그 이후 美國의 水産資源 自國化 政策 (외국에 의한 漁業開發 → 외국인과의 共同漁業開發 → 美國人 獨自開發)에 따라 1986 년에는 전년의 46%인 116.169%를 割當받았으며 1987 년에는 외국에 割當할 淸타總量(TALFF)을 64천%으로 감축하였고, 1988 년에는 淸타의 終想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直接淸타에 의존하던 北洋漁業 操業方式에서 탈피하여 共同漁業事業을 증가시켜 直接漁獲淸타의 감소분에 대비하고자 하며 1987년도에는 550천%을 생산할 계획이다.

共同事業을 수행함에 있어서, 1986년까지는 同事業量을 內國物品으로 國內에 搬入하는 것으로 취급하였으나 1987. 5. 1 부리는 關稅를 부과하되, 同事業漁獲物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전체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명태, 가자미에 대하여는 2%, 기타 어류에 대하여는 10%의 割當關稅를 적용하게 되었다.

北洋漁場의 지속적 確保問題에 있어서 從來는 美國이 操業國 및 美國內業界間 協定の 의거 올림픽방식(Olympic system)으로 共同事業을 수행토록 하여 왔으나 금후로는 同事業物量도 國別 淸타化(立法豫告, 1986. 8)를 통한 規制를 강화할 추세에 있어 漁獲 및 加工 技術發展度에 따라 共同事業物量도 自國 漁民만이 이용토록 단계적인 外國漁船 徵收政策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同事業物量 先占을 위한 操業國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國內水産物(명태) 공급의 源泉인 北洋漁場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 沿岸海 漁業과의 마찰이 적은 어종의 수입 확대와 輸入關稅率의 인하(割當關稅 適用)로 美國 水産物の 수입을 증대하고, 美國은 실질적인 合作投資事業의 추진이 없이는 北洋漁業을 지속시킬수가 없을 것이므로 美國과 合作投資 추진을 위하여 北洋業界의 파감한 投資와 政策 뒷받침을 병행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漁業保存管理法의 준수지도와 專門家 초청 등에 의한 세미나 개최를 포함, 韓·美 民間會議을 정례화하고, 미국 水域內의 資源調査協力도 계속 수행하여 有力人士의 방한 초청과 官·民 交涉團의 適期 派遣으로 水産外 交通을 강화할 것이다. 操業海域은 현재의 알라스카만 및 베링 海域에서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해역까지 확대, 直接쿼타 및 共同事業을 수행할 것이며, 國際 水産機構 및 미국의 對 外國 水産政策에 협조하고 韓·美間의 어업협력을 바탕으로 互惠平等의 입장에서 共同利益이 이루어지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다.

〈表 119〉 直接쿼타 및 共同漁業事業

단위: %

| | 쿼 타 操 業 | | | 共 同 事 業 | | |
|---------|---------|---------|-----|---------|---------|-----|
| | 쿼타량 | 消費量 | 消費率 | 計 劃 | 實 績 | 消費率 |
| 1977 | 81,190 | 80,159 | 90 | | | |
| 1982 | 307,000 | 239,134 | 78 | 45,000 | 48,100 | 107 |
| 1983 | 324,690 | 272,568 | 84 | 58,600 | 57,323 | 98 |
| 1984 | 329,757 | 268,432 | 81 | 102,700 | 98,166 | 96 |
| 1985 | 250,219 | 221,294 | 88 | 181,900 | 176,767 | 97 |
| 1986 | 116,169 | 98,596 | 85 | 458,837 | 375,570 | 82 |
| 1987 計劃 | 14,157 | 916 | 6 | 550,000 | 405,867 | 74 |

자료: 수산청 원양생 산담당실

註: (1) 1978 ~ 1981년 數値는 1986년도 年次報告書 參照

(2) 1987년 消費量 및 實績은 87. 7. 31 현재임

나. 뉴질랜드

1977년 트물어장을 개발한 이래 1981년 새로운 오징어 채낚기어장 개발로 出漁隻數가 증가하여 '86/'87 漁期('86. 10. 1 ~ '87. 9. 30)에는 政府間 高位會談 結果, 어장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역을 포함, 8.662%의 트물쿼타와 1.500%의 오징어 채낚기 쿼타를 할당받아 10척이 조업하고 있으나, '87/'88 漁期('87. 10. 1 ~ '88. 9. 30)에는 뉴질랜드 政府가 타분

야의 협력도를 漁獲쿼타와 연계하는 政策을 추진하고, 全體割當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어 뉴질랜드 水産政策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協力 및 合作投資 事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表 120〉 年度別 뉴질랜드쿼타 消費實績 단위: %

| | 業種別 | 쿼타量 | 消費量 | 消費率(%) | 出漁隻數 |
|--------------------------|--------|--------|--------|--------|------|
| '81/'82 漁期 | 트 물 | 3,900 | 3,121 | 80 | 2 척 |
| | 오징어채낚기 | 6 척 | 1,859 | - | 6 |
| '82/'83 " | 트 물 | 16,000 | 14,590 | 91 | 5 |
| | 오징어채낚기 | 6 척 | 1,311 | - | 6 |
| '83/'84 " | 트 물 | 20,985 | 12,930 | 62 | 6 |
| | 오징어채낚기 | 6 척 | 1,985 | - | 6 |
| '84/'85 " | 트 물 | 20,540 | 14,886 | 72 | 6 |
| | 오징어채낚기 | 6 척 | 1,066 | - | 6 |
| '85/'86 " | 트 물 | 8,390 | 6,103 | 73 | 5 |
| | 오징어채낚기 | 1,500 | 1,092 | 73 | 6 |
| '86/'87 " ('87. 7 末) | 트 물 | 8,662 | 3,700 | 43 | 4 |
| | 오징어채낚기 | 1,500 | 1,454 | 97 | 6 |

자료: 수산청 원양생산담당실

다. 濠 洲

1983. 11 韓・濠漁業協定の 締結이후 '83/'84 漁期에 최초로 어선 1 척이 조업한 結果 漁場성이 良好하여 '84/'85 漁期에는 8척이 출어하여 2,300%의 漁獲實績을 올렸으나, '85/'86 漁期부터 대부분의 오징어 채낚기 漁船들이 보다 漁場성이 양호한 南西大西洋 오징어 漁場으로 進出함에 따라 濠洲水域 出漁隻數가 감소되어, '86/'87 漁期에는 3척이 操業, 320%를 어획하였다. '87/'88 漁期에도 入漁交涉을 강화하고 입어에 관한 制限 漁撈規定遵守 및 操業秩序 維持 등 韓・濠漁業協定の 원만한 추진과 지속적 漁場確保를 추진할 계획이다.

第 2 節 新 漁 場 開 發

1. 아르헨티나 漁業進出

1986년에 선원 34 명과 가족 24 세대 64 명이 移住하여 企業을 통한 漁業移民이 최초로 실현된 바 있으며 1987년에는 선원 27 명을 추가 이주 시키고 가족이 입주할 주택 25 동을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1985년에 1 차로 구입한 2,600 ㄹ級 트롤漁船 1 척이 1986년에 3航次 操業으로 민대구, 오징어, 황민어 등 5,440 ㄹ을 어획하였다. 1987년에는 450 ㄹ級 채낀기 및 통발 겸업선 1 척을 추가 구입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冷凍工場 1棟도 着工하여 1988년에는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政府出捐金 6 만\$과 事業主體인 韓星企業에서 55 천\$을 投資하여 移住民 定着地인 츄브트州 부에르포마드린市에 교실 7 개 및 부속 건물을 포함한 國民學校 1 동을 건설하여 1986. 3 市當局에 寄贈함으로써 국위선양은 물론 移住民 定着을 위한 市當局의 협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2. 新 漁 場 確 保

198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봉 近海트롤漁場 試驗操業은 1987년까지 延長 실시중(1척)에 있고 소말리아 水域에는 1986년부터 트롤漁船 3척을 투입, 操業中에 있으며 1987년에는 칠레 近海公海漁場과 南水洋의 사우스조지아 近海水域을 개발할 계획이다.

참치漁業으로는 1986년부터 高緯度水域의 肉質이 양호한 高價의 참치 漁獲을 위하여 페루, 칠레 近海 및 하와이 北部漁場과 앙골라, 케이프타운 漁場에 5척이 投入되어 試驗操業을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 스리랑카와 大西洋의 갬베르데 水域에도 試驗操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가나 및 몰디브 水域에 참치漁船의 入漁를 계속 추진중에 있고 印度洋 南部公海漁場의 참치 流刺網操業도 확대 진출할 계획이다.

第 3 節 遠洋漁業 育成 指導

1. 國際競爭力 強化

國際水産機構의 資源管理, 沿岸國의 漁業資源 自國化 政策 등 國際漁業 環境에 대처하여 既存漁場의 안정적 확보와 新漁場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정 漁船勢力의 유지와 漁業經營의 適正規模 設定 등 어업구조의 개편을 도모하는 한편 老朽漁船의 대체를 추진하고, 遠洋出漁資金 및 漁業協力資金 5,155 천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加工品の 開發과 다양화로 附加價値를 높이고 內需基盤을 확대시킬 것이다.

2. 勞使協調과 安全操業

下級船員들의 월 최저 固定給을 170 천원에서 245 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生産手當과 賞與金の 引上支給, 船員子女學費補助 支援을 확대 실시토록 하고 船內居住, 休息, 慰樂시설의 확대 개선 지도는 물론 船員과의 對話機會을 확대하여 선원의 隘路와 苦衷을 해결해 주고 船員家族을 위로 격려토록 할 것이다. 또한 勞使協議會를 활성화하여 船員들의 勤勞條件 改善과 노사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海上事故 발생시에는 선원들의 災害補償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遠洋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해서는 船員 安全操業 教育의 내실화, 船舶檢査 및 安全點檢 철저, 事故報告 및 收拾의 신속 대처, 사고업체에 대한 行政處分 및 出漁資金 支援 排除 등 制裁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第 6 章 水産物 食糧化와 流通 改善

第 1 節 水産物 流通 改善

1. 流通施設의 擴大

水産物의 신속한 販賣와 위생적인 處理 및 系統出荷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677 백만원으로 委販場 4,886 ㎡를 시설할 계획이며, 내수면 어류의 유통개선을 위해 담수어 직매장 1 개소와 가공시설 1 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2. 流通機能 強化

內陸地系統出荷를 확대(1986 : 117 천% → 1987 : 137 천%)하는 한편 학교, 병원 등 大量 需要處를 계속 개발하여 直去來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系統出荷 低利資金 20 억원을 지원하고 出荷組合에 대한 缺損補填과 어민 直去來 獎勵金을 지급하는 등 系統出荷 및 直出荷 與件을 造成할 것이다.

產地水協 委販施設의 擴充, 委販裝備의 機械化, 魚代金 支給 電算化, 漁民福祉施設 擴充과 仲買人 買取力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委販機能을 강화함으로써 어획물의 신속한 처리와 어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市場競爭力을 강화할 것이다.

養殖水産物の産地去來制度는 지난해에 이어 김·미역·굴을 대상으로 養殖위주 生産組合중 自營組合을 追加, 10 개 組合의 委販手數料를 0.5 % 포인트 인하 조치하였으며 全南地域 김生産 4 개조합을 共同收集販賣事業 示範組合으로 選定하여 手數料 收入의 20 %를 어촌계에 환원하고 김·미역 위주 조합중 11 개 조합에 대하여 手數料 收入의 일부를 어촌계에 支授, 漁場管理 및 共同事業에 사용하는 등 환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1988 년에 전 수산물에 대한 委販手數料를 引下 調整하는 方向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어리 食用率이 20 ~ 30 %에 불과하여 資源管理面에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1987 년에 우선 馬山, 忠武, 三千浦, 麗水, 九龍浦港을 示範地域으로 選定, 大型旋網漁船에서 어획된 정어리를 통조림 工場에 直供給할 수 있도록 정어리 委販制度를 개선하여 鮮度維持로 食用率을 높이고 商品性을 향상하여 輸出競爭力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어획물의 품질향상과 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수산물의 取扱管理要領을 委販從事者 및 어민에게 계속 지도 계몽하는 한편 過量入箱과 不良容器流通을 根絶하여 委販場 및 都賣市場에서의 公正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流通能率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第 2 節 水産物 價格安定

1. 政府 備蓄事業

盛漁期 大量 生産時의 産地價格 下落을 防止하고 閑漁期에 價格上昇을 抑制하기 위하여 農安基金 83 억원을 투입하여 간디역 2,000 %, 전오징어 450 % (60 萬觔), 전멸치 300 % (10 萬包) 등 總 2,750 %을 收買 備蓄한

계획이며 南西大西洋産 오징어 반입에 따른 沿岸産 오징어가격 安定을 위
해 45 억원을 投入 냉동오징어 3,000 %을 追加 備蓄토록 하였다.

〈表 121〉 政府 備蓄 事業 단위: %

| | '86 | '87 | 對 比 (%) |
|-----------|---------------------|----------------------|--------------|
| 計 | 2,260 (4,181백만원) | 5,750 (12,764백만원) | 254 (305) |
| 김 | 200 | - | - |
| 간 미 역 | 2,000 | 2,000 | 100 |
| 건 오 징 어 | - | 450 | - |
| 냉 동 오 징 어 | - | 3,000 | - |
| 건 면 치 | 60 | 300 | 500 |

자료: 수산청 이경과

2. 價格支持事業 (民間價格安定)

農安基金 512 억원을 지원하여 水協系統 組織을 통한 生産者 團體 出荷 調節事業으로 33 천%, 冷凍保管 販賣事業으로 104 천%, 통조림, 연제품 加工事業으로 37 천%, 輸出用 原料收買事業으로 38 천% 計 212 천%을 收買할 計劃이며 魚種別로는 고등어(12 천%), 명태(60 천%), 정어리(25 천%), 쥐치(22 천%), 오징어(12 천%), 其他 갈치, 조기, 가자미, 삼치 등(81 천%)을 수매하여 漁民受取價格을 제고할 것이다.

〈表 122〉 民間 價格 安定 事業 단위: 천%, 백만원

| | '86 | '87 | 對 比 (%) |
|----------|--------|--------|---------|
| 計 | 177 | 212 | 120.1 |
| 水協 出荷 調節 | 31 | 33 | 103.5 |
| 冷 凍 保 管 | 85 | 104 | 121.8 |
| 加 工 販 賣 | 22 | 37 | 173.6 |
| 輸 出 促 進 | 39 | 38 | 99.6 |
| 農安基金 支 援 | 49,450 | 51,150 | 103.4 |

자료: 수산청 어경과

第 3 節 水産物の食糧化

1. 加工製品 生産増大

水産物は動物性蛋白質の主供給源으로서 1985년 1인 1일당動物性蛋白質總攝取量 28.51g 중 57.7%인 16.44g을 공급하고 있으나 소비형태는鮮魚위주의慣習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소득 수준 향상에 의한 식생활관습의 변화로 반찬개념에서營養위주의主食으로,單純加工品에서高次加工品化 및 即席 便利 食品으로 移行될 것이다.

더욱이 수산물에는核酸과 不飽和 脂肪酸이 다량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수산물의 특성인 부패성을 극복한 加工製品을 일반 소비자에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加工品 生産増大가 더욱 요망되어 1987년에는 加工施設 擴充 및 改補修에 2,401백만원을 지원하고 煉製品, 통조림, 冷凍品, 調味加工品等 加工業體에 대한 運營資金 15,860백만원을 지원하여 750천%의 加工品을 生産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加工用 原料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原料鮮度維持 및 原料供給의 系列化를 기하고 煉製品 原料의 船上 煉肉의 生産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둘째, 製品生産 指導強化 및 自體 試驗研究室 확보를 유도하고 先進 品質管理 技法普及, 包裝材質의 高級化 및 色相, 디자인을 개발, 加工品の 品質向上을 기할 것이다.

셋째, 加工業體의 환경위생 개선지도와 外國人의 嗜好에 맞는 골스튜통조림, 魚類燻製品 등의 食品開發과 참치햄, 참치통조림, 고급어묵류, 맛김 등의 유통력 식품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 製品의 消費底邊 擴大

水産物의 消費底邊 확대를 위하여 T.V, 라디오, 新聞, 雜誌 등 각종 言論媒體를 최대한 活用하여 정어리, 고등어, 미조개, 미역, 김 등 수산물은 成人病 예방은 물론 無公害 健康食品임을 홍보하고 서울을 비롯한 지방 7개도시에서 동부른 생선, 다회성 수산물, 민물고기, 어묵 등에 대한 새로운 料理 講習 및 試食會를 개최(15회)하고 리후렛과 맘플렛을 製作하여 關聯機關, 團體, 業體 및 消費者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料理集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도시의 일반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既設置 運營하고 있는 통조림, 미조개 등의 常設直賣場 이외에 미역, 민물고기 直賣場도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第 4 節 水産物 檢査

水産物 輸出의 伸張 趨勢에 따라 1987년 水産物 檢査目標量을 25만톤으로 정하고 이의 檢査方針을 檢査判定의 標準化, 檢査員의 資質向上, 分析檢査의 擴大, 製品生産指導의 강화에 두고

첫째, 檢査對象品중 冷凍品과 주요 10개 품종에 대하여 주 생산시기에 檢査標準品 査定會를 개최하고 적당한 檢査標準을 설정하여 檢査員間의 官能檢査 判定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검사의 公正력을 높이고 加工業界의 참여로 出品된 國內外 試料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業體間의 경쟁에 의한 優秀製品 生産을 誘導할 것이다.

둘째, 重金屬, 細菌, 理化學, 添加物, 水質에 대한 자체 분석교육과 冷凍品, 통조림品, 魚肉煉製品, 寒天에 대한 실기교육 및 水産技術訓練所 委託 專門教育으로 檢査員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檢査의 信賴度와 食品의

安全度を 提高하고

세째, 先進國 수준의 檢査技法 導入과 分析檢査 裝備의 現代化로 검사의 과학화를 기하며

네째, 製品 生産指導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技術情報 및 國內外 水産物市場動向情報 등을 수시 業界에 제공함으로써 新製品 開發과 加工技術 및 機器施設 改善을 유도하고 加工工場 衛生管理點檢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이다.

다섯째, 위탁검사원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을 年1회 이상 실시하고 委託檢査員 候補者教育(마른살 오징어, 마른멸치) 및 資格銓衡을 실시하여 委託檢査 業務의 원활을 기할 것이며

여섯째, 關聯業界, 有關機關, 學界로 구성되어 있는 支所單位 檢査行政 諮問懇談會를 年2회 以上 운영하여 검사제도의 問題點 등을 發掘, 改善 發展시켜 나갈 것이다.

第 7 章 漁業基盤施設의 擴充

第 1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1. 漁船建造

가. 老朽漁船 代替

8,350 백만원을 투입 3,500 %의 老朽漁船을 대체할 계획으로 다수어민이 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老朽漁船을 40 % 미만으로 代替建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資源管理上 減隻對象漁船인 鮫鱈網, 旋網漁船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船質改良

耐久年數가 길어 壽命이 半永久的이고 補修 및 維持管理費가 현저히 절감되는 合成樹脂(FRP) 漁船을 확대하기 위하여 1987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500 %이 많은 1,000 %을 별도 확보하여 小型漁船 船質改良建造 희망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당 건조비도 木·鋼船의 210 만원보다 100만원이 많은 310 만원으로 상승하여 事業費 支援을 現實化하였다.

아울러 韓國漁船協會로 하여금 어선의 性能向上 및 試驗研究에 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현재 FRP 標準漁船 23 종을 개발 고시하였으며, 매년 2~3 종을 개발하여 船質改良事業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 計劃造船

國民投資基金에 의한 計劃造船事業은 1977 ~ 1986년까지 210,937백만 원을 투입 772척 84.576%을 建造 支援한데 이어 1987년에는 33,400백만 원을 투입, 60척 7,500%(近海漁船 50척 3,500%, 遠洋漁船 10척 4,000%)을 建造할 計劃이다.

事業對象漁船은 40톤 이상으로 近海漁船은 老朽船代替와 被害復舊에 한해 지원하며 어획강도가 높은 大型브물, 大型機船底引網, 大型旋網, 近海鮫鱈網, 近海채남기漁船 등은 資源管理上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動力 및 裝備 改良

안전조업과 조업능을 향상을 위하여 動力改良사업에 1,760백만 원을 투입, 陸上用 機關 등 低效率 및 老朽機關 11,000HP을 燃料節約型 船舶用 디

<表 123>

漁撈施設 事業計劃

단위: 백만원

| | 物 量 | 事 業 費 | | | | 單 價 (천원) |
|---------|----------|--------|-------|--------|-------|-------------|
| | | 計 | 補 助 | 融 資 | 自 擔 | |
| 計 | | 44,038 | 2,022 | 34,936 | 7,080 | |
| 老朽漁船代替 | 3,500% | 8,350 | 1,670 | 5,010 | 1,670 | |
| • FRP 船 | 1,000 | 3,100 | 620 | 1,860 | 620 | 3,100 |
| • 木・鋼 船 | 2,500 | 5,250 | 1,050 | 3,150 | 1,050 | 2,100 |
| 計 劃 造 船 | 7,500 | 33,400 | | 28,500 | 4,900 | 4,453 |
| 動 力 改 良 | 11,000HP | 1,760 | 352 | 1,056 | 352 | 160 |
| 裝 備 改 良 | 200臺 | 528 | - | 370 | 158 | |
| • 無 電 機 | 100 | 100 | - | 70 | 30 | 1,000 |
| • 魚 探 機 | 40 | 160 | - | 112 | 48 | 4,000 |
| • 례 이 다 | 40 | 160 | - | 112 | 48 | 4,000 |
| • 로 랑 | 60 | 108 | - | 76 | 32 | 1,800 |

자료: 수산청 이천과

계機關으로 대체하고, 多數 漁民에게 고무 惠澤이 가도록 200 HP 이하의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政府豫算事業으로 100 백만원을 투입 老朽無電氣 100대를 대체하고 財政施設回收資金 428 백만원을 투입하여 魚探機, 레이다, 로망 등 100대를 개량할 계획이다.

3. 漁船檢査業務의 效率性

漁船檢査員의 職務教育制度를 일반적인 基礎檢査教育에서 分野別 專門化教育으로 개선하고, 정기적인 海外研修教育 실시와 檢査裝備補強 등으로 과학적이고 신속한 檢査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漁船 檢査員資格基準 등에 관한 規則을 개정하여 該當分野 資格證을 소지토록 하는 등 檢査員의 資格을 강화하여 檢査員의 專門性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1987. 1. 24 漁船法施行令을 개정하여 지정된 검사일에 檢査를 받도록 되어 있는 定期檢査 및 中間檢査를 漁民의 편의를 위하여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現行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은 大型漁船의 設備基準에 가까워 小型漁船의 적용에는 부적합한 규정이 많으므로 小型漁船의 적용에도 적합하도록 완화 조정하고 각 설비별로 구분하여 어선 선체구조 규칙, 어선기판·전기설비 규칙, 어선의 복원성 및 만재흡수선 규칙, 어선설비 규칙의 4개 부령으로 분리 제정하여 漁民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檢査業務執行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4. 漁船法令 改正

가. 漁船法 施行令

漁船法 改正(1986. 5. 12 法律 第 3829 號)에 따라 同法施行令을 1987. 1. 24

大統領令 제 12066 호로 개정 시행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船舶國籍證書 또는 船籍證書의 定期檢認을 4 년마다 漁船定期檢査와 같이 시행 (2) 漁船製造檢査 對象을 “總噸數 50 % 이상”에서 “길이 24 m 이상”으로 변경 (3) 道와 市·郡으로 2 원화 되어있는 漁船登錄 費務를 1 원화하여 市·郡에서 專擔 (4) 聽聞 節次와 方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나. 漁船法 施行規則 改正

漁船法 및 同施行令의 개정과 관련하여 同規則을 農林水産部令 第979 號로 개정하여 1987. 8. 20 부터 施行하였다. 主要 改正內容은

- (1) 어선의 규모중 動力, 無動力 漁船의 定義를 再 定立
- (2) 船舶國籍證書 및 船籍證書의 定期檢認을 위한 申請節次 규정
- (3) 漁船檢査의 準備事項을 신설
- (4) 어선의 復元性, 벨러스트 등의 積載에 관한 資料提供 및 어선에 同 資料의 備置義務 신설 등이다.

第 2 節 漁港施設의 擴充

1. 漁港 開發

1·3 種漁港 25 개항에 355 억원을 투자하여 防波堤 등 3,415 m 시설하고 漁港機能提高를 위하여 15 개항에 대한 施設補修, 補強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2 種漁港과 小規模漁港 開發은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2 種漁港 42 개항에 60 억원을 투자하여 防波堤 등 1,616 m를 시설하고 小規模漁港 145 개항에 66 억원을 투자하여 船着場 등 4,240 m를 시설할 계획이다.

〈表 124〉

漁港施設計劃

단위: m, 억원

| | 投資港數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計 | 國 費 | 地 方 費 |
| 計 | 212 | 9,271 | 481 | 418 | 63 |
| 第 1·3 種漁港 | 25 | 3,415 | 355 | 355 | — |
| 第 2 種漁港 | 42 | 1,616 | 60 | 30 | 30 |
| 小規模港 | 145 | 4,240 | 66 | 33 | 33 |

자료: 수산청 어항과

2. 漁港被害 最小化 對策

태풍 및 폭풍으로 인한 어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1·3種漁港은 被害尤甚港을 우선하여 各港別 設計波高를 港灣專門技術團에 의뢰하여 정밀 再檢討 하고 同 波高를 基礎로 安全度를 진단하여 補強計劃을 수립, 연차적으로 노후취약도에 따라 安全斷面으로 보강 추진하고 2種漁港은 시도에서 조사비를 확보, 港灣專門技術團의 정밀검토를 거쳐 港別設計波高를 추정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고, 小規模港을 포함한 당해 항의 피해빈도 및 尤甚度 등을 감안, 기존시설에 대한 安全度點檢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토록 지도할 것이다. 특히 1987년부터는 漁港施設豫算으로 老朽, 脆弱施設의 補強工事도 추진 가능토록 하였으며, 각 시도(군)의 關係技術公務員에 대한 施工技術指導를 위하여 漁港施設工事 施工指針書를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第 8 章 漁民支援 強化

第 1 節 農漁家 負債輕減對策

1986 年の 農漁村 綜合對策의 一環으로 1987. 3. 16 農漁家負債輕減對策을 樹立 추진하고 있다.

1. 私債代替資金 支援

농어가의 高利私債를 低利의 制度金融으로 대체함으로써 金利負擔을 輕減토록 하기 위하여 低利資金 5,000 억원(연리 8%)과 特別相互金融資金 5,000 억원(연리 14.5%)을 2 年据置 3 年償還으로, 低利資金은 가구당 100 만원까지, 特別相互金融資金은 低利資金을 포함 200 만원까지 지원한다.

2. 農水産關聯資金 金利引下

農水産開發資金 및 漁船建造資金의 貸出金利를 연리 10%에서 8%로 인하하고 計劃造船중 沿岸海漁船 지원자금의 금리를 연리 11%에서 8%로 인하하였다.

3. 零細農漁家 中長期 資金의 低利資金 代替支援

영농규모 0.5 ha 이하에 해당하는 漁家(漁船 非使用漁家, 無動力船漁家, 2%以下 動力船 使用漁家, 小規模 增養殖漁家)에 대하여 지원한 中長期 施設資金인 漁船建造 및 水産開發資金 金利 10%를 3%로, 農漁民後繼者 育成資金 金利 5%를 3%로 인하 적용토록 하였고, 용자기간도 당초 償還 期日에 불구하고 3년 据置 7년 償還으로 연장하였다.

4. 小 入殖資金 利子 代支給

1983~1984년에 지원된 小入殖資金중 이미 延期 措置된 全資金에 대하여 1985. 1. 1 이후 발생한 이자는 畜産振興基金에서 代支給한다.

5. 延滯金利 引下調整

營漁資金의 延滯金利를 年利 17%에서 15%로, 相互金融資金 延滯金利를 年利 20%에서 18%로 인하하였다.

위와 같은 農漁家負債輕減對策 실시로 어민들의 연간 負擔輕減額은 약 270 억원으로 推算된다.

第 2 節 水産資金支援

1. 營漁資金

1987년 지원계획은 3,500 억원으로 沿岸海漁業分野에 3,000 억원, 遠洋 漁業分野에 500 억원을 供給할 계획이다.

漁業經營費調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島嶼僻地 漁民에 限하여 所要資金 全額(其他漁民 80%)을 支援하였으나 1987년에는 島嶼僻地 漁民은 물론 低所得階層漁業인 共同漁業 및 申告漁業者에게도 全額을 支援할 계획이며, 生産所要年數가 1년이 넘는 一部漁業 또는 業種에는 支援期間도 2년으로 延長 支援할 수 있도록 營漁資金運用制度를 改定하였다('87.4).

또한 擔保提供能力이 부족한 어민을 위하여 1인당 信用貸出限度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87.1).

(表 125) 營 漁 資 金 供 給 計 劃 단위: 억원

| | | | '86 | '87 | 增△減 |
|----------|----------|----------|--------|--------|-------|
| 總 所 要 額 | | | 6,311 | 6,757 | 446 |
| 供 給 額 | | | 3,180 | 3,500 | 320 |
| (供給率: %) | | | (50.4) | (51.8) | - |
| 調 達 | 財政資金 | | 381 | 452 | 81 |
| | 韓銀借入 | | 1,157 | 1,519 | 362 |
| | 水協資金 | | 1,642 | 1,519 | △ 123 |
| 運 近 海 | 所 要 額 | | 4,811 | 4,980 | 169 |
| | 供 給 額 | | 2,710 | 3,000 | 290 |
| | | (供給率: %) | (56.3) | (60.2) | - |
| 用 速 洋 | 所 要 額 | | 1,500 | 1,777 | 277 |
| | 供 給 額 | | 470 | 500 | - |
| | (供給率: %) | | (31.3) | (28.1) | → |

자료: 수협중앙회

2. 水産振興基金 및 水産振興 財政資金

水産振興基金 3,964 억만원과 水産振興財政資金 9,000 억만원을 魚類蓄養, 內水面漁業開發 및 水産物 食糧化를 위하여 支援할 계획이다.

〈表 126〉 水産振興基金 運用計劃

단위: 백만원

| | '86 | | '87 | | 増△減 | 内 容 |
|-----------|-----|-------|-----|-------|------|------------------|
| | 事業量 | 金額 | 事業量 | 金額 | | |
| 計 | | 3,334 | | 3,966 | 632 | |
| 沿 近 海 漁 業 | 2 | 1,500 | 2 | 1,800 | 300 | • 魚類蕃養: 800 |
| 遠 洋 漁 業 | 1 | 200 | 1 | 300 | 100 | • 内水面漁業開發: 1,000 |
| 水産物流通製造 | 1 | 1,400 | 1 | 1,710 | 310 | • 入漁料: 300 |
| 次 期 移 越 | - | 234 | - | 156 | △ 78 | • 水産物食糧化: 1,710 |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表 127〉 水産振興財政資金調達 및 運用計劃

단위: 백만원

| | | '86 | '87 | 増 △ 減 |
|-----|-----------|-------|-------|-------|
| 調 達 | 融 資 金 回 收 | 5,000 | 7,000 | 2,000 |
| | 新 規 融 資 金 | 2,000 | 2,000 | - |
| 計 | | 7,000 | 9,000 | 2,000 |
| 運 用 | 沿 近 海 漁 業 | 1,360 | 1,400 | 40 |
| | 遠 洋 漁 業 | 1,250 | 1,250 | - |
| | 流 通 · 製 造 | 4,390 | 6,350 | 1,960 |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3. 農漁村地域 開發基金

農漁村綜合對策의 一環으로 造成된 農漁村地域 開發基金을 1987년부터 經濟性 漁船普及 등 事業에 支援할 計劃이다.

經濟性 漁船普及事業은 船令 16년(鋼船 21년) 이상의 老朽漁船을 40%未滿의 FRP船으로 代替코자 하는 漁民을 對象으로 하며, 政府豫算事業과 並行 推進하게 된다.

低効率機關 代替事業은 沿近海 低効率機關 및 老朽機關을 500HP以下の 國産 船舶用 디젤機關으로 代替코자 하는 漁民에게 지원되며 政府豫算事業은 금년가지만 지원되고 1988년 부터는 本 基金으로 지원된다.

그 외에 水産物 食糧化 事業은 落島, 僻地 및 郡 以下 中小都市 所在

水協 및 漁村契 등의 冷凍, 燻肉 및 海藻加工事業에 지원되며 水産物 加工處理施設은 低溫施設을 擴充하고자 하는 水協에 지원된다.

表 128 農漁村地域 開發基金 支援計劃

단위: 백만원

| | 事業量 | 事業費 | | | 金利 (%) | 融資年數 | |
|----------|----------|-------|-------|-------|-----------|------|----|
| | | 計 | 基金 | 自資 | | 据置 | 償還 |
| 計 | | 9,680 | 7,628 | 2,052 | | | |
| 經濟性 漁船普及 | 1,000 隻 | 3,100 | 2,480 | 620 | 5 | 3 | 10 |
| 低効率 機關代替 | 11,000 台 | 1,760 | 1,408 | 352 | 5 | 1 | 4 |
| 水産物 食糧化 | 8 개소 | 3,100 | 2,480 | 620 | 8 | 2 | 5 |
| 水産物 處理加工 | 3 개소 | 1,720 | 1,260 | 460 | 8 | 2 | 5 |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4. 水協自體資金 造成 및 運用

가. 貯蓄增大

水産資金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水協의 1987 년 저축목표를 624,177 백만원으로 정하고 一般受信店舖 7 개소('86 까지 106 개소), 相互金融受信店舖 7 개소('86 까지 132 개소)와 온라인店舖 34 개소('86 까지 47 개소)를 증설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 水産資金 運用

1987 년 수산자금 규모는 1986 년말 잔액 대비 127,702 백만원이 증가한 927,424 백만원으로, 80.8 %인 749,300 백만원을 貸出金으로 運用할 계획이다.

〈表 129〉 貯蓄推進目標

단위: 백만원

| | '86 | '87 | 增△減 |
|-------|---------|---------|--------|
| 計 | 528,369 | 624,177 | 95,808 |
| 漁村貯蓄 | 199,565 | 235,373 | 35,808 |
| ・相互金融 | 110,340 | 130,340 | 20,000 |
| ・出資 | 42,699 | 49,813 | 7,114 |
| ・共濟 | 46,526 | 220 | 8,694 |
| 一般受信 | 328,804 | 388,804 | 60,000 |
| ・中央會 | 165,128 | 200,128 | 35,000 |
| ・組合 | 163,676 | 188,676 | 25,000 |

자료: 수협중앙회

〈表 130〉 水協資金需給計劃

단위: 백만원

| 調 | | 達 | 運 | | 用 |
|--------|---------|---------|---------|---|---------|
| 科 | 目 | 金額 | 科 | 目 | 金額 |
| 計 | | 927,424 | 計 | | 927,424 |
| 預受金 | 218,399 | 現金・預置金 | 29,288 | | |
| ・一般 | 200,100 | 有價證券 | 39,881 | | |
| ・相互金融 | 18,299 | 貸出金 | 749,300 | | |
| 會員換決濟 | 71,360 | ・信用 | 731,603 | | |
| 借入金 | 489,120 | ・共濟 | 11,021 | | |
| ・金融 | 163,179 | ・相互 | 1,644 | | |
| ・財政 | 323,815 | ・借款 | 5,032 | | |
| ・借款 | 2,126 | 經濟事業債權 | 30,715 | | |
| 經濟事業債務 | 16,578 | 在庫資產 | 8,743 | | |
| 充當金 | 25,212 | 業務用固定資產 | 55,837 | | |
| 共濟積立金 | 56,522 | 其他雜資產 | 13,660 | | |
| 雜負債 | 18,636 | | | | |
| 資本金 | 31,597 | | | | |

자료: 수협중앙회

第 3 節 低所得 漁村 育成

漁村契증에서 所得水準이 전국어가 평균소득의 80%이하로서 協業事業 遂行能力이 있는 31개 低所得 어촌계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983백 단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들 漁村에 대하여는 國立水産振興院의 漁村指導 員을 상주케 하여 生産 및 經營指導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表 131〉 低所得 漁村 選定 단위: 개소

| 計 | 京 畿 | 江 原 | 忠 南 | 全 北 | 全 南 | 慶 北 | 慶 南 | 濟 州 |
|----|-----|-----|-----|-----|-----|-----|-----|-----|
| 31 | 2 | 9 | 1 | 1 | 5 | 2 | 6 | 5 |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表 132〉 低所得 漁村 支援事業計劃 단위: 백만원

| 事 業 別 | 事業量 | 事 業 費 | | | |
|--------------|-------|-------|-----|-----|-----|
| | | 計 | 補 助 | 融 資 | 自 擔 |
| 計 | | 983 | 892 | 36 | 55 |
| 生産基盤事業 | | 803 | 785 | 8 | 10 |
| · 人工魚礁 | 140ha | 195 | 195 | ~ | ~ |
| · 岩盤爆破 | 50坏 | 4 | 1 | 2 | 1 |
| · 魚船引揚機 | 1臺 | 2 | 2 | ~ | ~ |
| · 共同作業場 | 1棟 | 8 | 4 | ~ | 4 |
| · 防波堤, 船着場 | 548 m | 594 | 583 | 6 | 5 |
| 所得増大事業 | | 103 | 47 | 20 | 36 |
| · 전복, 우렁쉥이 등 | 63ha | 103 | 47 | 20 | 36 |
| 環境改善事業 | | 77 | 60 | 8 | 9 |
| · 漁場進入路 | 350 m | 8 | 5 | ~ | 3 |
| · 漁村契會館 | 2棟 | 20 | 7 | 8 | 5 |
| · 마을안길 등 | 4件 | 49 | 48 | ~ | 1 |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第 4 節 漁村 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 育成

1. 漁村 새마을 運動

漁村새마을事業으로 정부 및 수협조직을 통하여 生産基盤事業에 7,767 백만원, 所得增大事業에 2,534 백만원, 漁村副業事業에 1,175 백만원, 精神啓發事業에 1,623 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88 서울올림픽경기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올림픽새마을운동”으로 수산공직자 및 어민 7,000명에게 文化國民의 基本德目과 資質涵養을 위한 국민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새漁民誌” “漁船誌” “遠洋漁業誌” 등 각종 간행물을 활용하여 올림픽을 홍보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國土景觀 造成” 및 “秩序・親切・清潔運動”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表 133〉

漁村 새 마을 事業 計劃

단위 : 백만원

| 事業名 | '86 | | '87 | | 備考 |
|----------|--------|--------|-------|--------|---------|
| | 物量 | 金額 | 物量 | 金額 | |
| 計 | | 10,217 | | 13,099 | |
| 生産基盤事業 | | 4,749 | | 7,767 | ※財源別 |
| ・小規模漁港開發 | 4,419m | 4,260 | 4,628 | 7,140 | ・86實績 |
| ・附帶施設 | 27건 | 489 | 51 | 627 | 補助6,814 |
| 所得增大事業 | | 3,391 | | 2,543 | 融資1,638 |
| ・増養殖事業 | 666ha | 2,810 | 1,256 | 1,953 | 自擔1,765 |
| ・內水面開發 | 34백만마리 | 581 | 34 | 581 | ・87計劃 |
| 漁村副業事業 | | 637 | | 1,175 | 補助9,405 |
| ・共同作業場 | 11개소 | 181 | 10 | 190 | 融資2,434 |
| ・多目的船 | 15척 | 105 | 28 | 317 | 自擔1,260 |
| ・깃집및休憩所 | —개소 | — | 5 | 128 | |
| ・畜産副業其他 | 26건 | 351 | 52 | 540 | |
| 精神啓發事業 | | 1,440 | | 1,623 | |
| ・漁民後繼者教育 | 1,002명 | 57 | 850 | 65 | |
| ・漁村技術指導 | 1,513契 | 203 | 1,518 | 286 | |
| ・對漁民弘報 | 66건 | 1,180 | 60 | 1,272 | |

자료 : 수산청 협동조합과

2. 漁民後繼者 育成

漁民後繼者 816 명을 선발하여 育成資金 6,888 백만원용 지원할 계획이다.

漁民後繼者 育成事業費를 擴大 支援하기 위하여 漁船漁業 從事者와 蓄養漁業 從事者에게는 支援額을 8 백만원에서 10 백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融資期間을 3 년據置 4 년分割 償還에서 3 년據置 7 년分割 償還으로 연장하였다.

이들 新規漁民後繼者에게는 새마을運動中央本部에서 정신교육 3日과 國立水産技術訓練所에서 전문기술교육 6 일씩을 실시하였으며, 1987년에 처음으로 기존 어민후계자 가운데 희망자 200 명에 대하여 경영교육을 1 주 간씩 실시할 계획이다.

〈表 134〉 漁民後繼者 育成支援

단위: 명, 백만원

| | 計 | | | '81~'86 | | | '87 | | |
|-------|-------|-----|--------|---------|-----|--------|-----|-----|-------|
| | 人員 | % | 金額 | 人員 | % | 金額 | 人員 | % | 金額 |
| 計 | 3,747 | 100 | 27,824 | 2,931 | 100 | 20,936 | 816 | 100 | 6,888 |
| 漁船漁業 | 2,249 | 60 | 17,610 | 1,688 | 58 | 12,454 | 561 | 69 | 5,556 |
| 增養殖漁業 | 1,461 | 39 | 9,994 | 1,213 | 41 | 8,303 | 248 | 30 | 1,691 |
| 水産物加工 | 37 | 1 | 220 | 30 | 1 | 179 | 7 | 1 | 41 |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表 135〉 漁民後繼者 構成

단위: 명

| 計 | 學歷別 | | 年 齡 別 | | | 性 別 | |
|--------|-----|------|-------|-------|-------|------|-----|
| | 水産系 | 一般系 | 25歲以下 | 30歲以下 | 35歲以下 | 男 | 女 |
| 816 | 26 | 790 | 82 | 345 | 389 | 806 | 10 |
| (100%) | (3) | (97) | (10) | (42) | (48) | (99) | (1) |

자료: 수산청 협동조합과

第 5 節 災 害 補 償

1. 漁船 및 船員共濟 制度改善

漁船共濟의 경우 損害率 5%미만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는 共濟金 支給을 하지 않던 것을 2%미만 共濟事故로 擴大하여 補償範圍를 넓히고, 3년이상 5년미만 무사고 어선에 적용하는 共濟料 割引率 5%를 6~7%로 인상하고 小型漁船 위주의 共濟料 引下와 2천만원이하의 契約高에 대하여 共濟料 分納制를 실시토록 추진하고 있다.

1986.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船員特殊共濟의 加入率을 높이기 위하여 船員 普通共濟에 加入하고 있는 30%이상 漁船員들을 船員特殊共濟로 轉換 加入토록 유도하고 船員普通共濟의 共濟料率을 契約高基準에서 屯級別料率로 바뀌 적용함으로써 30%미만 小型漁船員의 共濟料를 1987. 6. 1부터 引下하였다.

(表 136)

漁船 및 船員共濟加入計劃

단위 : 백만원

| | | '86 | '87 | '87/'86 (%) |
|--------|---------|---------|---------|-------------|
| 漁 船 | 加入漁船(隻) | 6,806 | 6,500 | 95.5 |
| | 契 約 高 | 288,186 | 316,300 | 109.8 |
| | 共 濟 料 | 6,292 | 5,637 | 89.6 |
| 船 員 | 加入人員(名) | 46,726 | 45,500 | 97.4 |
| | 契 約 高 | 344,748 | 295,200 | 85.6 |
| | 共 濟 料 | 3,226 | 4,116 | 127.6 |
| | (國庫補助) | (414) | (780) | (188.4) |

자료 : 수산청 협동조합과

2. 養殖共濟制度 導入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서 실시하고 있는 굴 垂下式 養殖漁業의 共濟試驗 事業設計研究는 1986 년에 실시한 共濟成立可能性 檢討結果에 따라 1987~1988 년까지 共濟對象海域과 共濟加入方法, 共濟引受方式과 範圍, 共濟料率算定, 組織과 運營 및 責任分擔 등 구체적인 試驗事業實施를 위한 기틀을 구축할 것이며 그 結果에 따라 試驗事業을 실시한 후 本事業 實施方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3. 災害復舊 支援 및 被害賠償

가. 災害復舊

颱風, 暴風, 海盜, 豪雨 등 自然災害로 인한 피해는 風水害對策法에 의거 復舊支援하며 被害種別 復舊支援率 및 被害額 算定基準에 따라 支援額을 確定 執行한다.

1987. 7. 15 ~ 7. 17 颱風 “셀마”의 來襲과 7. 18 ~ 7. 27 忠南, 忠北, 江原 등 中部地方을 중심으로 한 집중강우로 많은 인명 및 財産(漁船, 漁港 및 增養殖施設 등) 被害가 발생하여 現行 災害復舊 基準을 그대로 適用할 경우 復舊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政府에서는 颱風 “셀마” 被害 復舊 特別對策을 마련, 水産行政力을 總集中하여 被害의 迅速한 復舊와 零細漁民의 負擔輕減에 注力하고 있으며 그 內譯은 아래와 같다.

(1) 支援方向

- 罹災民 救護의 擴大
- 被害의 迅速復舊와 罹災民 負擔輕減
- 公共施設의 恒久復舊 實施

(2) 支援內譯

- 死亡・失蹤者 遺家族 慰勞金 引上

- 慰勞金(具當) : 170 萬圓 → 280 萬圓
- 葬儀費(〃) : 11 萬圓 → 20 萬圓
- 生計困難한 死亡・失蹤者의 遺族 生計 補助
 - 200 ~ 300 萬圓 支援
- 被害漁民의 生計安定을 위한 間接支援의 강화
 - 船舶 全・半破 罹災民 및 50%以上 被害를 입은 零細漁家에 대한 長期救護 期間의 延長 : 1 ~ 3 개월 → 1 ~ 6 개월
 - 一段階로 3 개월까지 우선 조치후 추가 조사하여 반영하고 等級은 生計困難程度에 따라 調整
 - 被害地域 漁民에 대한 無利子 糧穀貸與 擴大
 - 6 개월분까지 → 1 년분까지
(償還期間) (1 年) → (2 年)
 - 就勞事業 擴大 : 50 億圓 → 100 億圓
 - 被害復舊 漁船에 대한 地方稅 減免 및 被害復舊施設에 대한 地方稅 徵收 猶豫
 - 罹災民 中高等 學生에 대한 授業料 2 期分 免除
 - 1.5 ha 未滿, 50%以上 被害農家 特別 生計補助金 支給 (이에 相應하는 漁家包含)
 - 戶當 20 萬圓 ~ 40 萬圓
 - 50%以上 被害漁家에 대한 營漁資金 利子 減免擴大
 - 償還猶豫 1 年 → 2 年
 - 利子減免 : 1 年 → 2 年
- 生活基盤 復舊를 위한 支援強化
 - 稚魚, 種貝 購入代 國庫支援比率 上向調整
 - 國庫 60%, 自擔 40% → 國庫 70%, 自擔 30%
 - 小型漁船(5%未滿) 支援比率 上向調整
 - 國庫 20%, 融資 60%, 自擔 20% → 國庫 30%, 融資

60%, 自擔 10%

- 被害復舊에 따른 自負擔分 融資支援 및 長期分割 償還(3~5年)
- 船舶被害 零細漁民이 中古船을 購入할 경우에도 船舶建造時와 동일하게 支援
- 被害農漁家에 대한 特別生産資金 支援(900 億원)
 - 30%以上 被害農漁民 對象(2 年据置 3 年償還)

〈表 137〉 颱風“섶마” 및 豪雨被害 復舊計劃

단위: 백만원

| | 被 害 | | 復 舊 計 劃 | | | |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 | 計 | 國 庫 | 融 資 | 地 方 費 自 擔 | |
| 計 | | 28,132 | | 44,180 | 12,512 | 19,292 | 15 | 12,361 |
| 漁 船 | 4,821 隻 | 11,215 | 4,507 | 24,013 | 3,918 | 13,559 | 5 | 6,531 |
| 增 養 殖 | 1,698 件 | 9,813 | 1,698 | 12,572 | 7,075 | 1,176 | 10 | 4,311 |
| 漁 網 | 763 件 | 7,104 | 752 | 7,595 | 1,519 | 4,557 | - | 1,519 |

자료: 수산청 시설과

註: 被害物量과 復舊物量의 差는 自力復舊 또는 復舊 拋棄分임.

〈表 138〉 被 害 額 算 定 基 準

단위: 千원

| | 基 準 | 單 價 |
|-----------------|-----|--------|
| ○ 漁 船 | | |
| — 動力木船 (50톤미만) | % | 2,443 |
| — 動力鋼船 (") | " | 2,611 |
| — 動力F-R-P (") | " | 3,414 |
| — 無動力木船 (") | " | 1,333 |
| ○ 增 養 殖 | | |
| — 김 (支柱網 浜式) | 樞 | 135 |
| — 主 要 貝 類 | ha | 185 |
| — 새 꼬 막 | " | 221 |
| ○ 漁 網 | | |
| — 改 良 大 謀 網 | 統 | 59,760 |
| — 大 謀 網 (中型) | " | 33,365 |
| — 小 臺 網 (") | " | 27,564 |

자료: 수산청 시설과

나. 水産被害 賠償

油類流出, 汚染物質排出, 埋立, 干拓 등에 의한 水産被害豫防 및 신속한 補償推進을 위하여 1986. 12. 31 改正 公布된 海洋汚染防止法 第 37 條의 2 規定에 근거하여 海洋汚染 被害賠償에 관한 別途法을 제정토록 하고, 公有水面埋立法 및 環境保全法の 施行令 등을 개정하여 埋立, 干拓事業의 被害補償範圍 및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範圍 등을 확대하는 등 被害救濟를 위한 關係制度 改善을 적극 추진하여 어민의 권익이 保障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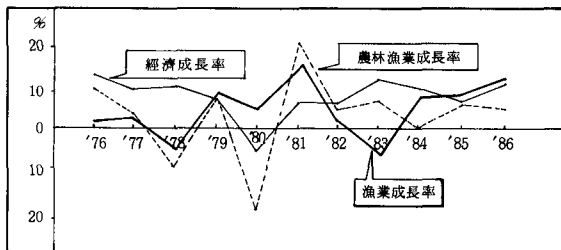
여백

圖表로 본 水産業動向

1. 國民經濟와 水産業 成長
2. 國民 總生産과 漁業生産(經濟構造)
3. 總人口와 漁業人口
4. 漁船勢力
5. 水産物 生産
6. 水産物 需給
7. 水産物 價格
8. 漁家 所得
9. 可處分 所得 및 家計費
10. 漁家 資産
11. 漁家 負債
12. 文化用品 保有

여백

1. 國民經濟와 水産業 成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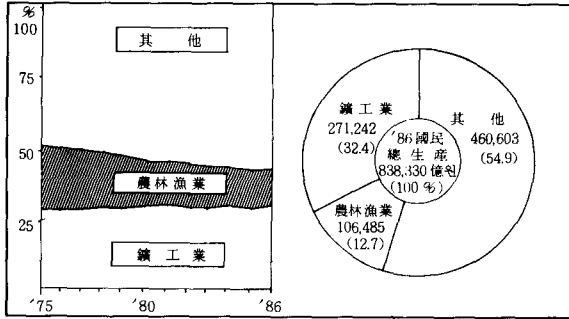
단위: '80 분변 가격, 억원

| | 國民總生産 | | 農林漁業 | | 礦工業 | 社會間接資本 | 其他 서비스 |
|-----|---------|--------|------|-------|---------|--------|-----------|
| | 國民總生産 | 農林漁業 | 農林 | 漁業 | | | |
| '75 | 258,157 | 62,891 | | 4,621 | 64,066 | 20,902 | 110,298 |
| '76 | 292,855 | 69,275 | | 4,711 | 78,475 | 23,751 | 121,354 |
| '77 | 324,079 | 71,324 | | 4,804 | 90,289 | 29,277 | 133,189 |
| '78 | 359,811 | 64,266 | | 4,534 | 108,638 | 36,963 | 149,944 |
| '79 | 385,027 | 68,991 | | 4,937 | 119,032 | 38,858 | 158,146 |
| '80 | 366,723 | 55,247 | | 5,141 | 117,343 | 39,360 | 154,773 |
| '81 | 390,887 | 67,597 | | 5,961 | 126,750 | 38,797 | 157,743 |
| '82 | 412,116 | 69,806 | | 6,058 | 131,853 | 44,764 | 165,693 |
| '83 | 461,091 | 74,360 | | 5,794 | 147,806 | 54,067 | 184,858 |
| '84 | 500,030 | 74,532 | | 6,273 | 169,304 | 59,598 | 196,596 |
| '85 | 527,054 | 78,092 | | 6,695 | 175,979 | 64,468 | 208,515 |
| '86 | 592,898 | 81,565 | | 7,541 | 205,606 | 71,206 | 234,521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註: 新國民 計定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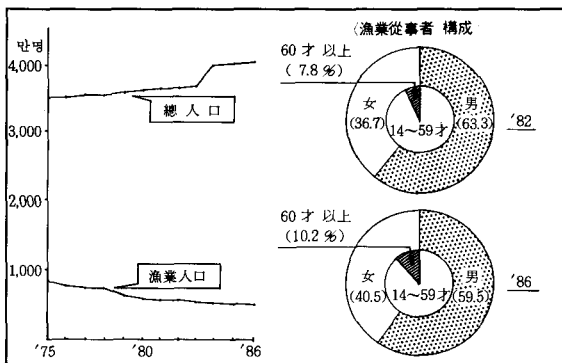
2. 國民總生産과 漁業生産 (經濟構造)



단위 : 경상가격, 억원

| | 國民 總生産 | 農林漁業 | 漁業 | 礦工業 | 社會 間接資本 | 其他 서비스 |
|-----|-----------|---------|--------|---------|------------|-----------|
| '75 | 100,646 | 25,038 | 1,842 | 28,208 | 6,101 | 41,298 |
| '76 | 138,182 | 32,435 | 2,312 | 40,313 | 8,252 | 57,182 |
| '77 | 177,286 | 39,576 | 3,663 | 52,018 | 12,686 | 73,006 |
| '78 | 239,368 | 48,904 | 4,229 | 71,212 | 21,754 | 97,498 |
| '79 | 307,411 | 58,776 | 5,663 | 93,127 | 31,892 | 123,616 |
| '80 | 366,723 | 55,247 | 5,141 | 117,343 | 39,360 | 154,773 |
| '81 | 451,262 | 74,423 | 7,062 | 144,481 | 44,384 | 187,974 |
| '82 | 507,246 | 77,315 | 7,119 | 157,688 | 53,805 | 218,438 |
| '83 | 589,858 | 82,926 | 9,110 | 181,748 | 65,894 | 259,290 |
| '84 | 664,082 | 91,812 | 8,933 | 209,972 | 76,209 | 286,089 |
| '85 | 728,498 | 101,581 | 10,934 | 223,833 | 85,224 | 317,861 |
| '86 | 838,330 | 106,485 | 13,824 | 271,242 | 95,066 | 365,5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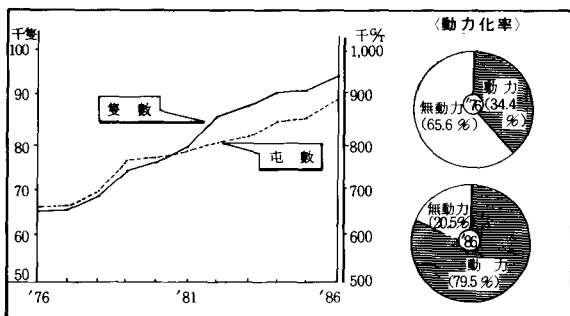
3. 總人口와 漁業人口



단위: 천명, 천호

| | 總人口 | | 漁業人口 | | | 漁業家口 | | 漁業從業者 | |
|-----|--------|-------|------|-----|------|------|------|-------|-------|
| | 總人口 | 增減率 | 構成比 | 增減率 | 增減率 | 增減率 | 增減率 | | |
| '75 | 35,281 | 1.68% | 894 | 2.6 | -2.2 | 154 | -4.2 | 323 | -2.7 |
| '76 | 35,849 | 1.64 | 880 | 2.5 | -1.6 | 153 | -0.6 | 328 | 1.5 |
| '77 | 36,412 | 1.61 | 871 | 2.4 | -1.0 | 153 | 0 | 329 | 0.3 |
| '78 | 36,969 | 1.60 | 827 | 2.2 | -5.0 | 152 | -0.7 | 302 | -8.2 |
| '79 | 37,534 | 1.58 | 791 | 2.1 | -5.3 | 147 | -3.3 | 299 | -1.0 |
| '80 | 38,124 | 1.38 | 844 | 2.2 | 6.7 | 157 | 6.8 | 339 | 13.4 |
| '81 | 38,723 | 1.57 | 776 | 2.0 | -8.1 | 150 | -4.5 | 294 | -13.3 |
| '82 | 39,931 | 1.57 | 755 | 1.9 | -2.7 | 146 | -2.7 | 292 | -0.7 |
| '83 | 39,951 | 1.58 | 739 | 1.8 | -2.1 | 147 | 0.7 | 269 | -7.9 |
| '84 | 40,578 | 1.57 | 716 | 1.8 | -3.1 | 147 | 0 | 277 | 3.0 |
| '85 | 41,056 | 1.17 | 689 | 1.7 | -3.8 | 145 | -1.4 | 274 | -1.1 |
| '86 | 41,569 | 1.25 | 666 | 1.6 | -3.3 | 144 | -0.7 | 276 |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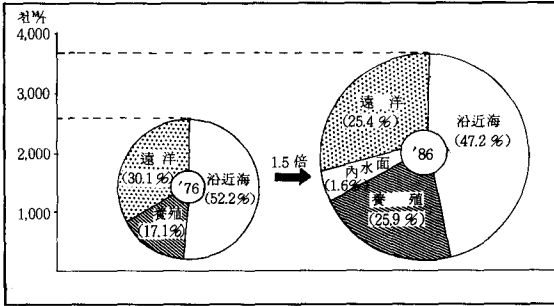
4. 漁船勢力



단위: 천척, 천%, 천HP

| | 計 | | | 動力 船 | | | 無動力 船 | |
|-----|------|-----|-------------|------|-----|-------|-------|-----|
| | 隻 數 | 屯 數 | 要 當 平均屯數 | 隻 數 | 屯 數 | 馬 力 | 隻 數 | 屯 數 |
| '75 | 67.7 | 648 | 9.57 | 19.7 | 581 | 1,587 | 48.0 | 67 |
| '76 | 65.8 | 662 | 10.06 | 22.7 | 605 | 1,676 | 43.1 | 57 |
| '77 | 66.5 | 683 | 10.26 | 29.8 | 636 | 1,866 | 36.7 | 46 |
| '78 | 70.3 | 756 | 10.75 | 34.0 | 713 | 2,187 | 36.3 | 43 |
| '79 | 74.6 | 753 | 10.10 | 47.1 | 721 | 2,334 | 27.5 | 32 |
| '80 | 77.6 | 771 | 9.94 | 51.1 | 740 | 2,462 | 26.5 | 30 |
| '81 | 80.5 | 782 | 9.71 | 59.7 | 757 | 2,585 | 20.8 | 24 |
| '82 | 86.5 | 808 | 9.33 | 67.1 | 785 | 2,797 | 19.4 | 23 |
| '83 | 88.5 | 828 | 9.35 | 69.3 | 806 | 2,973 | 19.3 | 22 |
| '84 | 90.4 | 852 | 9.42 | 71.6 | 830 | 3,213 | 18.8 | 22 |
| '85 | 90.9 | 858 | 9.42 | 71.8 | 836 | 3,353 | 19.1 | 22 |
| '86 | 93.0 | 884 | 9.50 | 73.9 | 862 | 3,607 | 19.1 |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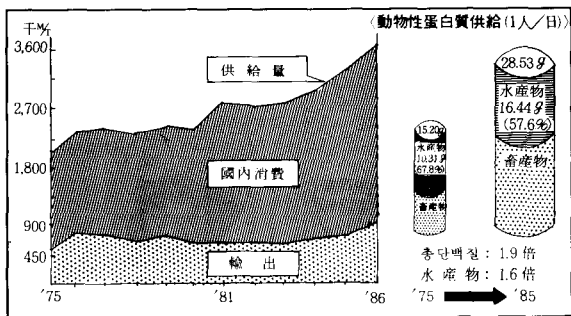
5. 水産物 生産



단위: 천톤

| | 計 | 沿岸海 | | 養殖 | | 内水面 | | 遠洋 | | |
|-----|-------|----------|-------|------|-----|-------|-----|------|-----|-------|
| | | 增加率 % | 增加率 | 增加率 | 增加率 | 增加率 | 增加率 | 增加率 | 增加率 | |
| '75 | 2,135 | 5.4 | 1,209 | -4.6 | 351 | 3.2 | 9 | 900 | 566 | 1.35 |
| '76 | 2,407 | 12.7 | 1,257 | 4.0 | 411 | 17.1 | 15 | 66.7 | 724 | 27.9 |
| '77 | 2,421 | 0.6 | 1,308 | 4.1 | 491 | 19.5 | 26 | 73.3 | 596 | -17.7 |
| '78 | 2,354 | -2.8 | 1,364 | 4.3 | 391 | -20.4 | 33 | 26.9 | 566 | -5.0 |
| '79 | 2,422 | 2.9 | 1,414 | 3.7 | 481 | 23.0 | 41 | 24.2 | 486 | -14.1 |
| '80 | 2,410 | -0.5 | 1,372 | -3.0 | 541 | 12.5 | 39 | -4.9 | 458 | -5.8 |
| '81 | 2,812 | 16.7 | 1,529 | 11.4 | 701 | 29.6 | 40 | 2.6 | 542 | 18.3 |
| '82 | 2,644 | -6.0 | 1,475 | -3.5 | 596 | -15.0 | 45 | 12.5 | 528 | -2.6 |
| '83 | 2,793 | 5.6 | 1,487 | 0.8 | 644 | 8.1 | 47 | 4.4 | 615 | 16.5 |
| '84 | 2,910 | 4.2 | 1,524 | 2.5 | 678 | 5.3 | 50 | 6.4 | 658 | 7.0 |
| '85 | 3,103 | 6.6 | 1,495 | -1.9 | 788 | 16.2 | 53 | 6.0 | 767 | 16.6 |
| '86 | 3,660 | 18.0 | 1,726 | 15.5 | 947 | 20.2 | 57 | 7.5 | 930 | 2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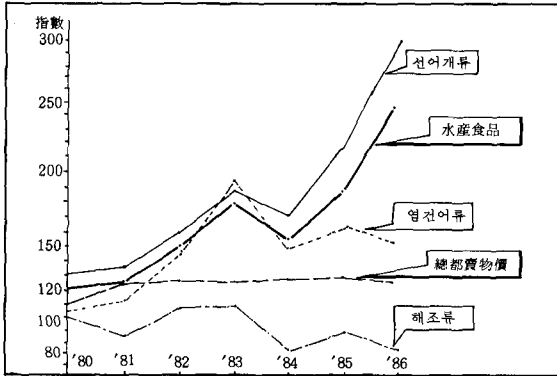
6. 水産物 需給



단위 : 천톤

| | 供給 | | 合計 | 消費 | | | 1人당 消費 (kg) |
|-----|-------|-----|-------|-------|-----|-------|-------------------|
| | 生産 | 輸入 | | 國內 | | 輸出 | |
| | | | | 魚貝類 | 海藻類 | | |
| '75 | 2,136 | - | 2,136 | 1,316 | 247 | 573 | 29.9 |
| '76 | 2,407 | - | 2,407 | 1,357 | 287 | 763 | 29.8 |
| '77 | 2,421 | 15 | 2,436 | 1,374 | 291 | 771 | 29.5 |
| '78 | 2,354 | 54 | 2,408 | 1,494 | 217 | 697 | 25.9 |
| '79 | 2,422 | 55 | 2,477 | 1,463 | 225 | 788 | 25.9 |
| '80 | 2,410 | 41 | 2,451 | 1,438 | 317 | 696 | 27.0 |
| '81 | 2,812 | 48 | 2,860 | 1,684 | 445 | 731 | 33.2 |
| '82 | 2,644 | 61 | 2,705 | 1,623 | 361 | 721 | 31.6 |
| '83 | 2,793 | 66 | 2,859 | 1,769 | 391 | 699 | 34.6 |
| '84 | 2,910 | 84 | 2,994 | 1,796 | 434 | 764 | 33.7 |
| '85 | 3,103 | 91 | 3,194 | 1,880 | 443 | 866 | 37.2 |
| '86 | 3,660 | 116 | 3,776 | 2,321 | 355 | 1,100 | 4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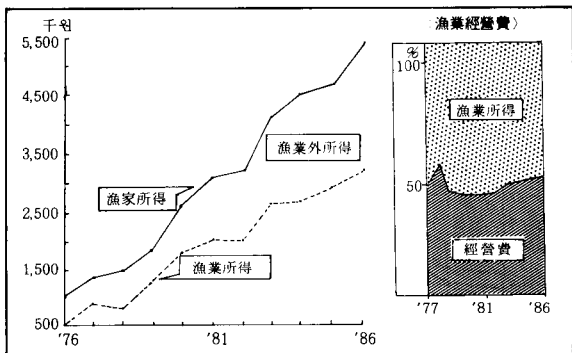
7. 水産物 價格



단위 : 지수, '80기준

| | 總都賣物價 | 水 産 食 品 | | | |
|-----|-------|---------|-------|-------|-------|
| | | 計 | 鮮魚介類 | 鹽乾魚類 | 海藻類 |
| '75 | 46.85 | 32.1 | 33.6 | 30.2 | 29.1 |
| '76 | 51.24 | 38.6 | 40.0 | 37.6 | 33.2 |
| '77 | 56.39 | 59.4 | 61.6 | 61.1 | 39.5 |
| '78 | 63.28 | 73.1 | 70.6 | 77.3 | 74.1 |
| '79 | 78.33 | 82.5 | 78.6 | 83.1 | 104.8 |
| '80 | 111.4 | 121.5 | 129.7 | 105.0 | 107.3 |
| '81 | 124.0 | 124.5 | 135.7 | 112.4 | 84.5 |
| '82 | 127.0 | 150.0 | 158.4 | 147.1 | 107.1 |
| '83 | 126.0 | 179.6 | 186.5 | 195.6 | 108.3 |
| '84 | 128.0 | 154.7 | 171.3 | 148.6 | 72.6 |
| '85 | 129.3 | 188.9 | 216.5 | 161.1 | 85.8 |
| '86 | 124.5 | 241.2 | 302.3 | 151.2 | 7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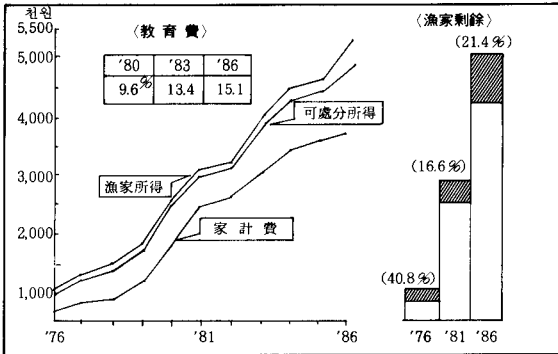
8. 漁家所得



단위: 천원

| | 漁家所得 | 漁業所得 | | | 漁業外所得 | | | 漁業外所得構成比 |
|-----|-------|-------|-------|-------|-------|-------|-------|----------|
| | | 漁業租收入 | 漁業經營費 | | 漁業所得 | 事業外收入 | | |
| '75 | 847 | 508 | - | - | 339 | - | - | 40.0% |
| '76 | 1,059 | 529 | - | - | 530 | - | - | 50.0 |
| '77 | 1,391 | 890 | 1,797 | 907 | 501 | 365 | 136 | 36.0 |
| '78 | 1,529 | 829 | 2,291 | 1,462 | 700 | 506 | 194 | 45.8 |
| '79 | 1,923 | 1,296 | 2,519 | 1,223 | 627 | 360 | 267 | 32.6 |
| '80 | 2,596 | 1,752 | 3,090 | 1,338 | 844 | 392 | 452 | 32.5 |
| '81 | 3,042 | 1,978 | 3,475 | 1,497 | 1,064 | 523 | 540 | 35.0 |
| '82 | 3,279 | 1,960 | 3,513 | 1,553 | 1,319 | 607 | 712 | 40.3 |
| '83 | 4,109 | 2,570 | 5,415 | 2,845 | 1,539 | 771 | 768 | 37.5 |
| '84 | 4,508 | 2,582 | 5,589 | 3,007 | 1,926 | 1,051 | 875 | 42.7 |
| '85 | 4,869 | 2,815 | 6,047 | 3,232 | 2,054 | 1,045 | 1,009 | 42.2 |
| '86 | 5,402 | 3,219 | 7,155 | 3,936 | 2,183 | 1,011 | 1,172 | 4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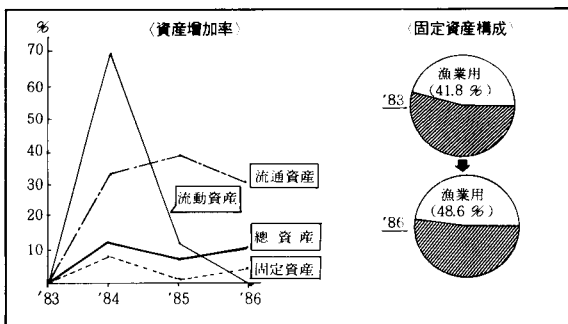
9. 可處分所得 및 家計費



단위: 천원

| | 可處分所得 | 家計費 | | | | | 倍數 | 漁家剩餘 |
|-----|-------|-------|------------|-----|-----------|-------|------|-------|
| | | 食料費 | 住居費 光熱費 | 教育費 | 被服費 其他 | 其他 | | |
| '75 | 842 | 429 | - | - | - | - | - | 413 |
| '76 | 1,052 | 620 | - | - | - | - | - | 432 |
| '77 | 1,375 | 902 | 469 | 131 | - | 302 | 52.0 | 473 |
| '78 | 1,519 | 1,212 | 580 | 186 | - | 446 | 47.9 | 307 |
| '79 | 1,877 | 1,498 | 668 | 220 | 115 | 495 | 44.6 | 370 |
| '80 | 2,500 | 1,998 | 803 | 254 | 191 | 650 | 40.2 | 456 |
| '81 | 2,913 | 2,383 | 951 | 310 | 252 | 870 | 39.9 | 505 |
| '82 | 3,143 | 2,700 | 999 | 375 | 290 | 1,036 | 37.0 | 382 |
| '83 | 3,898 | 3,206 | 1,086 | 379 | 429 | 1,312 | 33.9 | 620 |
| '84 | 4,267 | 3,330 | 1,078 | 460 | 483 | 1,309 | 32.4 | 795 |
| '85 | 4,601 | 3,583 | 1,137 | 447 | 521 | 1,478 | 31.7 | 979 |
| '86 | 5,098 | 3,877 | 1,202 | 480 | 584 | 1,611 | 31.0 | 1,156 |

10. 漁家資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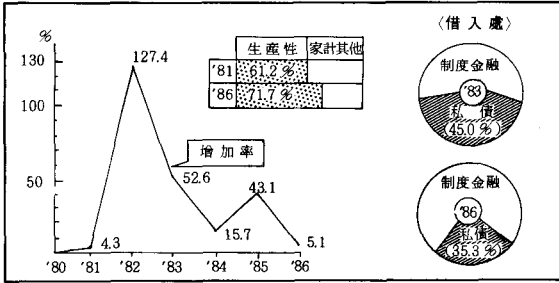


단위: 천원

| | 計 | 固定資産 (土地・建物等) | 流動資産 (在庫農水産物等) | 流通資産 (現金・貯蓄等) |
|-----|--------|--------------------|-------------------|------------------|
| '80 | 3,178 | 1,437 | 931 | 828 |
| '81 | 3,795 | 1,586 | 1,095 | 1,114 |
| '82 | 4,316 | 1,776 | 1,259 | 1,281 |
| '83 | 16,005 | 12,383 (9,321) | 1,475 | 1,147 |
| '84 | 17,708 | 13,548 (10,078) | 2,616 | 1,544 |
| '85 | 18,714 | 13,583 (9,807) | 2,963 | 2,168 |
| '86 | 20,072 | 14,216 (10,316) | 2,951 | 2,904 |

註: () 은 非漁業用 資産이며 '82年 以前에는 未包含.

11. 漁家負債



○ 用途別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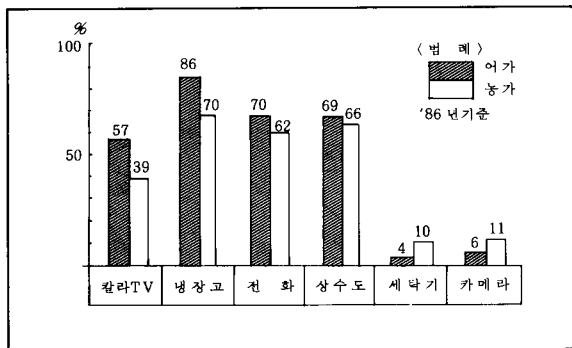
| | 計 | 生産性 | | | 家計 | 其他 |
|-----|-------|-------|-------|-----|-----|----|
| | | 漁業 | 兼業 | 其他 | | |
| '80 | 564 | 363 | 310 | 52 | 178 | 23 |
| '81 | 588 | 360 | 309 | 51 | 207 | 21 |
| '82 | 1,337 | 889 | 799 | 90 | 402 | 46 |
| '83 | 2,040 | 1,407 | 1,263 | 144 | 574 | 59 |
| '84 | 2,361 | 1,658 | 1,455 | 203 | 648 | 55 |
| '85 | 3,378 | 2,501 | 2,054 | 447 | 804 | 73 |
| '86 | 3,549 | 2,545 | 2,150 | 395 | 911 | 93 |

○ 借入處別

단위: 천원

| | 計 | 制度金融 | | | | 私債 |
|-----|-------|-------|-------|-----|-----|-------|
| | | 小計 | 水協 | 農協 | 其他 | |
| '83 | 2,040 | 1,123 | 859 | 194 | 70 | 917 |
| '84 | 2,361 | 1,249 | 932 | 234 | 83 | 1,112 |
| '85 | 3,378 | 2,157 | 1,491 | 513 | 152 | 1,221 |
| '86 | 3,549 | 2,297 | 1,569 | 568 | 160 | 1,252 |

12. 文化用品 保有



단위: 대 / 100 호당

| | T.V. | | 녹음기 | 냉장고 | 세탁기 | 카메라 | 전 화 | 상수도 |
|-----|------------|------------|------------|------------|-----------|-----------|------------|------------|
| | 칼 라 | 흑 백 | | | | | | |
| '80 | 1 | 92 | 34 | 20 | 0.4 | 4 | 14 | 62 |
| '82 | 6 | 93 | 48 | 25 | 1 | 3 | 17 | 66 |
| '83 | 9 | 93 | 48 | 31 | 1 | 5 | 21 | 60 |
| '84 | 24 | 98 | 56 | 41 | 1 | 5 | 46 | 68 |
| '85 | 47 | 83 | 84 | 68 | 3 | 7 | 62 | 65 |
| '86 | 57 (39) | 64 (85) | 91 (84) | 86 (70) | 4 (10) | 6 (11) | 70 (62) | 69 (66) |

註: 1. '81년에는 調査하지 않았음.

2. ()은 農家.

統計表索引

여백

統計表索引

| | | |
|--------|------------------|----|
| 〈表 1〉 | 世界 水産物 生産推移 | 4 |
| 〈表 2〉 | 世界 水産物 輸出推移 | 5 |
| 〈表 3〉 | 漁業家口・人口 及 従事者 推移 | 6 |
| 〈表 4〉 | 漁業家口の 推移 | 7 |
| 〈表 5〉 | 漁業家口員 及 従事者 推移 | 7 |
| 〈表 6〉 | 従事者の 年齢 構成 | 8 |
| 〈表 7〉 | 業種別 従事者 推移 | 8 |
| 〈表 8〉 | 生産 輸出入 推移 | 9 |
| 〈表 9〉 | 漁船勢力 推移 | 10 |
| 〈表 10〉 | 漁業別 漁船勢力 | 11 |
| 〈表 11〉 | 船質別 漁船勢力 | 11 |
| 〈表 12〉 | 等級別 漁船勢力 | 12 |
| 〈表 13〉 | 漁業 總 生産額 | 13 |
| 〈表 14〉 | 漁家所得 構成 | 14 |
| 〈表 15〉 | 漁業階層別 所得 推移 | 14 |
| 〈表 16〉 | 階層別 所得 構成 | 15 |
| 〈表 17〉 | 漁家經費收支 | 15 |
| 〈表 18〉 | 消費財 推移 | 16 |
| 〈表 19〉 | 漁家資産 推移 | 17 |
| 〈表 20〉 | 漁家負債 推移 | 17 |
| 〈表 21〉 | 資産と 負債 比較 | 18 |
| 〈表 22〉 | 漁業別 生産 推移 | 23 |
| 〈表 23〉 | 沿近海漁業 業種別 生産 推移 | 26 |
| 〈表 24〉 | 養殖漁業 生産 推移 | 27 |

| | | |
|--------|------------------|----|
| 〈表 25〉 | 內水面漁業 品種別 生産 推移 | 29 |
| 〈表 26〉 | 遠洋漁業 生産 推移 | 30 |
| 〈表 27〉 | 水産物 輸出 推移 | 31 |
| 〈表 28〉 | 品目別 輸出實績 | 32 |
| 〈表 29〉 | 主要魚種 輸出實績 | 34 |
| 〈表 30〉 | 國家別 輸出實績 | 35 |
| 〈表 31〉 | 主要品種에 대한 價格引上 効果 | 35 |
| 〈表 32〉 | 水産物 輸出 推薦品目 | 36 |
| 〈表 33〉 | 輸入 自由化 | 36 |
| 〈表 34〉 | 水産物 輸入實績 | 37 |
| 〈表 35〉 | 合作漁獲物 輸入實績 | 38 |
| 〈表 36〉 | 水産物 需給動向 | 39 |
| 〈表 37〉 | 動物性 蛋白質 供給量 | 39 |
| 〈表 38〉 | 水産物 利用 動向 | 40 |
| 〈表 39〉 | 沿岸漁業經營體 推移 | 41 |
| 〈表 40〉 | 主要近海漁業 經營體 推移 | 43 |
| 〈表 41〉 | 養殖漁業經營體 構成 | 44 |
| 〈表 42〉 | 養殖漁業經營體 規模 | 44 |
| 〈表 43〉 | 內水面 魚種別 經營體 推移 | 45 |
| 〈表 44〉 | 遠洋漁業經營 推移 | 46 |
| 〈表 45〉 | 都賣物價 推移 | 48 |
| 〈表 46〉 | 免稅油類 供給實績 | 49 |
| 〈表 47〉 | 免稅油價와 市中油價의 比較 | 49 |
| 〈表 48〉 | 落島・僻地 免稅油供給 | 50 |
| 〈表 49〉 | 漁網類 價格 推移 | 50 |
| 〈表 50〉 | 裝備供給價格 推移 | 51 |
| 〈表 51〉 | 水産資金 推移 | 51 |

| | | |
|--------|----------------------|----|
| 〈表 52〉 | 水産資金 調達 | 52 |
| 〈表 53〉 | 水協自體資金造成 実績 | 52 |
| 〈表 54〉 | 水産資金 運用 | 53 |
| 〈表 55〉 | 營漁資金 供給 | 53 |
| 〈表 56〉 | 道別 人工魚礁施設 実績 | 58 |
| 〈表 57〉 | 水産種苗培養場 施設 | 59 |
| 〈表 58〉 | 연어放流 및 採捕実績 | 60 |
| 〈表 59〉 | 稚魚放流実績 | 60 |
| 〈表 60〉 | 内水面 水産資源保全地域 指定 | 61 |
| 〈表 61〉 | 不法漁業 團束実績 | 64 |
| 〈表 62〉 | 漁船海難事故 推移 | 65 |
| 〈表 63〉 | 海難事故 原因 및 類型 | 65 |
| 〈表 64〉 | 海域 및 等級別 海難事故 | 66 |
| 〈表 65〉 | 業種別 海難事故 | 66 |
| 〈表 66〉 | 機關別 海難漁船 救助実績 | 68 |
| 〈表 67〉 | 漁船 検査実績 | 68 |
| 〈表 68〉 | 漁船 및 船員 共濟加入 | 69 |
| 〈表 69〉 | 被害復舊費 支援実績 | 70 |
| 〈表 70〉 | 内水面養魚 支援実績 | 72 |
| 〈表 71〉 | 大洋別 다량어 資源評價 | 74 |
| 〈表 72〉 | 北・東太平洋의 主要魚種 資源狀態 | 74 |
| 〈表 73〉 | 오징어漁場의 漁場別 單位努力當 漁獲量 | 75 |
| 〈表 74〉 | 200 海里 水域宣布 | 76 |
| 〈表 75〉 | 附屬約定 更新 | 77 |
| 〈表 76〉 | 技術協力 | 77 |
| 〈表 77〉 | 補助研究課題 遂行実績 | 83 |
| 〈表 78〉 | 水産系學生 實習実績 | 84 |

| | | |
|---------|-------------------|-----|
| 〈表 79〉 | 兼職研究官 | 84 |
| 〈表 80〉 | 水產研究基金 造成 | 86 |
| 〈表 81〉 | 乘船 巡迴豫察 實績 | 87 |
| 〈表 82〉 | 漁民後繼者 地域社會活動 | 88 |
| 〈表 83〉 | 漁村指導所 廳舍 確保 | 88 |
| 〈表 84〉 | 漁村 指導裝備 補強 | 89 |
| 〈表 85〉 | 漁村 指導公務員 教育實績 | 89 |
| 〈表 86〉 | 教育訓練實績 | 91 |
| 〈表 87〉 | 韓國漁業技術訓練所 訓練實績 | 92 |
| 〈表 88〉 | 水產加工品 生產 推移 | 95 |
| 〈表 89〉 | 水產物 消費 推移(純食品) | 97 |
| 〈表 90〉 | 檢查 推移 | 97 |
| 〈表 91〉 | 加工品種別 推移 | 98 |
| 〈表 92〉 | 漁撈施設事業 實績 | 100 |
| 〈表 93〉 | 全國漁港 | 101 |
| 〈表 94〉 | 漁港施設 | 102 |
| 〈表 95〉 | 水協斗 組織 | 103 |
| 〈表 96〉 | 水協中央會 事業 規模 | 104 |
| 〈表 97〉 | 會員水協 事業 規模 | 104 |
| 〈表 98〉 | 水協中央會 收支狀況 | 105 |
| 〈表 99〉 | 會員水協 收支狀況 | 106 |
| 〈表 100〉 | 出資金 造成 | 106 |
| 〈表 101〉 | 水產物 輸出團體 | 107 |
| 〈表 102〉 | 漁民後繼者 育成 事業 實績 | 108 |
| 〈表 103〉 | 水產振興事業 執行實績 | 109 |
| 〈表 104〉 | 移越事業(1985 → 1986) | 111 |
| 〈表 105〉 | 移越事業(1986 → 1987) | 111 |

| | | |
|---------|--------------------|-----|
| 〈表 106〉 | 生産計劃 | 120 |
| 〈表 107〉 | 輸出計劃 | 120 |
| 〈表 108〉 | 水産豫算 | 121 |
| 〈表 109〉 | 水産物 生産動向 | 123 |
| 〈表 110〉 | 水産物 輸出動向 | 123 |
| 〈表 111〉 | 人工魚礁施設計劃 | 124 |
| 〈表 112〉 | 種苗生産計劃 | 125 |
| 〈表 113〉 | 稚魚放養事業計劃 | 127 |
| 〈表 114〉 | 内水面 養魚場施設 支援計劃 | 128 |
| 〈表 115〉 | 研究基金 活用計劃 | 136 |
| 〈表 116〉 | 産學協同 補助研究課題 | 136 |
| 〈表 117〉 | 示範漁場 運營計劃 | 143 |
| 〈表 118〉 | 漁村指導公務員 専門教育計劃 | 145 |
| 〈表 119〉 | 直接취타 및 共同漁業事業 | 149 |
| 〈表 120〉 | 年度別 뉴질랜드취타 消盡實績 | 150 |
| 〈表 121〉 | 政府備蓄事業 | 155 |
| 〈表 122〉 | 民間價格安定事業 | 155 |
| 〈表 123〉 | 漁撈施設事業 計劃 | 160 |
| 〈表 124〉 | 漁港施設計劃 | 163 |
| 〈表 125〉 | 營漁資金 供給計劃 | 166 |
| 〈表 126〉 | 水産振興基金 運用計劃 | 167 |
| 〈表 127〉 | 水産振興財政資金 調達 및 運用計劃 | 167 |
| 〈表 128〉 | 農漁村地域開發基金 支援計劃 | 168 |
| 〈表 129〉 | 貯蓄推進目標 | 169 |
| 〈表 130〉 | 水協資金 需給計劃 | 169 |
| 〈表 131〉 | 低所得漁村 選定 | 170 |
| 〈表 132〉 | 低所得漁村 支援事業計劃 | 170 |

| | | |
|---------|---------------------------|-----|
| 〈表 133〉 | 漁村 새마을事業計劃 | 171 |
| 〈表 134〉 | 漁民後繼者 育成 支援 | 172 |
| 〈表 135〉 | 漁民後繼者 構成 | 172 |
| 〈表 136〉 | 漁船 및 船員 共濟加入計劃 | 173 |
| 〈表 137〉 | 颱風 “셀마” 및 豪雨被害 復舊計劃 | 176 |
| 〈表 138〉 | 被害額 算定基準 | 176 |

1987年度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87年 9月 日 印刷

1987年 9月 日 發行

編纂：水産廳 企劃管理官室

發行：大韓民國 水産廳

印刷：株式會社 文藝社

☎ 739 - 3911 ~ 4

非 賣 品

바로잡음표

| 쪽 | 줄 | 틀 | 림 | 고 | 침 |
|-------|-------|-------------|---|-------------|---|
| 목차 iv | 아래 7 | 農漁民 | | 農漁家 | |
| 46 | 아래 2 | 원양생산과담당실 | | 원양생산담당실 | |
| 78 | 아래 3 | 1985.11. 9 | | 1985.11.19 | |
| 80 | 아래 9 | 種別, 生理 | | 種別 生理 | |
| 98 | 아래 2 | 優先 | | 優秀 | |
| 98 | 아래 14 | 國民保健院 | | 國立保健院 | |
| 121 | 위 5 | 農安基金 812 억원 | | 農安基金 857 억원 | |
| 125 | 위 9 | 우렁쟁이 | | 조피불락 | |
| 140 | 아래 3 | 魚具類 | | 魚貝類 | |
| 148 | 아래 11 | Olympic | | Olympic | |
| 152 | 아래 10 | 240 천원 | | 245 천원 | |
| 187 | 아래 1 | 241.9 | | 241.2 | |